16. 이용업

判決原本 [隆熙三年刑第一五〇號]

忠淸北道 永春郡 魚上川面 大田里 農
李龍業, 齡五十年

右內亂事件ニ付(에對ᄒᆞ야)檢事小野篤次郎干與判決スルコト(ᄒᆞᆫ事)左ノ(와)如シ(홈)

主文

被告李龍業ヲ(을)懲役五年ニ(에)處ス(홈)

理由

被告李龍業ハ(은)政事ヲ(를)變更セン(ᄒᆞ기)爲メ(ᄒᆞ야)亂ヲ(를)作スコトヲ(헐事을)造意シタル(ᄒᆞᆫ)李康年ノ(의)部下ニ(에)知情投入シテ(ᄒᆞ야)砲軍トナリ(이되야)他ノ部下數十名ト(과)共ニ(히)銃ヲ(을)携シ(ᄒᆞ고)李康年指揮ノ下ニ(에)隆熙元年舊七月初旬ヨリ(붓터)同年舊十月下旬迄ᄭ지)ノ間ニ(에)忠淸北道永春堤川忠州ノ各邑ヲ(을)橫行中特ニ(히)忠州邑ヲ(을)襲擊シ(ᄒᆞ고)尙ホ(히)丹陽郡東面鷹岩里(와)若クハ(又ᄂᆞᆫ)同郡南面槐坪里ニ於テ(에셔)豊基討伐隊ト(와)交戰シテ(ᄒᆞ야)亂ヲ(을)作シタリ(ᄒᆞ얏싸옴)

以上ノ事實ハ(은)憲兵井上萬治郎ノ(의)報告書永春憲兵分遣所及ヒ檢事廷ニ於ケル(에셔)被告ノ(의)訊問調書當公廷ニ於ケル(에셔)被告ノ(의)陳述ニ(을)徵シテ(ᄒᆞ야)證憑十分ナリ(됨)

右所爲ハ(은)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에)該當スル(ᄒᆞᆫ)從犯ナルヲ以テ(됨으로뼈)同第百三十五條ニ(에)依リ(ᄒᆞ야)首犯ノ(의)律ニ(에)一等ヲ(을)減シ(ᄒᆞ야)懲役終身ニ(에)該當スルモ(ᄒᆞ지만은)尙ホ(히)同第百二十五條ニ(에)依リ(ᄒᆞ야)犯情ヲ(을)酌量シ(ᄒᆞ야)本刑ヨリ(으로붓터)四等ヲ(을)通シテ(ᄒᆞ야)五等ヲ(을)減シ(ᄒᆞ야)懲役五年ニ(에)處斷スルヲ(홈을)相當ト(홈으로)認メ(ᄒᆞ야)主文ノ(과)如ク(희)判決ス(홈)

隆熙三年 九月 十一日
公州地方裁判所淸州支部刑事部
裁判長 判事 田中亨 [印]
判事 洪祐夔 [印]
判事 山岡定行 [印]

隆熙三年 九月 十一日 判決言渡
裁判所書記 小森敏行 [印]

右ᄂᆞᆫ裁判長의命를依ᄒᆞ야懸註홈
隆熙三年 九月 十五日
裁判所繙譯官補 辛泰運 [印]

판결원본 [융희3년1909 형(刑)제150호]

충청북도 永春郡 어상천면魚上川面 대전리大田里
농업, 이용업李龍業 50세

위 내란사건에 대하여 검사 소야독차랑小野篤次郎 간여 판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용업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이용업은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킬 마음을 먹은 이강년李康秊의 부하로 사정을 알고서도 들어가 포군이 되어 여타 부하 수십 명과 함께 총을 휴대하고 이강년李康秊의 지휘 하에 융희원년1907 음력 7월 초순부터 동년 음력 10월 하순까지의 상간에 충청북도 永春 · 제천 · 충주의 각 읍을 횡행하던 도중 특히 충주읍을 습격하였고, 또한 단양군

동면東面 응암리鷹岩里 또는 동 군 남면南面 괴평리槐坪里에서 풍기토벌대와 교전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상의 사실은 헌병 정상만치랑井上萬治郎의 보고서, 永春현병분견소 및 검사정에서 피고의 신문조서, 당 공판정에서 피고의 진술을 징험하여 증빙이 충분하다.

위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나 종범이므로 동 제135조에 의하여 수범의 율에 1등을 감하여 징역종신에 해당하지만, 또한 동 제125조에 의하여 범죄 정황을 작량하여 본형으로부터 4등을 통해서 5등을 감하여 징역 5년에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3년1909 9월 11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형사부
재판장 판사 전중형田中亨 [印]
판사 홍우기洪祐夔 [印]
판사 산강정행山岡定行 [印]

융희3년1909 9월 11일 판결·언도
재판소서기 소삼민행小森敏行 [印]

위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현주懸註 함
융희3년1909 9월 15일
재판소 번역관보 신태운辛泰運 [印]

判決

忠淸北道 永春郡 魚上川面 沙器幕 農
李龍業, 五十年 五月生

右內亂被告事件ニ付隆熙三年九月十一日公州地方裁判所淸州支部刑事部ニ於テ宣告シタル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申立タルニ因リ更ニ審理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原判決ヲ取消ス
被告李龍業ヲ流五年ニ處ス

理由

被告李龍業ハ現政府施政方針ニ不滿ヲ抱キ政事ヲ變更スル目的ヲ以テ起レル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知情投入シテ砲軍トナリ他ノ徒黨數十名ト共ニ銃ㄱヲ携持シ同首魁指揮ノ下ニ隆熙元年舊七月初旬ヨリ同年舊十月下旬頃迄ノ間忠淸北道永春堤川忠州丹陽等ノ各郡ヲ橫行シ丹陽郡東面鷹岩里及ヒ同郡南面槐坪里ニ於テ豊基討伐隊ト交戰シテ亂ヲ作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被告ニ對スル陸軍憲兵伍長並原審檢事ノ各訊問調書丹陽憲兵分遣所所長渡引末吉ノ原審檢事宛通報書原審審問調書被告カ當廷ニ於ケル供述等ニ徵シ之ヲ認ム之ヲ法律ニ照スニ被告所爲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スルモ從犯ナルヲ以テ同法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律ニ一等ヲ減シ尙ホ犯情原諒スヘキヲ以テ同法第百二十五條ニ依リ四等ヲ酌減シテ處斷スヘキモノトス
則チ原判決ノ事實ノ認定法律ノ適用共ニ相當ナレトモ被告ノ罪ヲ輕減スルニ當リ刑法大全第五百十七條ノ規定ヲ無視シ罪質ニ從ハスレテ被告ヲ懲役五年ニ處シタルハ失當ニシテ被告ノ控訴ハ其理由アルニ因リ主文ノ如ク判決ス
檢事杉村逸樓本件ニ干與ス
京城控訴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楠常藏 [印]

判事 李秉和 [印]
判事 結城朝陽 [印]

隆熙三年 十月 一日 宣告
裁判所書記 笹川慶次郎 [印]

판결

충청북도 永春郡 어상천면魚上川面 사기막沙器幕
농업, 이용업李龍業 50세 [5월생]

위 내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융희3년1909 9월 11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형사부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공소를 신청하였기로 다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용업을 유배 5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이용업은 현 정부의 시정 방침에 불만을 품고서 정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일어난 폭도 괴수 이강년李康秊의 부하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투입하여 포군砲軍이 되어 다른 도당 수십 명과 같이 총기를 휴대하고 동 괴수 지휘하에 융희원년1907 음력 7월 초순부터 동년 음력 10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충청북도 영춘永春·제천堤川·충주忠州·단양丹陽 등의 각군을 횡행하여 단양군 동면東面 응암리鷹岩里와 동군 남면南面 괴평리槐坪里에서 풍기豊基 토벌대와 교전하여 난을 일으킨 자다.

이상 사실은 피고에게 대한 육군 헌병 오장과 원심 검사의 각 신문 조서, 단양헌병분견소 소장 도인말길渡引末吉이 원심 검사 앞으로 낸 통보서, 원심 심문 조서, 피고의 당공판정에서의 공술 등에 징험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나 종속범이므로 동법 제135조에 의하여 주범률에서 1등을 경감하고, 또한 소범 정상이 용서할 만하므로 동법 제125조에 의하여 4등을 경감하여 처단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즉, 원판결은 사실의 인정, 법률의 적용이 모두 타당하나 피고의 죄를 경감함에 있어서, 형법대전 제571조의 규정을 무시하여 죄질罪質에 따르지 않고서 피고를 징역 5년에 처하였음은 실책으로서 피고의 공소는 그 이유가 있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삼촌일루杉村逸樓가 본 사건에 관여함.

경성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남상장楠常藏 [印]

판사 이병화李秉和 [印]

판사 결성조양結城朝陽 [印]

융희3년1909 10월 1일 선고

재판소서기 세천경차랑笹川慶次郎 [印]

■ **이용업 판결문**(1909년 9월 11일,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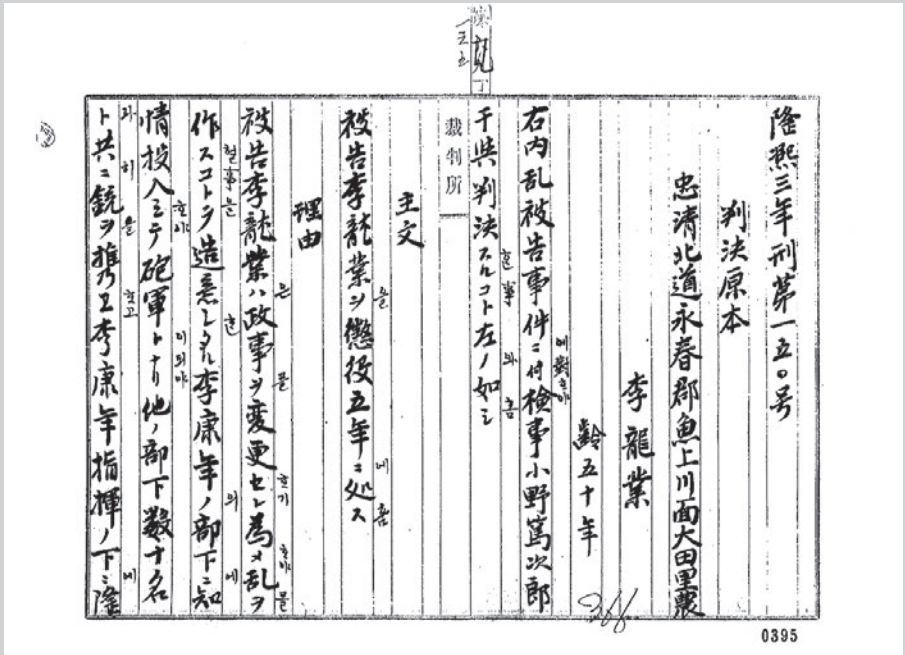

隆熙三年刑第一五〇号

判決原本

忠清北道永春郡魚上川面大田里農

李龍業

齢五十年

右内乱被告事件ニ付検事小野寫次郎

于與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裁判所

主文

被告李龍業ヲ懲役五年ニ処ス

理由

被告李龍業ハ政事ヲ変更セント為メ乱ヲ

作スコトヲ造意トシ李康年ノ部下ニ加

情投入シテ砲軍ト称シ他ノ部下数十名

ト共ニ銃ヲ携ヘ李康年指揮ノ下ニ隆

0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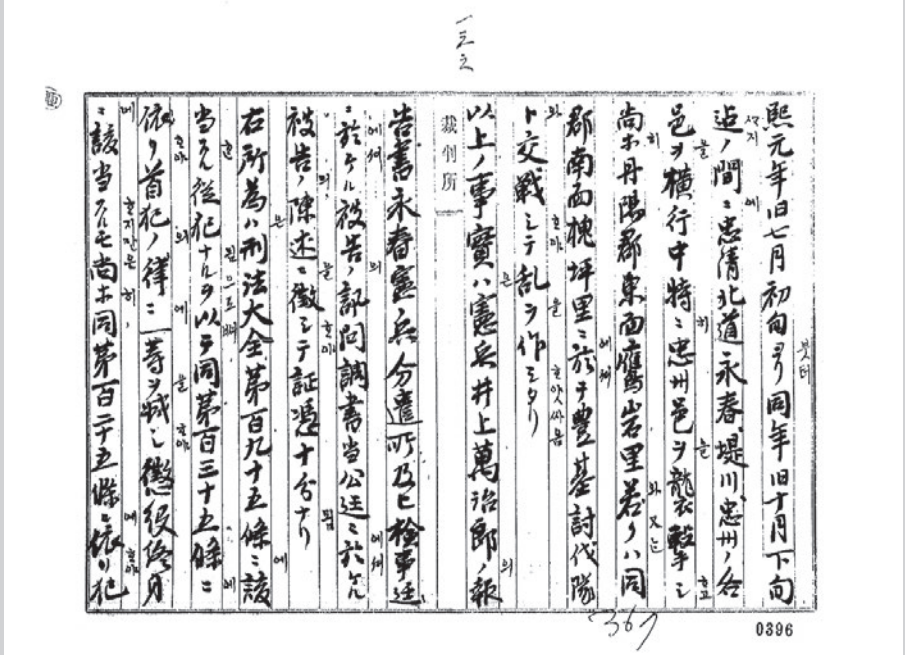

熙元年旧七月初旬ヨリ同年旧十月下旬

迄ノ間ニ忠清北道永春、堤川、忠州ノ各

邑ヲ横行中特ニ忠州邑ヲ襲撃シ

尚ホ丹陽郡東面鷹岩里若クハ同

郡南面槐坪里ニ於テ豊基討伐隊

ト交戦シテ乱ヲ作シタリ

以上ノ事実ハ憲兵井上萬治郎ノ報

告書永春憲兵分遣所乃至検事迄

ニ於ケル被告ノ訊問調書当公廷ニ於ケル

被告ノ陳述ニ徴シテ証拠十分ナリ

在所為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

当スル後犯ナルヲ以テ同第百三十五條ニ

依リ首犯ノ律ニ擬シ戦シ懲役終身

ニ該当スルモ尚ホ同第百二十五條ニ依リ犯

裁判所

0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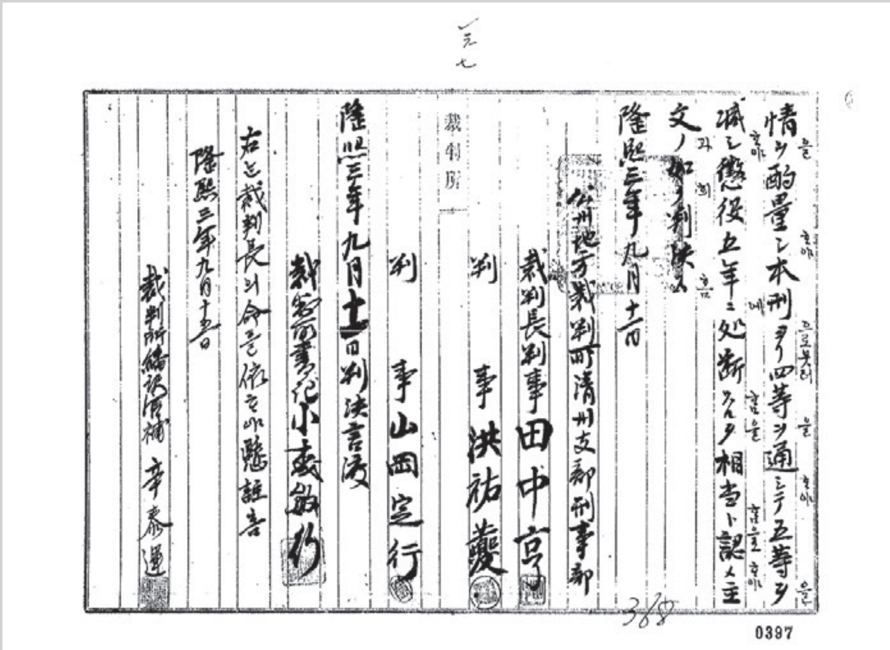

一五七

情ヲ酌量シ本刑ヨリ四等ヲ通シテ五等ヲ
減シ懲役五年ニ処断スヘク相当ト認メ主
文ノ如ク判決ス

隆熙三年九月十日

公州地方裁判所清州支部刑事部

裁判長判事 田中直一

判事 洪祐夔

判事 山田定行

隆熙三年九月十日判決言渡

裁判所書記 小森敏行

右ハ裁判長ノ命ニ依リ聴証書

隆熙三年九月十日

裁判所書記補 辛泰運

388

0397

■ **이용업 판결문**(1909년 10월 1일, 경성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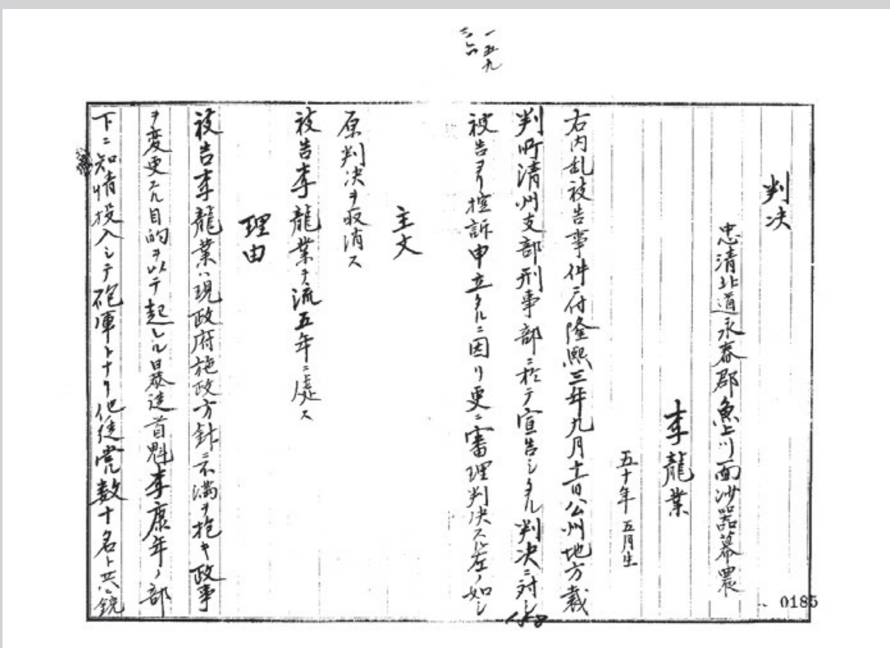

一五九

判決

忠清北道永春郡魚上川面沙器幕里

李龍業

五十年 五月生

右内乱被告事件府隆熙三年九月十日公州地方裁判所清州支部刑事部ニ於テ宣告シタル判決ニ対シ被告ヨリ控訴申立タルニ因リ更ニ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原判決ヲ取消ス

被告李龍業ヲ流五年ニ処ス

理由

被告李龍業ハ現政府施政方針ニ不満ヲ抱キ政事ヲ変更スル目的ヲ以テ起リル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知情投入シテ砲軍トナリ他徒党数十名ト共ニ銃

0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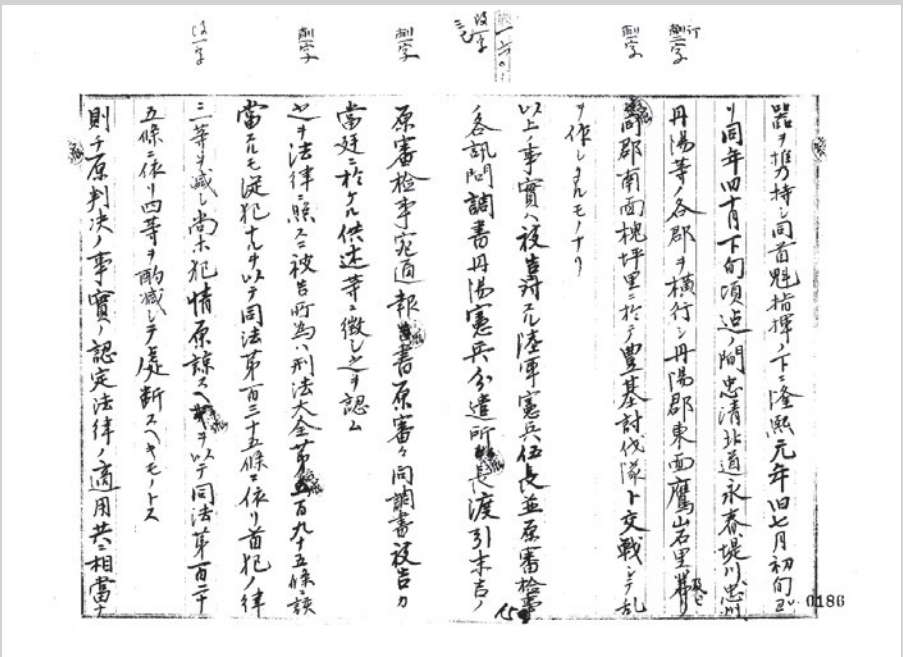

器ヲ携ヲ持シ同首魁指揮ノ下ニ隆熙元年旧七月初旬ヨリ同年四十月下旬頃迄ノ間忠清北道永春堤川忠州丹陽等ノ各郡ヲ横行シ丹陽郡東面鷹山石里幕ヲ同郡南面槐坪里ニ於テ豊基討伐隊ト交戦シテ乱ヲ作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被告対スル陸軍憲兵伍長並原審檢事ノ各訊問調書丹陽憲兵分遣所長渡引末吉ノ

原審檢事宛通報書原審々問調書被告カ當廷ニ於ケル供述等ニ徴シ之ヲ認ム

之ヲ法律ニ照スニ被告所為ハ刑法大全第五百九十五條該當スルモ従犯ナルヲ以テ同法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律ニ一等ヲ減シ尚ホ犯情原諒スヘキヲ以テ同法第百二十五條ニ依リ四等ヲ酌減シテ處断スヘキモノトス

則チ原判決ノ事實ノ認定法律ノ適用共ニ相當ナ

0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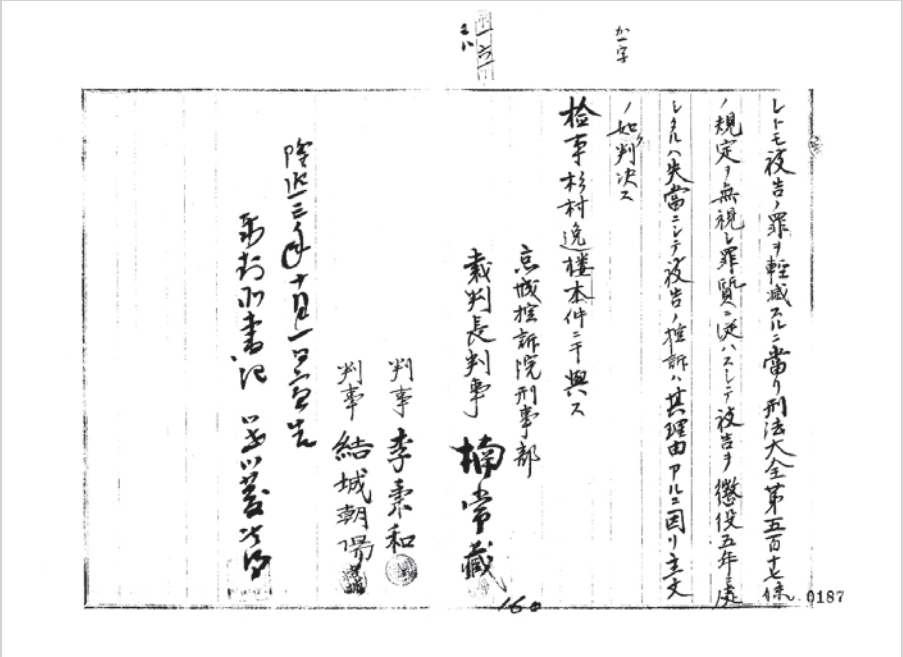

レトモ被告ノ罪ヲ軽減スルニ當リ刑法大全第五百十七條ノ規定ヲ無視シ罪質ニ従ハスシテ被告ヲ懲役五年ニ處シタルハ失當ニシテ被告ノ控訴ハ其理由アルニ因リ主文ノ如ク判決ス

檢事杉村逸樓本件ニ干與ス

京城控訴院刑事部

裁判長判事 楠常蔵

判事 李秉和

判事 結城朝陽

陰歴三年十月一日宣告

[illegible]

0187

17. 정중택

判決原本

忠淸北道 堤川郡 西面 方下里
澤伊事, 被告 鄭仲澤, 三十一年

右被告ニ對スル內亂事件檢事ノ控訴ニ依リ審理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仲澤ヲ流十年ニ處ス

事實及理由

被告仲澤ハ元待衛隊ノ兵士ニシテ同隊解散後隆熙元年六月中日不詳暴動首魁李康年ノ部下ニ屬シ朝鮮國ヲシテ獨立國ト爲シ人民ヲ水火ノ苦シヨリ救ハントノ目的ヲ以テ原州平昌永春及丹陽ノ各郡ヲ橫行金品ヲ徵發シ同年九月日不詳日本軍隊ト交戰右腕部ニ銃創ヲ受ケ淸安郡近西面李德三方ニ潛伏シ居リタルヲ逮捕セラレタルモノナリ

此事實ハ被告カ當公廷ノ自白及平洞憲兵分遣所并ニ當廳檢事ノ被告人訊問調書ニ依リ證憑充分ナリ

右所爲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スル處被告ノ所爲ハ從犯ナルヲ以テ同法第百三十五條ニ依リ一等ヲ減シ猶ホ犯狀減量ス可キモノアルヲ以テ同法第百二十五條ヲ適用二

等ヲ減シ主文ノ如ク判決ス

檢事小野篤次郎立會宣告ス

公州地方裁判所淸州支部

裁判長 統監府判事 田中亨 [印]

統監府判事 山本平藏 [印]
統監府判事 境誠之進 [印]

明治四十三年 三月 九日
統監府裁判所書記 小森敏行 [印]

판결원본

충청북도 제천군 서면西面 방하리方下里
피고 정중택鄭仲澤 [일명 택이澤伊] 31세

위의 내란 피고에 대한 내란사건 검사의 공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정중택을 유流 10년에 처한다.

사실 및 이유

피고 정중택은 원래 시위대侍衛隊 병사이던 바, 동대 해산 후 융희원년1907 6월 중의 일자 미상에 폭동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로 가담하여 조선국을 독립국으로 하여 인민을 수화水火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려는 목적에서 원주·평창·永春 및 단양의 각군을 횡행, 금품을 징발하고 동년 9월 일자 미상에 일본군대와 교전하다가 오른팔에 총상을 입고 청안군淸安郡 근서면近西面 이덕삼李德三 집에 잠복하고 있던차에 체포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본 공판정에서의 자백 및 평동平洞 헌병분견소와 당청 검사의 피고인 신문 조서에 의거하여 그 증거 충분하다.

위의 소위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5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의 소위는 종범從犯이므로 동법 제135조에 의하여 1등을 감하고, 다시 범정犯情을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동법 제125조를 적용하여 2등을 감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소야독차랑小野篤次郞의 입회로 선고한다.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재판장 통감부판사 전중형田中亨 [印]
통감부판사 산본평장山本平藏 [印]
통감부판사 경성지진境誠之進 [印]

명치43년1910 3월 9일
통감부재판소서기 소삼민행小森敏行 [印]

判決

忠淸北道 堤川郡 西面 方下里 農
鄭澤伊事, 鄭仲澤, 當三十一歲

右ニ對スル內亂被告事件ニ付キ明治四十三年三月九日公州地方裁判所淸州支部ニ於テ言渡シタル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ヲ申立タルニヨリ審判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被告ノ控訴ハ之ヲ棄却ス

理由

被告ハ政府ヲ傾覆シ政事ヲ變更スルノ目的ヲ以テ韓國隆熙元年六月頃同一目的ヲ有スル暴動首魁李康年ノ部下ニ屬シ仝人ノ指揮ノ下ニ徒黨百餘名ト銃器ヲ携シ忠淸南道原州平昌ノ各郡忠淸北道永春丹陽ノ各郡ヲ橫行シ村民ヨリ金品ヲ徵發シ同年九月頃忠淸北道淸安郡近西面ニ於テ日本軍隊ト交戰シ以テ亂ヲ作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被告ノ當公廷ニ於ケル供述原審審問調書憲兵及檢事ノ被告ニ對スル各訊問調書等ニ徵レ證憑十分ナリトス
右被告ノ所爲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シ從犯ニ付キ仝法第百三十五條ニヨリ首犯

ノ刑ニ一等ヲ減シ犯情原諒スヘキヲ以テ仝法第百二十五條ニヨリ二等ヲ減シ流十年ニ處スヘキモノトス右同一理由ニ基ハキ同一處分ヲ爲シタル原判決ハ相當ナリトス但原判決書ヲ査閲スルニ契印ヲ爲サレルノ欠点アルモ被告ハ本件ニ付キ其主文記載ノ刑ノ言渡ヲ受ケタリト云ヒ又該判決書ノ前葉ト後葉トハ其筆蹟ヲ同ウシ且ソ前後文章ノ接續セルニヨリ前葉ハ後葉ニ署名捺印セル判事ノ作成ニ係ルモノト認メ得ラルヲ以テ結局被告ノ控訴ハ其理由ナレ仍テ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ニヨリ主文ノ如ク判決ス

檢事深澤新一郎干與ス

京城控訴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楠常藏 [印]

判事 申載永 [印]

判事 河村尙德 [印]

明治四十三年 四月 五日 宣告

書記 笹川慶次郎 [印]

판결

충청북도 제천군 서면西面 방하리方下里

농업, 정중택鄭仲澤 [일명 정택이(鄭澤伊)] 31세

위에 대한 내란 피고 사건에 대하여 명치43년1910 3월 9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언도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

주문

본 사건 피고의 제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는 정부를 전복하고 정사政事를 변경할 목적으로 한국 융희원년1907 6월경에 동일 목적의 폭동 괴수 이강년李康秊의 부하로 가담하여 그의 지휘를 받고 동류同類 1백 여 명과 총기를 휴대하고 충청북도 영춘永春·단양丹陽의 각 군을 횡행하면서 부락민으로부터 금품을 징발하고 금년 9월경에 충청북도 청안군淸安郡 근서면近西面에서 일본군대와 교전하고 난리를 일으킨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본 공판정에서의 공술, 원심 심문 조서, 헌병 및 검사의 피고에 대한 각 신문 조서 등에 의거하여 그 증거 충분하다.

위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5조에 해당하는 종범從犯이므로 동법 제135조에 의하여 수범首犯의 형刑에서 1등을 감하고, 범정犯情에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동법 제125조에 의하여 2등을 감하여 유流 10년에 처함이 상당할 것이다.

위와 동일한 이유에 따라 동일한 판결을 내린 원판결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판결을 사열하건대, 계인契印을 하지 않은 결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본건에 대하여 그 주문 기재의 형의 언도받았다고 하며, 또 그 판결서의 앞장前葉과 뒷장後葉과는 그 필적이 동일하고, 또 전후 문장의 접속된 점에 의하여 앞장은 뒷장에 서명날인署名捺印한 판사의 작성에 의한 것이라고 인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공소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형소송규칙民刑訴訟規則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심택신일랑深澤新一郎 관여하다.

경성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남상장楠常藏 [印]

판사 신재영申載永 [印]

판사 하촌상덕河村尙德 [印]

명치43년1910 4월 5일 선고

서기 세천경차랑笹川慶次郎 [印]

■ **정중택 판결문**(1910년 3월 9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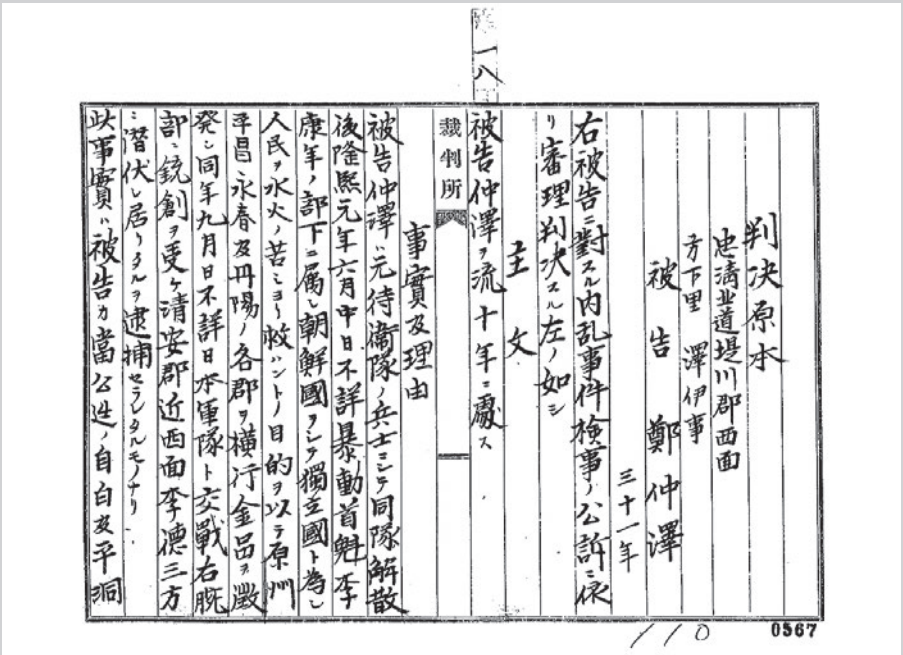

判決原本
忠清北道堤川郡西面
方下里 澤伊事
被告 鄭仲澤
三十一年
右被告ニ對スル内乱事件検事ノ公訴ニ依リ審理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仲澤ヲ流十年ニ處ス
裁判所
事實及理由
被告仲澤ハ元待衛隊ノ兵士ニシテ同隊解散後隆熙元年六月中日不詳暴動首魁李康年ノ部下ニ属シ朝鮮國ヲシテ獨立國ト為シ人民ヲ水火ノ苦ミヨリ救ハントノ目的ヲ以テ原州平昌永春及丹陽ノ各郡ヲ横行金品ヲ徴発シ同年九月日不詳日本軍隊ト交戰右腕部ニ銃創ヲ受ケ清安郡近西面李德三方ニ潜伏シ居リタルヲ逮捕セラレタルモノナリ
此事實ハ被告カ當公廷ノ自白及平洞

0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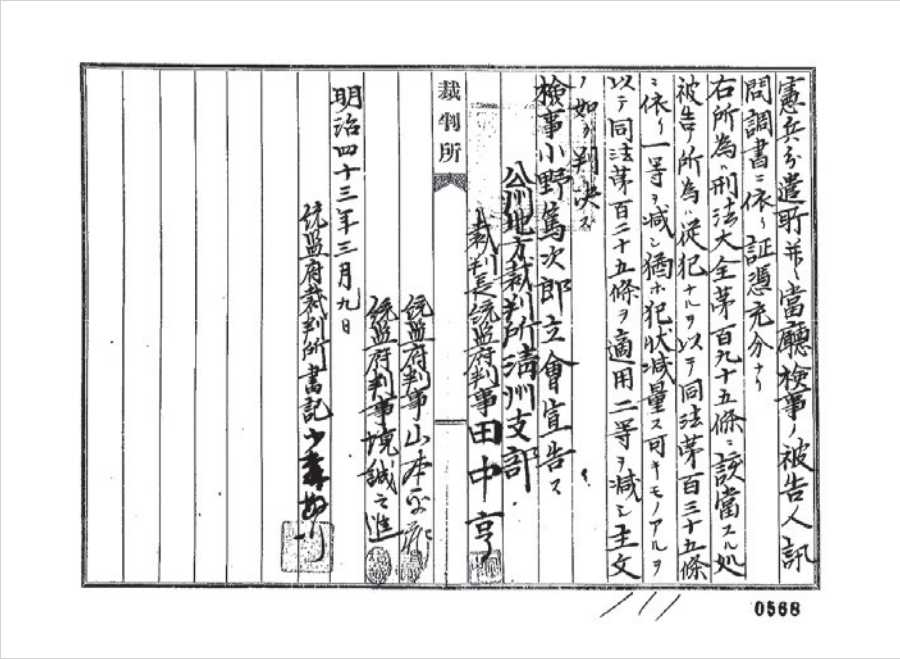

憲兵分遣所并ニ當廳検事ノ被告人訊問調書ニ依リ証憑充分ナリ
右所為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スル処被告ノ所為ハ從犯ナルヲ以テ同法第百三十五條ニ依リ一等ヲ減シ猶ホ犯状減量ス可キモノアルヲ以テ同法第百二十五條ヲ適用二等ヲ減シ主文ノ如ク判決ス
検事小野篤次郎立會宣告ス
公州地方裁判所清州支部
裁判長統監府判事田中亨
裁判所
統監府判事山本[illegible]
統監府判事境誠之進
明治四十三年三月九日
統監府裁判所書記[illegible]

0568

■ **정중택 판결문**(1910년 4월 5일, 경성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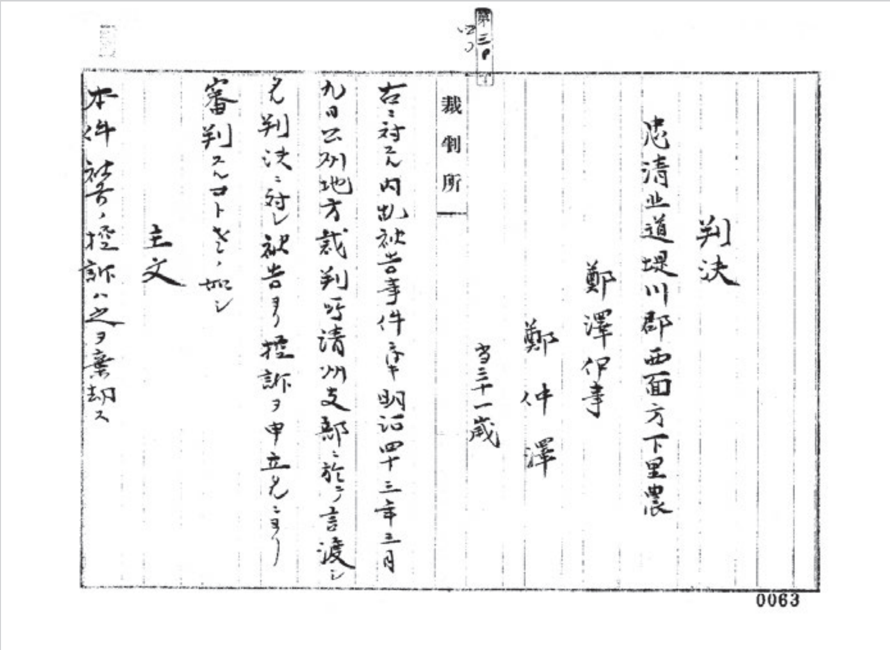

判決
忠清北道堤川郡西面方下里農
鄭澤伊事
鄭仲澤
当三十一歳
右ニ対スル内乱被告事件ニ付明治四十三年三月九日公州地方裁判所清州支部ニ於テ言渡シタル判決ニ対シ被告ヨリ控訴ヲ申立タルニヨリ審判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被告ノ控訴ハ之ヲ棄却ス
裁判所
0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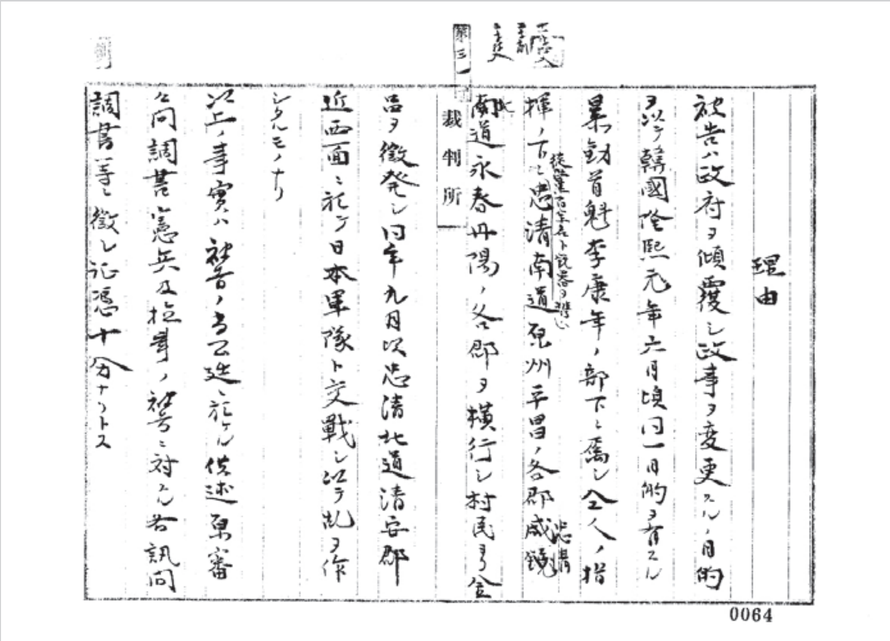

理由
被告ハ政府ヲ傾覆シ政事ヲ変更スルノ目的ヲ以テ韓国隆熙元年六月頃ヨリ一月間ヲ期スル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ト為シ全人ノ指揮ノ下ニ徒党百余名ト共ニ兇器ヲ携ヘ忠清南道原州平昌ノ各郡或ハ忠清北道永春丹陽ノ各郡ヲ横行シ村民ヨリ金品ヲ徴発シ同年九月頃忠清北道清安郡近西面ニ於テ日本軍隊ト交戦シ以テ乱ヲ作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実ハ被告ノ当公廷ニ於ケル供述原審ニ於ケル同調書憲兵及検事ノ被告ニ対スル各訊問調書等ニ徴シ証憑十分ナリトス
裁判所
0064

右被告ノ所為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シ從犯
ナ全法第百三十五條ニヨリ首犯ノ刑ニ一等ヲ減シ
犯情原諒ス可キモノアルヲ以テ全法第百二十五條ニヨリ二等ヲ
減シ流十年ニ處スヘキモノトス
右ノ理由ニ基キ同一処分ヲ為シタル原判決ハ
相當ナリトス但原判決書ヲ査閲スルニ契印ヲ為サザル
欠点アルモ被告ハ本件原審其主文記載ノ刑ノ言
渡ヲ受ケタルコトニシテ該判決書ノ前葉ト後葉トハ
其筆蹟ヲ同ウシ且ツ前後文章ノ接續セルニヨリ前
葉ハ後葉ノ署名捺印セル判事ノ作成ニ係ルモノト認メ
得ラルルヲ以テ結局被告ノ控訴ハ其理由ナシ仍テ
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ニヨリ主文ノ如ク

0065

判決ス
檢事深澤新一郎干與ス

京城控訴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illegible]
判事 [illegible]
判事 [illegible]

明治四十三年四月五日宣告
書記 [illegible]

0066

18. 김춘삼

判決原本

忠淸北道 淸風郡 北面 沙蒼里居 農

金春三, 卅五年

右被告ニ對スル內亂事件檢事ノ公訴ニ依リ審理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春三ヲ流十五年ニ處ス

事實及理由

被告春三ハ趙東奎カ時局ヲ憤慨シ在韓日本人ヲ殺害シ政事ヲ變更セレトノ目的ヲ以テ內亂ヲ起シタル情ヲ知リ其部下ニ屬シ自ラ軍事ト稱シ卽チ傳令ノ任ニ當リ左ノ行動ヲ爲タルモノトス

明治四十年七月中東奎其他百五六十名ト共ニ銃器ヲ携帶シ堤川原州忠州淸風ノ各郡ヲ徘徊シ軍用ト稱シ民家ヨリ金品ヲ徵發シ忠州郡ニ於テ日本軍隊ト面ノ交戰ヲ爲シ尙ホ同年八月中淸風邑內ヲ包圍攻擊シ巡査駐在所及民家ニ放火シタルヨリ首魁李康年其他七八百名ト合同シ忠州邑內ヲ包圍攻擊シ日本守備隊ト交戰シタルモ遂ニ敗走其後自家ニ潛伏シ居ル處憲兵ニ逮捕セラレタルモノナリ

此事實ハ被告カ當法廷ノ陳述憲兵及檢事ノ被告訊問調書憲兵ノ逮捕告發調書ニ依リ證據充分ナリ

右所爲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スル處被告ノ所爲ハ從犯ナルヲ以テ同法第百三十五條ヲ適用シ本刑ニ一等ヲ減シ尙ホ犯狀減量ス可キモノアルヲ以テ同法第百卄五條ニ依リ一等ヲ減シ通シテ二等ヲ減シ主文ノ如ク判決ス

檢事小野篤次郎在會宣告

明治四十三年 三月 十八日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裁判長 統監府判事 田中亨 [印]
統監府判事 山本平藏 [印]
統監府判事 境誠之進 [印]

明治四十三年 三月 十八日 宣告
統監府裁判所書記 小森敏行 [印]

판결원본

충청북도 청풍군 북면北面 사창리沙蒼里 거주
농업, 김춘삼金春三 35세

위 피고에 대한 내란사건 검사의 공소에 의해 심리·판결함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김춘삼을 유형流刑15년에 처함.

사실 및 이유

피고 김춘삼은 조동규趙東奎가 시국에 분개하여 재한일본인을 살해하고 정사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사정을 알고 그의 부하로 들어가 자신을 군사라 칭하고, 곧 전령의 임무를 맡아 다음의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

명치40년1907 7월 중에 조동규와 기타 150~160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제천·원주·충주·청풍의 각 군을 배회하고 군용이라 칭하며 민가로부터 금품을 징발하였고, 충주군에서 일본군대와 만나 교전을 행하였고, 또한 동년 8월 중에 청풍읍내를 포위 공격하여 순사주재소 및 민가에 방화하면서부터 수괴 이강년李康秊과 기타 7~8백 명과 합동으로 충주읍내를 포위 공격하여 일본수비대와 교전한 것도 결국 패주하였고, 그 후 자신의 집

에 잠복하며 거처하다가 헌병에게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피고가 한 당 법정에서의 진술, 헌병 및 검사의 피고 신문조서, 헌병의 체포 고발조서에 의해 증거가 충분하다.

위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의 소위는 종범이므로 동법 제135조를 적용하고 본형에서 1등을 감한다. 또한 범죄 정황에 감량 할 만한 점도 있기 때문에 동법 125조에 의해 1등을 감하고 잇달아 2등을 감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소야독차랑小野篤次郎이 재회在會하여 선고함.

명치43년1910 3월 18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재판장 통감부판사 전중형田中亨 [印]
통감부판사 산본평장山本平藏 [印]
통감부판사 경성지진境誠之進 [印]

명치43년1910 3월 18일 선고
통감부재판소서기 소삼민행小森敏行 [印]

判決

忠淸北道 淸風郡 北面 沙蒼里居 農

金春三, 三十五年

右內亂被告事件ニ付明治四十三年三月十八日公州地方裁判所淸州支部ニ於テ言渡セシ有罪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申立タルニ依リ更ニ審判スルフ左ノ如シ

主文

原判決ヲ取消ス

被告ヲ十年ノ流ニ處ス

理由

被告ハ趙東奎ナル者カ時局ヲ憤慨シ政事ヲ變更スルノ目的ヲ以テ內亂ヲ起シタル情ヲ知リ其部下ニ屬シ其指揮ヲ受ケ明治四十年七月中東奎其他百五六十名ト共ニ銃器ヲ携帶シ堤川原州忠州淸風ノ各郡ヲ徘徊シ軍用ニ供スル爲メ諸所ノ民家ヨリ金品ヲ徵發シ忠州郡ニ於テ日本守備隊ト一回交戰シ尙同年八月中淸風邑內ヲ包圍攻擊シ其后李康年其他七百餘名ト合同シ同月中忠州邑內ヲ襲擊シタルモ日本守備隊ノ爲メニ擊攘セラレ以テ犯意繼續內亂罪ヲ作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被告カ當公廷ノ供述ハ憲兵伍長ノ被告訊問調書(三號以下)同被告訊問調書(二九號以下)檢事ノ被告訊問調書逮捕告發調書ニ鑑シ其證憑十分ナリトス

被告ノ所爲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スルモ從犯ナルヲ以テ同法第百三十五條ヲ適用シ本刑ニ一等ヲ減シ犯情酌量スヘキヲ依リ同法第百二十五條ニ依リ二等ヲ酌減シ拾年ノ流ニ處スヘキモノトス

原判決ニ於テ右同一事實ヲ認メナカラ流十五年ニ處シタルハ失當ニシテ被告ノ控訴ハ其理由アルニ依リ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ニ依リ主文ノ通リ判決ス

檢事金洛憲干與

京城控訴院 刑事部

裁判長 判事 楠常藏 [印]
判事 申載永 [印]
判事 河村尙德 [印]

明治四十三年 四月 十九日 宣告
書記 笹川慶次郎 [印]

판결

충청북도 청풍군 북면北面 사창리沙蒼里 거주
농업, 김춘삼金春三 35세

위 내란 피고사건에 대한 명치43년1910 3월 18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언도된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로부터 공소가 제기된 것에 의해 다시 심판한 것은 다음과 같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함.
피고를 10년 유형流刑에 처함.

이유

피고는 조동규趙東奎라는 자가 시국에 대해 분개하여 정사를 변경 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자 한 사정을 알고 그의 부하로 들어가 그의 지휘를 받다가, 명치40년1907 7월 중에 조동규와 기타 150~160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제천·원주·충주·청풍의 각 군을 배회하며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소諸所의 민가에서 금품을 징발하고, 충주군에서 일본수비대와 한 차례 교전하였다. 또한 동년 8월 중에 청풍읍내를 포위 공격하고 그 후에 이강년李康季과 기타 700여 명과 합동으로 동월 중에 충주읍내를 습격했다가도 일본수비대에게 격퇴 당했으므로 범행 의도를 계속하여 내란죄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가 한 당 공정公廷에서의 공술, 헌병오장의 피고 신문조서3호 이하,

동 피고 신문조서29호 이하, 검사의 피고 신문조서, 체포고발조서에 비추어 그 증빙이 충분하다.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는 바, 종범이므로 동법 제135조를 적용하여 본형에서 1등을 감하고, 범행 정황에서 참작할 만한 것에 의해 동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2등을 감안하여 감하고, 10년의 유형에 처하기로 한다.

원판결에서 위의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형 15년에 처함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공소를 그 이유가 있음에 의해 주문 그대로 판결함.

검사 김낙헌金洛憲이 관여함.

경성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남상장楠常藏 [印]

판사 신재영申載永 [印]

판사 하촌상덕河村尙德 [印]

명치43년1910 4월 19일 선고

서기 세천경차랑笹川慶次郎 [印]

■ **김춘삼 판결문**(1910년 3월 18일,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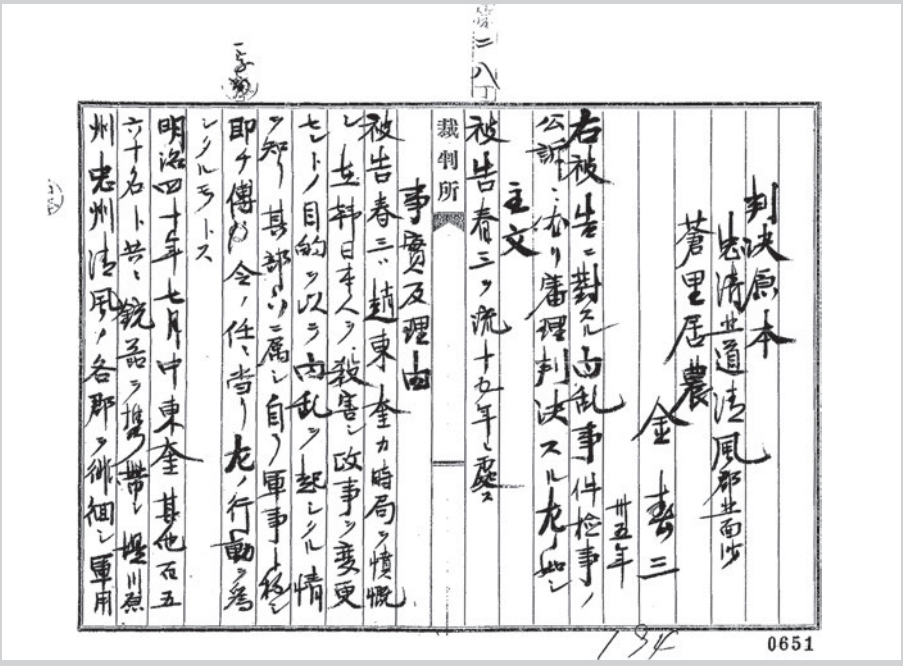

判決原本
忠清北道清風郡北面沙
蒼里居農
金春三
卅五年
右被告ニ對スル內亂事件檢事ノ
公訴ニ依リ審理判決スル左如シ
主文
被告春三ヲ流十五年ニ處ス
裁判所
事實及理由
被告春三ハ趙東奎カ時局ヲ憤慨
シ在料日本人ヲ殺害シ政事ヲ変更
セントノ目的ヲ以テ內亂ヲ起シタル情
ヲ知リ其部ハ二屬シ自ラ軍事ト移シ
即チ傳令ノ任ニ當リ左ノ行動ヲ爲
シタルモノトス
明治四十年七月中東奎其他百五
六十名ト共ニ銃器ヲ携帶シ堤川烈
州忠州清風ノ各郡ヲ徘徊シ軍用

0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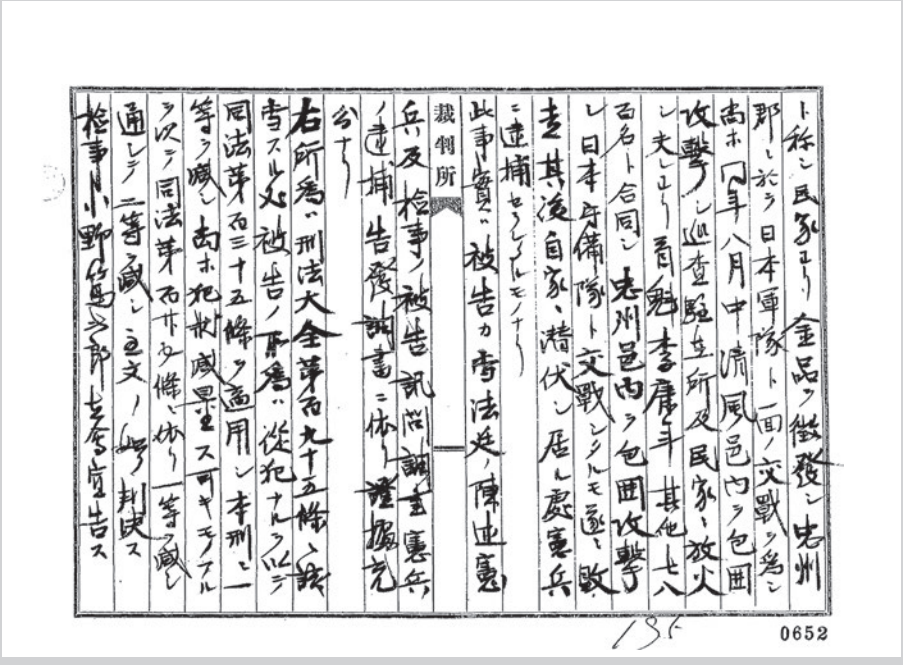

ト稱シ民家ニ於テ金品ヲ徵發シ忠州
郡ニ於テ日本軍隊ト一回ノ交戰ヲ爲シ
尚ホ同年八月中清風邑內ヲ包囲
攻擊シ巡査駐在所及民家ニ放火
シ夫レニ引續キ李廣年其他七八
百名ト合同シ忠州邑內ヲ包囲攻擊
シ日本守備隊ト交戰シタルモ遂ニ敗
走其後自家ニ潛伏シ居ル處憲兵
ニ逮捕セラレタルモノナリ
此事實ハ被告カ當法廷ノ陳述憲
裁判所
兵及檢事ノ被告訊問調査憲兵
ノ逮捕告發調書ニ依リ證據充
分ナリ
右所爲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
當スル処被告ノ所爲ハ從犯ナルヲ以テ
同法第百三十五條ヲ適用シ本刑ニ一
等ヲ減シ尚ホ犯狀減量ス可キモノアル
ヲ以テ同法第百廿五條ニ依リ一等ヲ減シ
通シテ二等ヲ減シ主文ノ如ク判決ス
檢事小野信馬之郎在官宣告ス

0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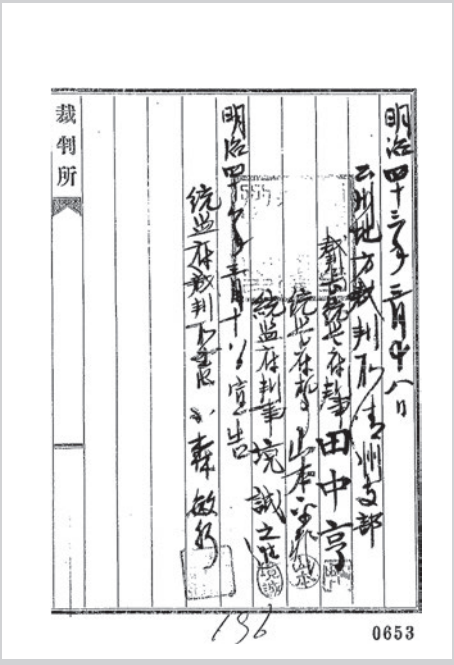
裁判所

0653

김춘삼 판결문(1910년 4월 19일, 경성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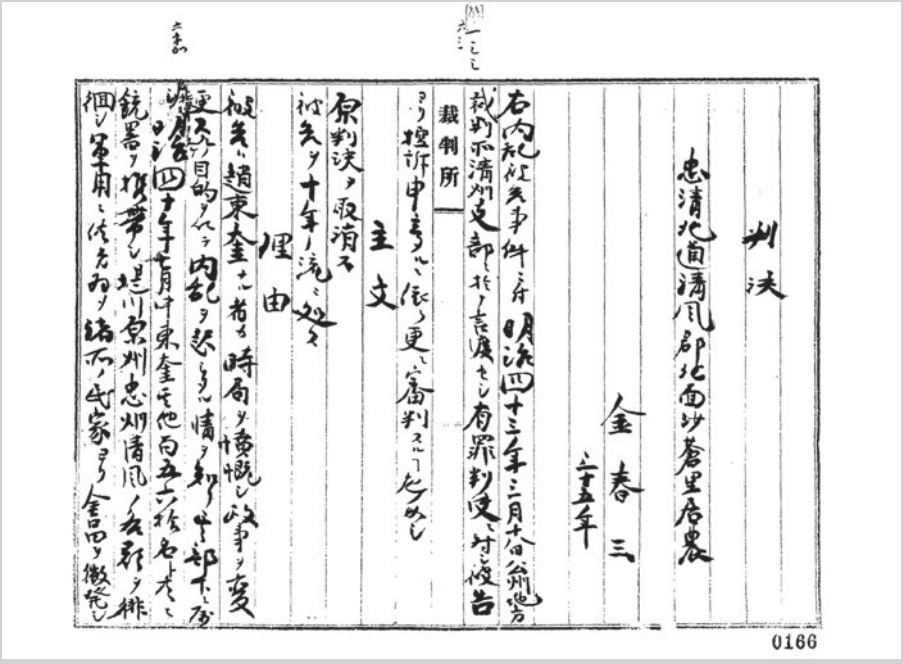
裁判所

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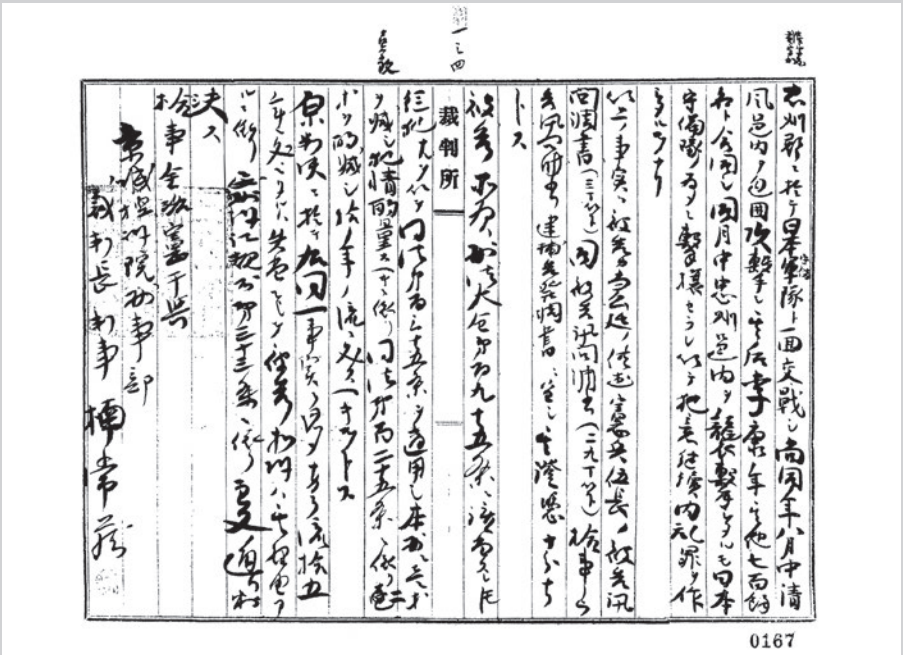

裁判所

0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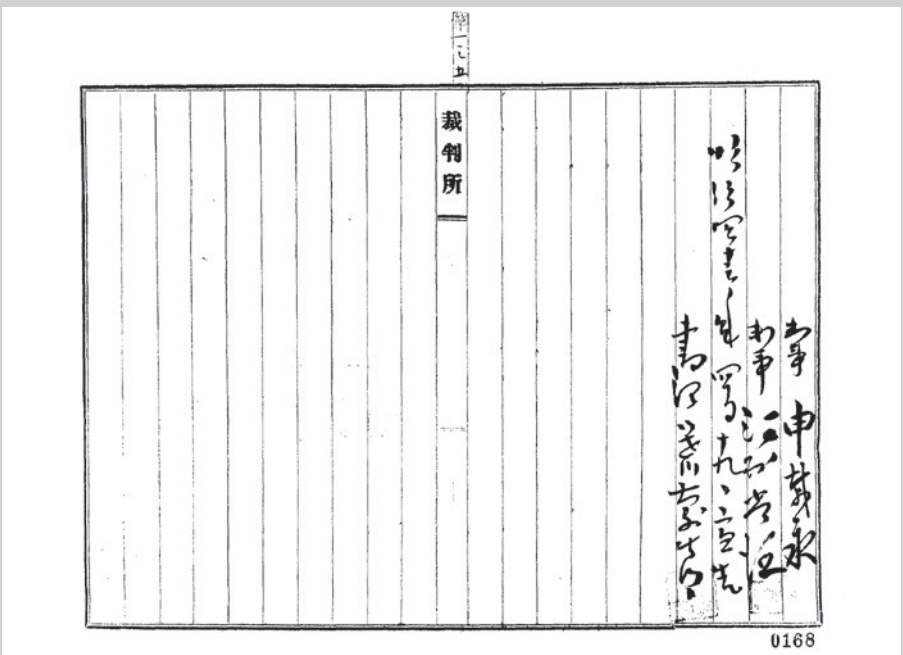

裁判所

0168

19. 강수원

判決原本

忠淸北道 堤川郡 東面 黑石里 居 日傭稼
被告 姜遂元, 當三十四年

右被告ニ對スル暴動及殺人事件ニ付檢事小野篤次郎干與審理ヲ遂ケ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姜遂元ヲ懲役十五年ニ處ス
押收ニ係ル火繩銃一挺火藥空筒一個火繩一筋ハ之ヲ沒收ス

事實及理由

被告ハ明治四十年陰七月中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屬シ砲軍ニ編入セラレ火繩銃一挺ヲ受領シ爾後各所徘徊中仝月十四五日頃永春郡邑內附近方頭里ニ於テ康年ノ命ニ依リ同夥百餘名ト共ニ日本巡査ヲ包圍シ交戰ノ結果巡査二名ヲ銃殺シ該死屍ハ同邑內入口ノ路傍ニ在ル樹木ニ立掛ケ之ヲ燒棄シタリ
以上ノ事實ハ司法警察官ノ第二回被告人訊問調書及檢事ノ被告人訊問調書當法廷ニ於ケル被告ノ供述等ヲ綜合シテ其證憑充分ナリ
右所爲ヲ法律ニ照スニ康年ニ從ヒ各地ヲ徘徊シテ該地方ヲ騷擾セレメタル所爲ハ刑法大仝第六百七十七條ニ該當スル処從犯ナルヲ以テ仝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刑ニ一等ヲ減シ康年ノ命ニ依リ巡査二名ヲ銃殺シタル所爲ハ仝第四百七十三條謀殺ノ助力ヲナレタルモノニ該當スル処其犯情原諒スヘキモノアルヲ以テ仝第百二十五條ニ依リ本刑ニ二等ヲ減シ二罪俱發ニ付仝第百二十九條ヲ適用シ重キ謀殺罪ニ從ヒ懲役十五年ニ處シ押收ニ係ル火繩銃一挺外二点ハ應禁物ニ付仝第百十八條ニ依リ之ヲ沒收スルヲ相當ト認ソ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 四月 一日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裁判長 統監府判事 田中亨 [印]
統監府判事 洪祐夔 [印]
統監府判事 境誠之進 [印]

明治四十三年 四月 一日 言渡
統監府裁判所書記 小森敏行 [印]

판결원본

충청북도 제천군 동면東面 흑석리黑石里에 거주
일용가日傭稼, 피고 강수원姜遂元 34세

위 피고에 대한 폭동 및 살인사건에 관하여 검사 소야독차랑小野篤次郎의 관여로 심리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강수원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와 관련된 화승총火繩銃 1정, 화약공통火藥空筒 1개, 화승火繩 1근은 몰수한다.

사실과 이유

피고는 명치40년1907 음력 7월 중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로 들어가 포군砲軍에 편입되어 화승총 1정을 수령한 이후 각소에 배회하던 중, 동월 14~15일경 영춘군永春郡 읍내부근 방두리方頭里에서 이강년李康秊의 명에 따라 같은 무리 100여 명과 함께 일본 순사를 포위하고 교전한 결과 순사 2명을 총살한 후 그 시체를 동 읍내 입구의 길가에 서 있던 나무에 걸어 태워버렸다.

이상의 사실은 사법경찰관의 제2회 피고인 신문조서 및 검사의 피고인 신문조서, 당

법정에서 행한 피고의 공술供述 등을 종합하면 그 증거가 충분하다.

이 소위所爲를 법률에 비춰보면, 이강년李康秊을 따라 각지를 배회하며 해당 지방들을 소요시킨 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에 해당하나 종범從犯이기 때문에 동 제 135조에 의해 수범首犯의 형에서 1등을 감한다. 이강년李康秊의 명에 의해 순사 2명을 총살했다는 소위는 동 제 473조에 의해 본형에서 2등을 감한다. 두 죄가 일시에 발생한 것에 대해 동 제 129조를 적용한 '무거운 모살죄'에 따라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한 화승 총 1정 외 2점은 응당 금지물품이므로 동 제 118조에 따라 이것을 몰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43년1910 4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재판장 통감부판사 전중형田中亨 [印]
통감부판사 홍우기洪祐夔 [印]
통감부판사 경성지진境誠之進 [印]

명치43년1910 4월 1일 언도
통감부재판소서기 소삼민행小森敏行 [印]

■ **강수원 판결문**(1910년 4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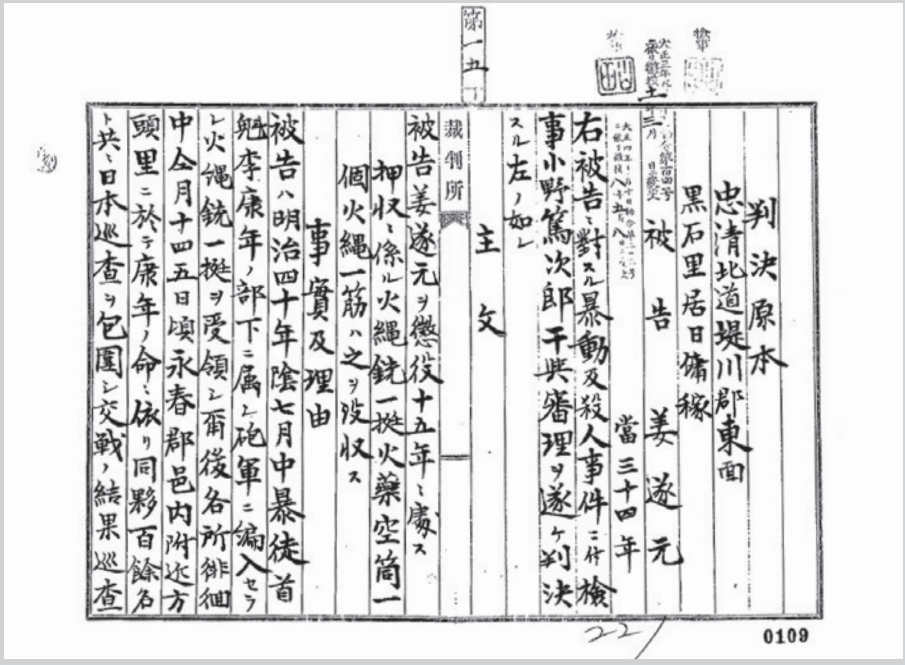

判決原本
忠清北道堤川郡東面
黒石里居住傭稼
被告姜遂元 當三十四年
右被告ニ對スル暴動及殺人事件ニ付檢
事小野篤次郎干與審理ヲ遂ケ判決
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姜遂元ヲ懲役十五年ニ處ス
押収ニ係ル火縄銃一挺火藥空筒一
個火縄一筋ハ之ヲ沒収ス
事實及理由
被告ハ明治四十年陰七月中暴徒首
魁李康年ノ部下ニ屬シ砲軍ニ編入セラ
レ火縄銃一挺ヲ受領シ爾後各所徘徊
中今月十四五日頃永春郡邑内附近方
頭里ニ於テ康年ノ命ニ依リ同黨百餘名
ト共ニ日本巡査ヲ包圍シ交戦ノ結果巡査

裁判所

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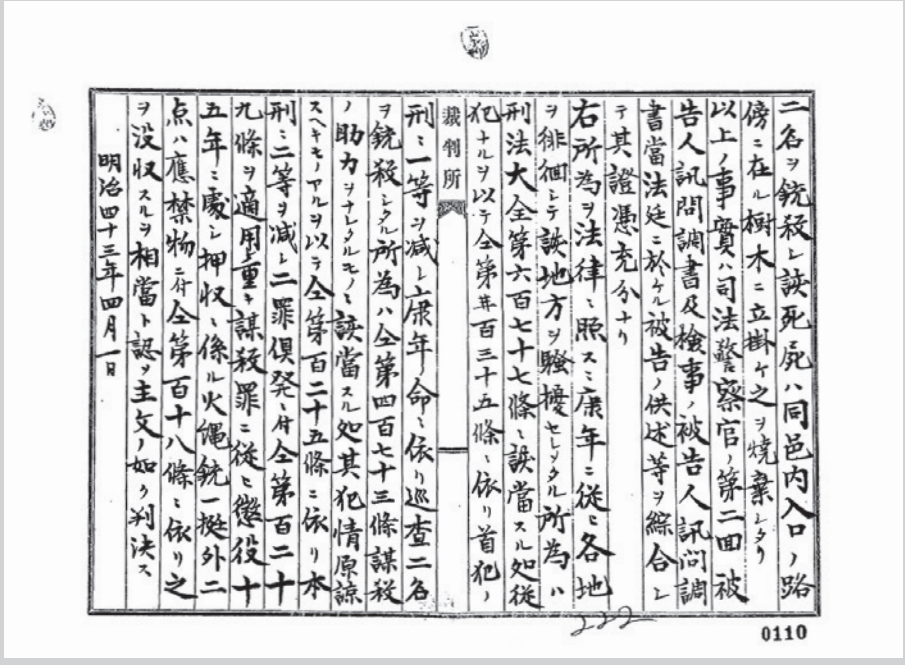

二名ヲ銃殺シ訣死屍ハ同邑内入口ノ路
傍ニ在ル樹木ニ立掛ケ之ヲ燒棄シタリ
以上ノ事實ハ司法警察官ノ第二回被
告人訊問調書及檢事ノ被告人訊問調
書當法廷ニ於ケル被告ノ供述等ヲ綜合シ
テ其證憑充分ナリ
右所為ヲ法律ニ照スニ康年ニ從ヒ各地
ヲ徘徊シテ訣地方ヲ騷擾セシメタル所為ハ
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條ニ該當スル処從
犯ナルヲ以テ全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
裁判所
刑ニ一等ヲ減シ康年ノ命ニ依リ巡査二名
ヲ銃殺シタル所為ハ全第四百七十三條謀殺
ノ助力ヲナシタルモノニ該當スル処其犯情原諒
スヘキモノアルヲ以テ全第百二十五條ニ依リ本
刑ニ二等ヲ減シ二罪俱発ニ付全第百二十
九條ヲ適用重キヲ以テ謀殺罪ニ從ヒ懲役十
五年ニ處シ押収ニ係ル火縄銃一挺外二
点ハ應禁物ニ付全第百十八條ニ依リ之
ヲ沒収スルヲ相當ト認ヲ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四月一日

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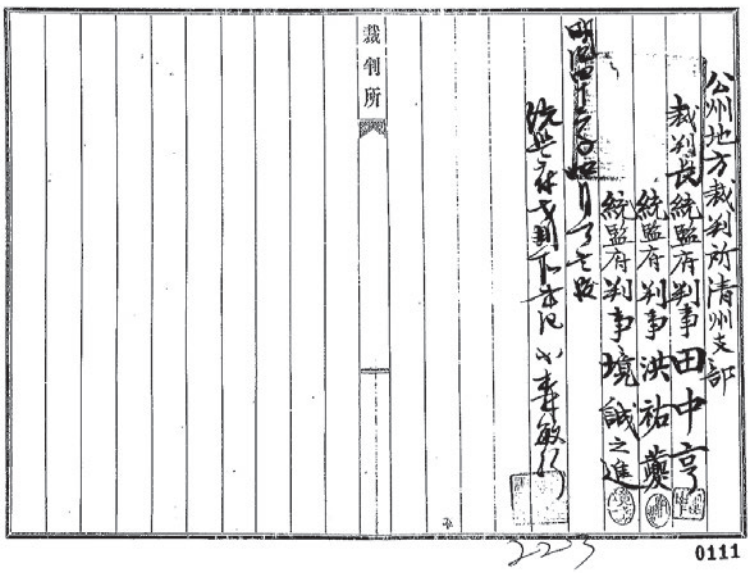
公州地方裁判所清州支部
裁判長統監府判事田中亨
統監府判事洪祐藁
統監府判事境誠之進
裁判所
0111

20. 김홍기

判決原本

江原道 寧越郡 右邊面 下金馬屯里居 農業
被告 金弘基, 當三十四年

右被告ニ對スル暴動及强盜事件ニ付檢事小野篤次郎干與審理ヲ遂ケ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金弘基ヲ懲役十年ニ處ス

事實及理由

第一被告ハ明治四十年陰十月十五日頃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金豊基外一名ノ勸メニ依リ暴徒ノ群ニ投シ各所徘徊中同人等ト共ニ銃器棍棒等ヲ携シ堤川郡北面日谷里居智秉彦方ニ突入シ同人ヲ威嚇シ金拾五円ト草鞋若干ヲ劫奪シタリ

第二仝月廿七日暴徒首魁尹某ノ部下ニ屬シ翌十一月日不詳尹某ニ從ヒ部下五十名ト共ニ銃器等ヲ携シ橫城郡夫羅吾里居姓名不祥ノ寡婦方ニ突入シ家人ヲ威嚇シ養牛二頭ヲ劫奪シタリ

第三仝年陰十一月日不詳前同一ノ人員ト共ニ同一ノ銃器等ヲ携シ江陵郡本手里居氏名不詳ノ民家ニ突入シ家人ヲ威嚇シ唐木三疋ヲ劫奪シ被告ハ九尺ノ分配ヲ受ケタリ

第四明治四十一年陰四月五日暴徒首魁蔡定文ノ部下ニ屬シ同夥三十名ト共ニ原州永春ノ各郡ヲ徘徊中仝月十二日頃丹陽守備隊ノ襲撃ヲ受ケ交戰ノ結果敗走ノ際左膝部ニ貫通銃創ヲ受ケタルモ他人ノ援助ヲ受ケ逃走ヲ遂ケタリ

以上ノ事實ハ司法警察官及檢事ノ被告人訊問調書被害者智秉彦ノ屆書當法廷ニ於ケル被告ノ供述等ヲ綜合シテ其證憑充分ナリ

右第一第二第三ノ所爲ハ共ニ刑法大全第五百九十三條第一號既得財律ニ該當シ第四ノ所

爲ハ仝第六百七十七條ニ該當スルモ暴動ノ罪ハ從犯ニ付仝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刑ニ一等ヲ減シ强盜ノ罪ハ其所犯情狀何レモ原諒スヘキモノアルヲ以テ仝第百二十五條ニ依リ各本刑ニ三等ヲ減シ四罪俱發ニ付仝第百二十九條ヲ適用シ第一强盜罪ノ一一從ヒ懲役十年ニ處スルヲ相當ト認メ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 四月 一日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裁判長 統監府判事 田中亨 [印]
統監府判事 洪祐夔 [印]
統監府判事 境誠之進 [印]

明治四十三年 四月 一日 言渡
統監府裁判所書記 小森敏行 [印]

판결원본

강원도 영월군 우변면右邊面 하금마둔리下金馬屯里 거주
농업, 피고 김홍기金弘基 34세

위 피고에 대한 폭동 및 강도 사건에 대하여 검사 소야독차랑小野篤次郎이 관여하여 심리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김홍기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피고는 명치40년1907 음력 10월 15일경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 김풍기金豊基 외 1명의 권유에 의해 폭도의 무리로 들어가 각소를 배회하던 중에 동 인 등과 함께 총기·곤봉 등을 가지고 제천군 북면北面 일곡리日谷里에 거주하는 지병언智秉彦 방方에 돌입하

여 동 인을 위협하여 금 15원과 초혜草鞋 약간을 겁탈하였다.

제2, 동월 27일 폭도 수괴 윤尹 모의 부하에 소속되어 다음 11월 모일에 윤 모를 따라 부하 50명과 함께 총기 등을 가지고 횡성군 부라오리夫羅吾里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인의 과부寡婦 방에 돌입하여 가인家人을 위협하여 가축 소 2마리를 겁탈하였다.

제3, 동년 음력 11월 모일에 앞의 동일한 인원과 함께 동일한 총기 등을 가지고 강릉군 본수리本手里에 거주하는 씨명 불상인의 민가에 볼입하여 가인을 위협하여 당목唐木 3필을 겁탈하였고, 피고는 9척을 분배받았다.

제4, 명치41년1908 음력 4월 5일에 폭도 수괴 채정문蔡正文의 부하에 소속되어 동 무리 30명과 함께 원주·永春의 각 군을 배회하던 중에 동월 12일경 단양수비대의 습격을 받아 교전 한 결과 패주敗走 할 즈음에 왼쪽 무릎 부위에 관통 총상을 당하고도 타인의 원조를 받아 도주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고인 신문조서, 피해자 지병언의 계서屆書, 註 신고서, 당 법정에서 피고의 공술 등을 종합하면 그 증빙이 충분하다.

앞의 제1·제2·제3의 소위는 함께 형법대전 제593조 제1호 기득재율에 해당하고, 제4의 소위는 동 제677조에 해당하지만, 폭동의 죄는 종범이므로 동 제135조에 의해 수범의 형에서 1등을 감하고, 강도의 죄는 그 범행의 정황 모두 원량原諒하기로 했기에 동 제125조에 의해 각기 본형에서 3등을 감하고, 4가지 죄가 함께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 제129조를 적용하고, 제1 강도죄의 1에 따라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43년1910 4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재판장 통감부판사 전중형田中亨 [印]
통감부판사 홍우기洪祐夔 [印]
통감부판사 경성지진境誠之進 [印]

명치43년1910 4월 1일 언도
통감부재판소서기 소삼민행小森敏行 [印]

■ **김홍기 판결문**(1910년 4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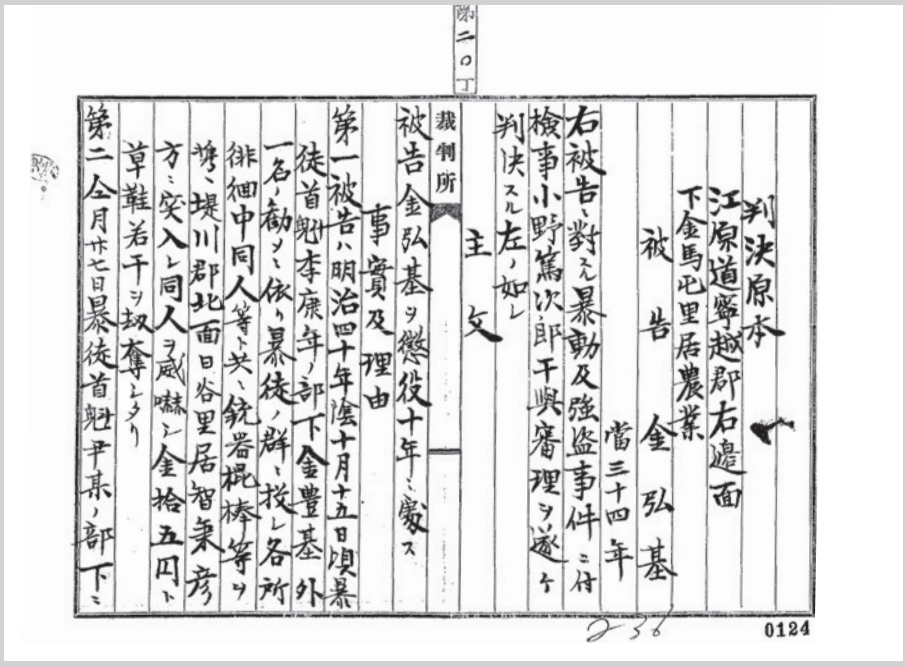

判決原本
江原道寧越郡右邊面
下金馬屯里居農業
被告 金弘基
當三十四年
右被告ニ對シ暴動及強盜事件ニ付
檢事小野篤次郎干與審理ヲ遂ケ
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裁判所
被告金弘基ヲ懲役十年ニ處ス
事實及理由
第一被告ハ明治四十年陰十月十五日頃暴
徒首魁李康年ノ部下金豊基外
一名ノ勸メニ依リ暴徒ノ群ニ投シ各所
徘徊中同人等ト共ニ銃器棍棒等ヲ
携ヘ堤川郡北面日谷里居智秉彦
方ニ突入シ同人ヲ威嚇シ金拾五円ト
草鞋若干ヲ奪取シタリ
第二今月廿七日暴徒首魁尹某ノ部下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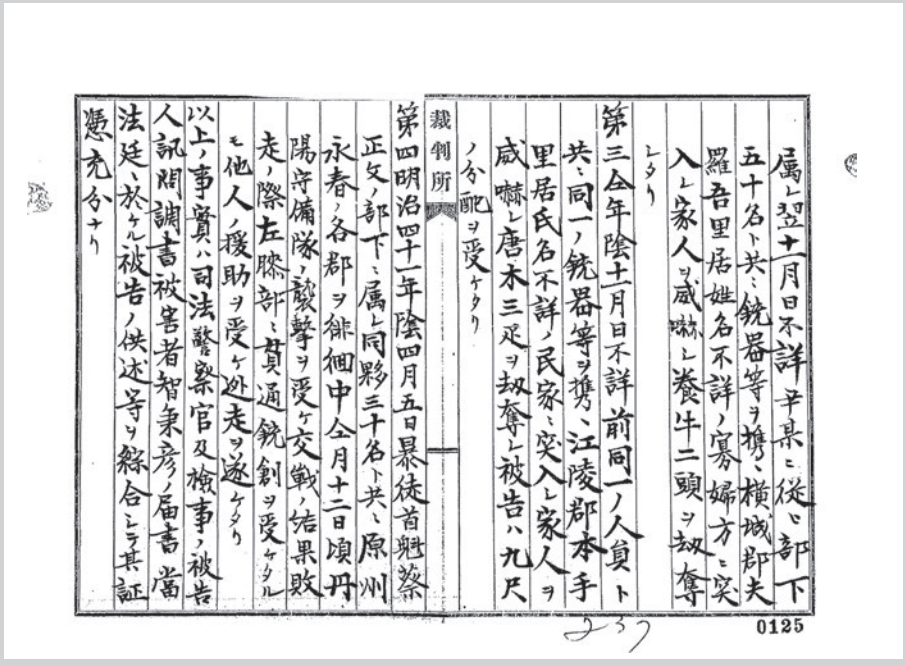

屬シ翌十月日不詳尹某ニ從ヒ部下
五十名ト共ニ銃器等ヲ携ヘ横城郡夫
羅吾里居姓名不詳ノ寡婦方ニ突
入シ家人ヲ威嚇シ養牛二頭ヲ奪取
シタリ
第三今年陰十月日不詳前同一ノ人員ト
共ニ同一ノ銃器等ヲ携ヘ江陵郡本手
里居民名不詳ノ民家ニ突入シ家人ヲ
威嚇シ唐木三疋ヲ奪取シ被告ハ九尺
ノ分配ヲ受ケタリ
裁判所
第四明治四十一年陰四月五日暴徒首魁蔡
正文ノ部下ニ屬シ同夥三十名ト共ニ原州
永春ノ各郡ヲ徘徊中今月十二日頃丹
陽守備隊ノ襲撃ヲ受ケ交戰ノ結果敗
走ノ際左膝部ニ貫通銃創ヲ受ケタル
モ他人ノ援助ヲ受ケ逃走ヲ遂ケタリ
以上ノ事實ハ司法警察官及檢事ノ被告
人訊問調書被害者智秉彦ノ届書當
法廷ニ於ケル被告ノ供述等ヲ綜合シテ其証
憑充分ナ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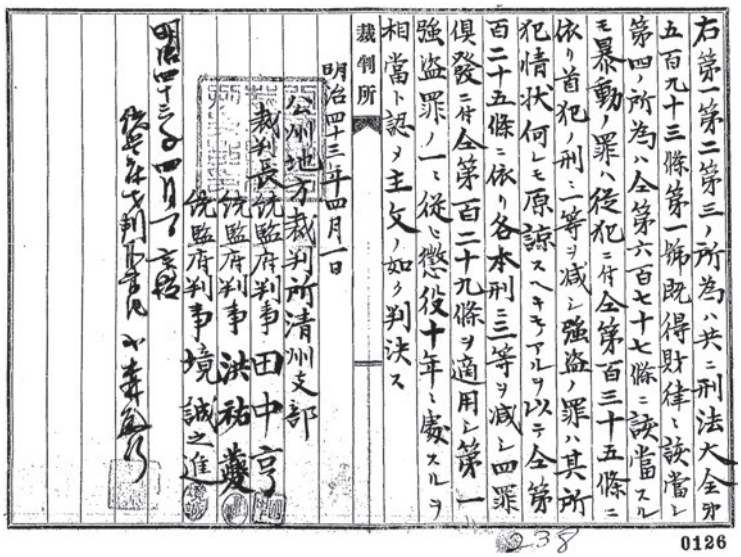

右第一第二第三ノ所為ハ共ニ刑法大全第
五百九十三條第一號既得財律ニ該當シ
第四ノ所為ハ仝第六百七十七條ニ該當スル
モ暴動ノ罪ハ從犯ニ付仝第百三十五條ニ
依リ首犯ノ刑ニ一等ヲ減シ強盜ノ罪ハ其所
犯情狀何レモ原諒スヘキモノアルヲ以テ仝第
百二十五條ニ依リ各本刑ニ三等ヲ減シ四罪
俱發ニ付仝第百二十九條ヲ適用シ第一
強盜罪ノ一ニ從ヒ懲役十年ニ處スルヲ
相當ト認メ主文ノ如ク判決ス

裁判所

明治四十三年四月一日

公州地方裁判所清州支部
裁判長統監府判事 田中亨
統監府判事 洪祐夔
統監府判事 境誠之進

明治四十三年四月一日 言渡
[illegible]

0126

21. 이효경

判決原本

忠淸北道 堤川郡 東面 黑石里居 農業

被告 李孝敬, 當二十九年

右被告ニ對スル强盜殺人及暴動事件ニ付檢事小野篤次郎干與審理ヲ遂ケ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李孝敬ヲ流十五年ニ處ス

事實及理由

第一.被告ハ暴徒首魁李康年カ韓國現時ノ狀態ニ憤慨シ內亂ヲ起スノ趣旨ニ贊同シ明治四十年陰七月十二三日頃仝人ノ部下ニ屬シ砲軍ニ編入セラレ火繩銃一挺ヲ授ケラレ爾來仝人ニ從ヒ永春郡ノ各所ヲ徘徊中仝月十四五日頃仝郡方頭里ニ於テ康年ノ命ニ依リ同夥百七十餘名ト共ニ日本巡査ヲ包圍レ交戰ノ結果巡査二名ヲ銃殺シ該死屍ハ康年ノ命ニ依リ其首ヲ馘シ兩耳ニ繩ヲ透シ邑內入口路傍ノ樹上ニ垂下シ康年以下萬歲ヲ唱シタル後之ヲ燒棄シ仝夜駐在所ニ侵入シ日本巡査ノ被服銃劍等ハ之ヲ掠奪シ其所持品ハ悉皆之ヲ燒棄シ爾來同夥三百名以上ニ達シ永春寧越丹陽堤川ノ各郡ニ於テ飮食物其他物品金錢等ヲ徵發シ該地方ヲ騷擾セレメ仝月十七日頃堤川郡北面五味洞ニ至リタル際日本守備隊ノ襲擊ヲ受ケ交戰ノ結果同夥ノ多數ハ戰死ヲ遂ケ或ハ逃走シタルヨリ被告ハ康年及其他百餘名ト共ニ淸風郡北面錦肅山ニ潛伏中明治四十一年陰七月中再ヒ日本守備隊ノ襲擊ヲ受ケ康年ハ逮捕セラレ同夥多數ハ戰死シ若クハ負傷シ其他ハ四散シタルヨリ被告モ亦タ其場ヲ逃走シ自宅ニ潛匿シタリ

第二.明治四十二年陰二月中暴徒首魁權炳夏ノ部下ニ屬シ仝月十三日夜炳夏ニ從ヒ他ノ部下十五名ト共ニ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火繩銃十二挺ヲ携シ丹陽郡東面金谷里居張書房

方ニ突入シ銃器ヲ示シ仝人ヲ威嚇シ軍需金ナリト稱シテ金五円ヲ劫奪シタリ
第三.仝日前仝様ノ人員ト共ニ同一ノ銃器ヲ携シ同一ノ目的ヲ以テ永春郡佳野面毛里居金書房方ニ突入シ仝一ノ手段ヲ用ヒ金三円ヲ劫奪シタリ
以上ノ事實ハ司法警察官代理及檢事ノ被告人訊問調書當法廷ニ於ケル被告ノ供述等ヲ綜合シテ其證憑充分ナリ
右所爲ヲ法律ニ照スニ第一ノ所爲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スル處從犯ナルヲ以テ仝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刑ニ一等ヲ減シ第二第三ノ所爲ハ共ニ仝第五百九十三條第一號既得財律ニ該當スル處前記各罪ハ其犯情何レモ原諒スヘキモノアルヲ以テ仝第百二十五條ニ依リ內亂罪ハ更ニ一等ヲ減シ通シテ二等ヲ減シ二次ノ强盜罪ハ何レモ本刑ニ三等ヲ減シ處分スヘク三罪俱發ニ付仝第百二十九條ヲ適用シ一ノ重キ內亂罪ニ從ヒ流十五年ニ處スルヲ相當ト認メ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 四月 四日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裁判長 統監府判事 田中亨 [印]
統監府判事 竹尾義磨 [印]
統監府判事 境誠之進 [印]

明治四十三年 四月 四日
統監府裁判所書記 小森敏行 [印]

판결원본

충청북도 제천군 동면東面 흑석리黑石里 거주
농업, 피고 이효경李孝敬 29세

위 피고에 대한 강도 살인 및 폭동 사건에 대한 검사 소야독차랑小野篤次郎이 관여하여 심리를 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효경을 유형流刑 15년에 처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피고는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이 한국 현시의 상태에 분개하고 내란을 일으킬 취지에 찬동하여 명치40년1907 음력 7월 12~13일경 동 인의 부하로 들어가 포군에 편입되어 화승총 1정을 수여받은 이래로 동 인을 따라 永春郡의 각소를 배회하던 중 동월 14~15일경 동 군 방두리方頭里에서 이강년李康秊의 명에 의해 동 무리 170여 명과 함께 일본순사를 포위하고 교전 한 결과 순사 2명을 총살하고 그 시체를 이강년李康秊의 명에 의해 그 목을 베어 양 귀에 새끼를 꿰어 읍내 입구 길가의 나무 위에 걸었고, 이강년李康秊 이하 만세를 부른 후에 이것을 불태워버렸다. 같은 날 밤에 주재소에 침입하여 일본 순사의 피복·총검 등 이것을 약탈하고 그들의 소지품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래로 동 무리 300명 이상에 달하여 永春·영월·단양·제천의 각 군에서 음식물, 기타 물품, 금전 등을 징발하여 해당 지방을 소요시켰고, 동월 17일경 제천군 북면北面 오미동五味洞에 이를 즈음 일본수비대의 습격을 받아 교전 한 결과 동 무리의 다수가 전사하거나 혹 도주함에 따라 피고는 이강년李康秊 및 기타 100여 명과 함께 청풍군 북면 錦肅山*에 잠복하던 중에 명치41년1908 음력 7월 중 다시 일본수비대의 습격을 받아 이강년李康秊은 체포되고 동 무리의 다수가 전사하고 약간간은 부상을 입고 기타는 사방을 흩어지게 되어서 피고도 또한 그 곳을 도주하여 자택에 은신했다.

제2, 명치42년1909 음력 2월 중 폭도 수괴 권병하權炳夏의 부하로 들어가 동월 13일 밤 권병하를 따라 다른 부하 15명과 함께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화승총 12정을 가지고 단양군 동면 금곡리金谷里에 거주하는 장 서방張書房 방方에 돌입하여 총기를 보이며 동 인을 협박하여 '군수금'이라고 칭하고 금 5원을 겁탈하였다.

제3, 같은 날 앞의 같은 인원과 함께 동일한 총기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으로 永春郡 가야면佳野面 모리毛里에 거주하는 김서방金書房 방에 돌입하여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여 금 3원을 겁탈 했다.

---

* 錦繡山의 오기

이상의 사실은 사법경찰관 대리 및 검사의 피고인 신문조서, 당 법정에서 피고의 공술 등을 종합하면 그 증빙이 충분하다.

위 소위를 법률에 비춰보면, 제1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는 바, 종범이므로 동 제135조에 의해 수범의 형벌에서 1등을 감하고, 제2·제3의 소위는 함께 동 제593조 제1호 기득재율旣得財律에 해당하는 바, 앞에 기술한 각 죄는 그 범죄 정황 모두 원량原諒하기로 했기에 동 제125조에 의해 내란죄는 다시 1등을 감하고 잇달아 2등을 감하며, 두 차례의 강도죄는 모두 본형에서 3등을 감해 처분한다. 세 가지 죄가 함께 발생하였기에 동 제129조를 적용하여 1의 중한 내란죄에 따라 유형 15년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43년1910 4월 4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재판장 통감부판사 전중형田中亨 [印]
통감부판사 죽미의마竹尾義磨 [印]
통감부판사 경성지진境誠之進 [印]

명치43년1910 4월 4일
통감부재판소서기 소삼민행(小森敏行) [印]

■ **이효경 판결문**(1910년 4월 4일,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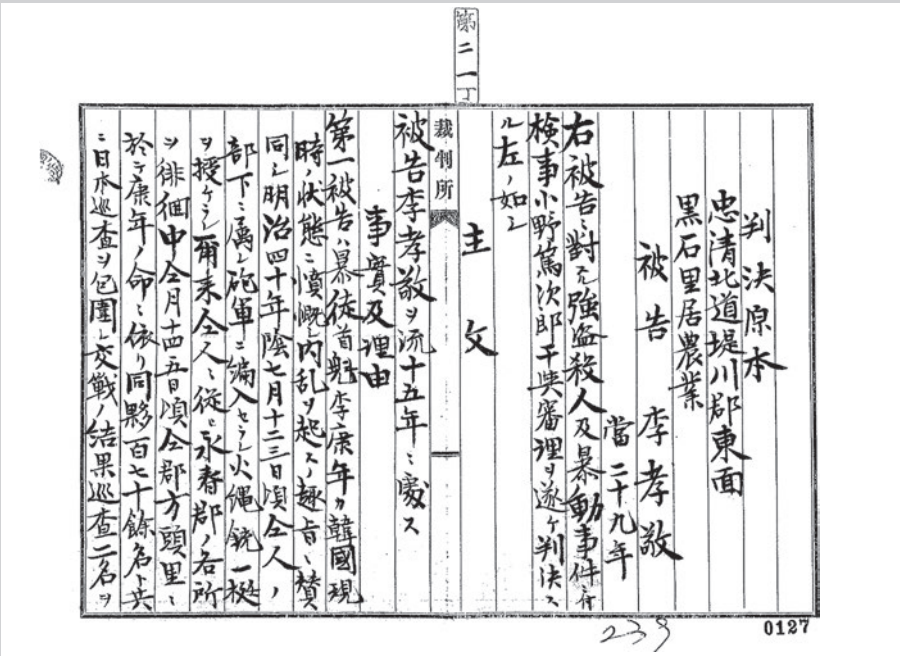

第二一丁

裁判所

判決原本
忠清北道堤川郡東面
黑石里居農業
被告 李孝敬
當二十九年

右被告ニ對スル強盜殺人及暴動事件ニ付
檢事小野篤次郎干與審理ヲ遂ケ判決ス
ル左ノ如シ

主文

被告李孝敬ヲ流十五年ニ處ス

事實及理由

第一被告ハ暴徒首魁李康年カ韓國現
時ノ狀態ニ憤慨シ内乱ヲ起スノ趣旨ニ賛
同シ明治四十年陰七月十二三日頃仝人ノ
部下ニ属シ砲軍ニ編入セラレ火繩銃一挺
ヲ授ケラレ爾来仝人ニ從ヒ永春郡ノ各所
ヲ徘徊中仝月十四五日頃仝郡方頭里ニ
於テ康年ノ命ニ依リ同夥百七十餘名ト共
ニ日本巡査ヲ包圍シ交戰ノ結果巡査二名ヲ

239

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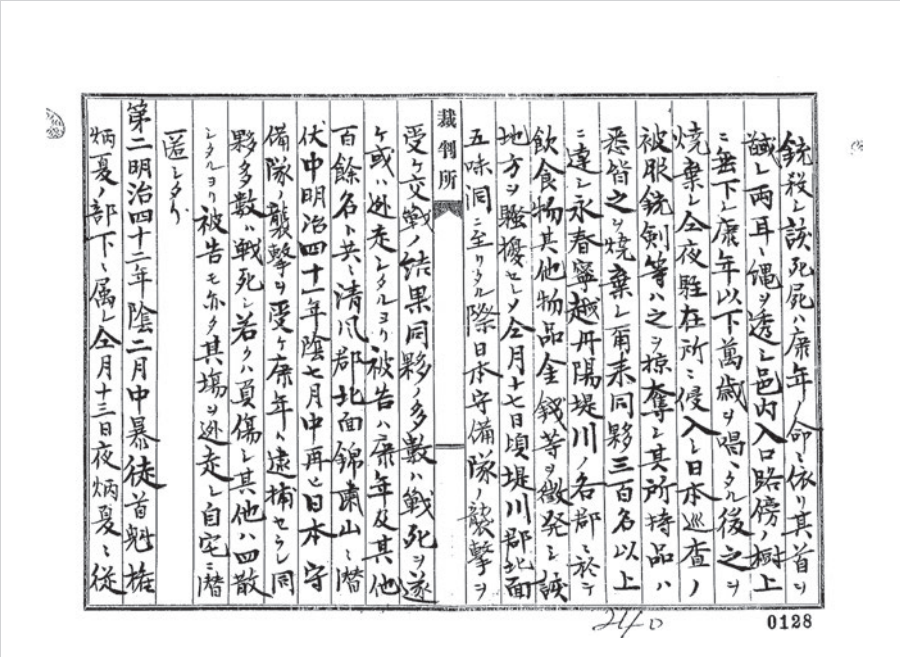

裁判所

銃殺シ該死屍ハ康年ノ命ニ依リ其首ヲ
馘シ両耳ニ繩ヲ透シ邑内入口路傍ノ樹上
ニ垂下シ康年以下萬歳ヲ唱ヘタル後之ヲ
焼棄シ仝夜駐在所ニ侵入シ日本巡査ノ
被服銃剣等ハ之ヲ掠奪シ其所持品ハ
悉皆之ヲ焼棄シ爾来同夥三百名以上
ニ達シ永春寧越丹陽堤川ノ各郡ニ於テ
飲食物其他物品金銭等ヲ徴発シ該
地方ヲ騒擾セシメ仝月十七日頃堤川郡北面
五味洞ニ至リタル際日本守備隊ノ襲撃ヲ
受ケ交戰ノ結果同夥ノ多數ハ戰死ヲ遂
ケ或ハ逃走シタルヨリ被告ハ康年及其他
百餘名ト共ニ清風郡北面錦粛山ニ潜
伏中明治四十一年陰七月中再ヒ日本守
備隊ノ襲撃ヲ受ケ康年ハ逮捕セラレ同
夥多數ハ戰死シ若クハ負傷シ其他ハ四散
シタルヨリ被告モ亦タ其場ヲ逃走シ自宅ニ潜
匿シタリ

第二明治四十二年陰二月中暴徒首魁椿
炳夏ノ部下ニ属シ仝月十三日夜炳夏ニ從

240

0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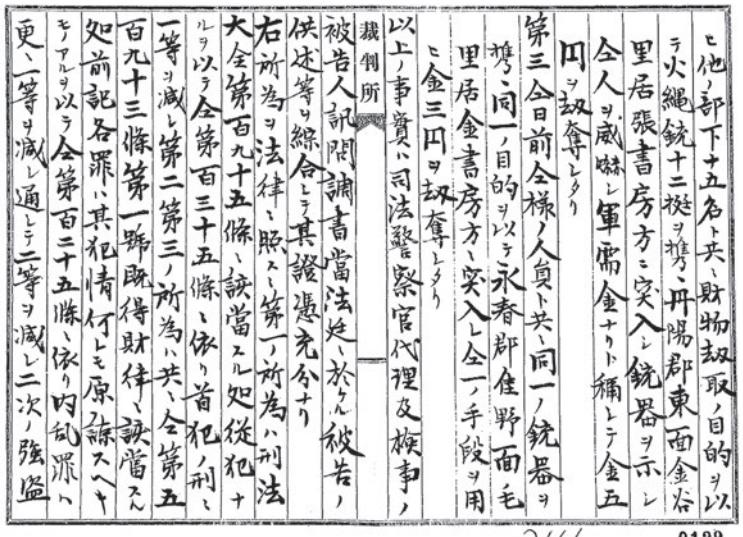

ヒ他ノ部下十五名ト共ニ財物劫取ノ目的ヲ以
テ火縄銃十二挺ヲ携ヘ丹陽郡東面金谷
里居張書房方ニ突入シ銃器ヲ示シ
仝人ヲ威嚇シ軍需金ナリト稱シテ金五
円ヲ劫奪シタリ
第三仝日前仝様ノ人員ト共ニ同一ノ銃器ヲ
携ヘ同一ノ目的ヲ以テ永春郡佳野面毛
里居金書房方ニ突入シ仝一ノ手段ヲ用
ヒ金三円ヲ劫奪シタリ
以上ノ事實ハ司法警察官代理及検事ノ
裁判所
被告人訊問調書當法廷ニ於ケル被告ノ
供述等ヲ綜合シテ其證憑充分ナリ
右所為ヲ法律ニ照スニ第一ノ所為ハ刑法
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スル処從犯ナ
ルヲ以テ仝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刑ニ
一等ヲ減シ第二第三ノ所為ハ共ニ仝第五
百九十三條第一號既得財律ニ該當スル
処前記各罪ハ其犯情何レモ原諒スヘキ
モノアルヲ以テ仝第百二十五條ニ依リ内乱罪ハ
更ニ一等ヲ減シ通シテ二等ヲ減シ二次ノ強盗

241

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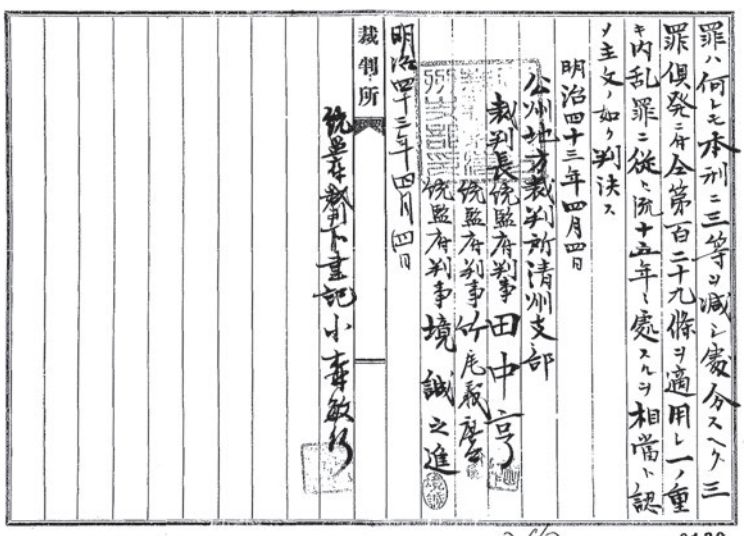

罪ハ何レモ本刑ニ三等ヲ減シ處分スヘク三
罪俱発ニ付仝第百二十九條ヲ適用シ一ノ重
キ内乱罪ニ從ヒ流十五年ニ處スルヲ相當ト認
メ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四月四日
公州地方裁判所清州支部
裁判長統監府判事 田中亨
統監府判事 竹尾義彦
統監府判事 境誠之進
明治四十三年四月四日
裁判所
統監府裁判下書記 小森敏行

242

0130

22. 남도경

判決原本

忠淸北道 堤川郡 近右面 周浦里 居 農業
被告 南道京, 當二十七年
忠淸北道 堤川郡 近左面 長潭里 居 農業
被告 金炳雲, 當三十九年

右被告南道京ニ對スル暴動及强盜事件被告金炳雲ニ對スル强盜事件ニ付檢事小野篤次郎干與審理ヲ遂ケ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南道京ヲ懲役十年ニ處ス
被告金炳雲ハ無罪

事實及理由

第一被告道京ハ明治四十年陰十二月廿一日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尹大用ナル者ノ勸メニ依リ康年ノ部下ニ屬シ他五十餘名ト共ニ淸風郡大靜里ニ於テ飮食物及其他ノ物品ヲ徵發シ該地方ヲ騷擾セレメタリ
第二被告道京ハ尹大用ト共謀シ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各自棍棒ヲ携,明治四十二年陰十二月七日午後八時頃堤川郡南面大壯里居李書房方ニ至リ道京ハ屋外ニ見張ヲナシ大用ハ屋內ニ突入シ主人ヲ毆打シ金錢ノ出給ヲ强要シタル末金六円ヲ劫奪シタリ
第三仝四十三年陰一月一日午後六時頃大用ト共ニ同一ノ目的ヲ以テ各自棍棒ヲ携,堤川郡近右面翁堂里居尹書房方ニ至リ道京ハ屋外ニ見張ヲナシ大用ハ屋內ニ突入シ主人ヲ縛シ金錢ノ出給ヲ强要シタル末金壹円十錢ヲ劫奪シタリ
第四仝月廿二日午後十時頃大用ト共ニ同一ノ目的ヲ以テ各自棍棒ヲ携,堤川郡近左面老

木里居元書房方ニ至リ前項同一ノ方法並手段ヲ以テ主人ヲ威嚇シ金錢ノ出給ヲ強要シタル末金壹円及白木三尺ヲ劫奪シタリ
第五仝月廿三日午前二時頃大用ト共ニ同一ノ目的ヲ以テ各自棍棒ヲ携,堤川郡近右面八松里居李進士方ニ至リ前項同一ノ方法並ニ手段ヲ以テ主人ヲ威嚇シ金錢ノ出給ヲ強要シタル末金壹円五十錢ト白木十尺ヲ劫奪シタリ
以上ノ事實ハ司法警察官代理及檢事ノ被告南道京ニ對スル各訊問調書檢事ノ證人訊問調書當法廷ニ於ケル被告南道京ノ供述等ヲ綜合シテ其證憑充分ナリ
右所爲ヲ法律ニ照スニ第一ノ所爲ハ刑法大仝第六百七十七條ニ該當スル処從犯ナルヲ以テ仝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刑ニ一等ヲ減シ處分スヘク第二乃至第五ノ所爲ハ共ニ仝第五百九十三條第一號既得財律ニ該當スル処何レモ所犯情狀原諒スヘキモノアルヲ以テ仝第百二十五條ニ依リ各本刑ニ三等ヲ減シ處分スヘク五罪俱發ニ付仝第百二十九條ヲ適用シ重キ第一强盜罪ニ從ヒ懲役十年ニ處スルヲ相當ト認ム
被告金炳雲ニ對スル强盜ノ事實ハ南道京ト共謀ノ上前記第二乃至第五ノ所爲ヲナレタリト云フニ在ルモ其主要ナル證憑タリシヲナレタリト云フニ在ルモ其主要ナル證憑タリシ南道京ノ堤川警察署ニ於ケル供述ハ當法廷ニ於テ飜異シ被告金炳雲ノ犯罪ハ自分カ堤川警察署留置場ニ拘禁中當時同留置場ニ同禁セラレ居リタル朴基秉ナルモノカ金炳雲ノ爲メ其犯罪ヲ密告セラレ罪囚トナリタリト信シ其怨恨ヲ報エル爲メ同人ヲ共謀者ナリト申立吳レヨトノ依賴ヲ受ケ其依賴ニ應レ仝人ヲ陷害セシ爲メ誣告ヲナレタルモノナリト云ヒ證人朴基秉ノ當法廷ニ於ケル供述ハ金炳雲ノ陷害ヲ依賴シタリトノ点ニ於テ南道京ノ供述ト齟齬スル点アルモ其主要ナル点ニ於テハ全ク仝人ノ供述ニ一致スルヲ以テ被告金炳雲ノ犯罪嫌疑ハ全ク南道京ノ誣告ニ原因スルモノニシテ事實同人ハ本件犯罪ニハ何等ノ關係ヲ有セサリレ事ヲ確知スルニ足ルノシナラス其他ニ同人ヲ有罪ト認ムヘキ證憑ナキニ依リ無罪ノ言渡ヲナスヲ相當ト認ム
以上ノ理由ニ依リ各被告ニ對シテ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 五月 二日
公州地方裁判所 淸州支部
裁判長 統監府判事 田中亨 [印]

統監府判事 洪祐夔 [印]
統監府判事 境誠之進 [印]

明治四十三年 五月 二日 宣告
統監府裁判所書記 小森敏行 [印]

판결원본

충청북도 제천군 근우면近右面 주포리周浦里 거주
농업, 피고 남도경南道京 27세
충청북도 제천군 근좌면近左面 장담리長潭里 거주
농업, 피고 김병운金炳雲 39세

위 피고 남도경에 대한 폭동 및 강도 사건, 피고 김병운에 대한 강도 사건에 관해 검사 소야독차랑小野篤次郎이 관여 심리 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남도경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 김병운은 무죄.

사실 및 이유

제1. 피고 남도경은 명치40년1907 음력 12월 21일에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 윤대용尹大用이라는 자의 권유에 의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로 들어가 여타 50여 명과 함께 청풍군 대정리大靜里에서 음식물 및 기타의 물품을 징발하여 해당 지방을 소요시켰다.

제2. 피고 남도경은 윤대용과 함께 모의하여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각자 곤봉을 휴대하고, 명치42년1909 음력 12월 7일 오후 8시경 제천군 남면南面 대장리大壯里에 거주하는 이 서방李書房 방方에 이르러 남도경은 옥외에서 망을 보고 윤대용은 옥내로 돌입하여 주인을 구타하고 금전의 출급을 강요하던 끝에 금 6원을 겁탈하였다.

제3. 동43년1910 음력 1월 1일 오후 6시경 윤대용과 함께 (앞서 언급한) 동일한 목적으로 각자 곤봉을 휴대하고, 제천군 근우면近右面 옹당리翁堂里에 거주하는 윤서방尹書房 방方에 이르러 남도경은 옥외에서 망을 보고 윤대용은 옥내로 돌입하여 주인을 결박하고 금전의 출급을 강요하던 끝에 금 1월 10전을 겁탈하였다.

제4. 동월 22일 오후 10시경 윤대용과 함께 동일한 목적으로 각자 곤봉을 휴대하고, 제천군 근좌면近左面 노목리老木里에 거주하는 원 서방元書房 방方에 이르러 전항과 동일한 방법과 수단으로 주인을 위협하여 금전의 출급을 강요하던 끝에 금1원 및 백목白木 3척尺을 겁탈하였다.

제5, 동월 23일 오전 2시경 윤대용과 함께 동일한 목적으로 각자 곤봉을 휴대하고, 제천군 근우면 팔송리八松里에 거주하는 이 진사李進士 방方에 이르러 전항과 동일한 방법과 수단으로 주인을 위협하여 금전의 출급을 강요하던 끝에 금1원 50전과 백목 10척을 겁탈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사법경찰관 대리 및 검사의 피고인 신문조서, 당 법정에서의 피고 남도경의 공술 등을 종합하면 그 증빙은 충분하다.

위 소위를 법률에 비추어보면, 제1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에 해당하는 바, 종범從犯이므로 동 제135조에 의해 수범의 형에서 1등을 감하여 처분하고, 제2~제5의 소위는 모두 동 제593조 제1호 기득재율旣得財律에 해당하는 바, 모든 소범의 정상에 참작해야 할 점이 있으므로 동 제125조에 의해 각 본형에서 3등을 감하여 처분한다. 다섯 가지 죄가 함께 일어 난 것이므로 동 제129조를 적용한 중대한 제1의 강도 죄를 따라 징역 10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피고 김병운에 대한 강도의 사실은 남도경과 공모한 앞의 기록 제2~제5의 소위를 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증빙이 되는 남도경의 제천경찰서에서의 공술은 당 법정에서 번복하여 다르고, 피고 김병운의 범죄는 스스로가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 당시 동 유치장에 함께 구금되어 있던 박기병朴基秉이라는 자가 김병운이 행한 그 범죄를 밀고하여 죄수가 되어버렸다고 믿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동 인을 공모자가 되었다고 제기하라며 의뢰를 받아 그 의뢰에 응하고, 동 인을 함해陷害하기 위해 무고를 하게 되어버렸다고 한 증인 박기병의 당 법정에서의 공술은 김병운의 함해를 의뢰했다고 한 점에 있어 남도경의 공술과 다르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전부 동 인의 공술과 일

치함으로 피고 김병운의 범죄 혐의는 전부 남도경의 무고에 원인한 사실이기에, 동 인은 본 사건 범죄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이라 확지하기에 충분하고, 기타에 동 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에 의거하여 무죄 언도가 상당하다고 인정함.

이상의 이유에 의해 각 피고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43년1910 5월 2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재판장 통감부판사 전중형田中亨 [印]
통감부판사 홍우기洪祐夔 [印]
통감부판사 경성지진境誠之進 [印]

명치43년1910 5월 2일 선고
통감부재판소서기 소삼민행小森敏行 [印]

■ **남도경 판결문**(1910년 5월 2일,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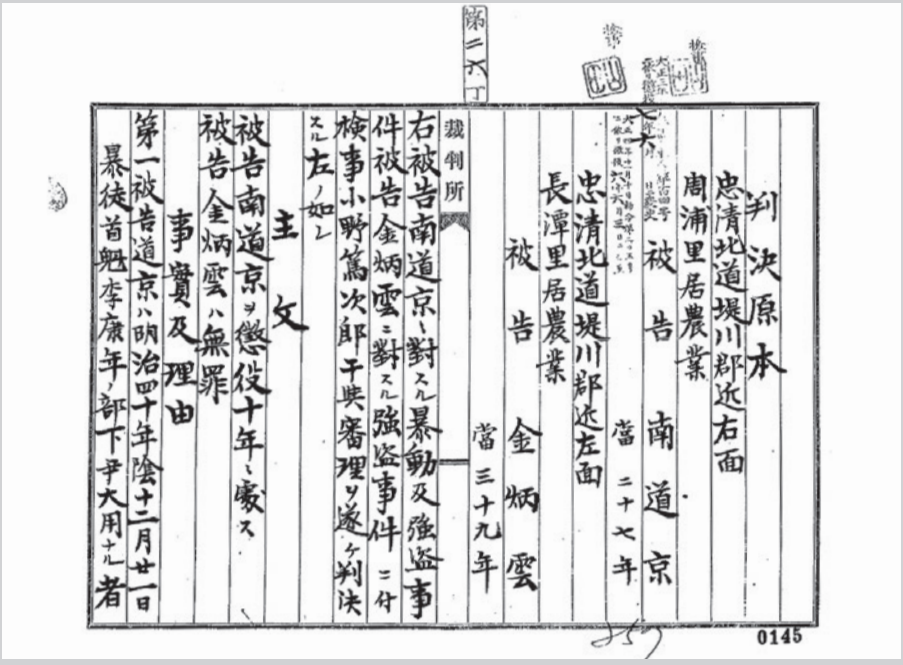

判決原本

忠清北道堤川郡近右面
周浦里居農業
被告 南道京 當二十七年

忠清北道堤川郡近左面
長潭里居農業
被告 金炳雲 當三十九年

右被告南道京ト對スル暴動及強盜事件被告金炳雲ニ對スル強盜事件ニ付檢事小野篤次郎干與審理ヲ遂ケ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南道京ヲ懲役十年ニ處ス
被告金炳雲ハ無罪

事實及理由

第一被告道京ハ明治四十年陰十二月廿一日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屬シ他五十餘名ト共ニ清風郡大靜里ニ於テ飮食物及其他ノ物品ヲ徵發シ該地方ヲ騷擾セシメタリ

第二被告道京ハ尹大用ト共謀シ財物奪取ノ目的ヲ以テ各自棍棒ヲ携ヘ明治四十二年陰十二月七日午後八時頃堤川郡南面大壯里居李書房方ニ至リ道京ハ屋外ニ見張ヲナシ大用ハ屋内ニ突入シ主人ヲ毆打シ金錢ノ出給ヲ強要シタル未タ奪ヒ取ラス

第三仝四十三年陰一月一日午後六時頃大用ト共ニ同一ノ目的ヲ以テ各自棍棒ヲ携ヘ堤川郡近右面翁堂里居尹書房方ニ至リ道京ハ屋外ニ見張ヲナシ大用ハ屋内ニ突入シ主人ヲ毆打シ金錢ノ出給ヲ強要シタル未タ奪ヒ取ラス

第四仝月廿二日午後十時頃大用ト共ニ同一ノ目的ヲ以テ各自棍棒ヲ携ヘ堤川郡近右面老木里居元書房方ニ至リ前項同一

ノ方法並手段ヲ以テ主人ヲ威嚇シ金銭ノ
出給ヲ強要シタル末金壱円及白木三尺
ヲ刼奪シタリ
第五仝月廿三日午前二時頃大用ト共ニ同一ノ
目的ヲ以テ各自棍棒ヲ携ヽ堤川郡近右
面八松里居李進士方ニ至リ前項同一ノ
方法並ニ手段ヲ以テ主人ヲ威嚇シ金銭ノ
出給ヲ強要シタル末金壱円五十銭ト白
木十尺ヲ刼奪シタリ
以上ノ事實ハ司法警察官代理及検事ノ

裁判所

被告南道京ヽ對スル各訊問調書検事ノ
證人訊問調書當法廷ヽ於ケル被告南道京
ノ供述等ヲ綜合シテ其證憑充分ナリ
右所為ヲ法律ヽ照スニ第一ノ所為ハ刑法大
全第六百七十七條ニ該當スル処從犯ナルヲ
以テ仝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刑ニ一等
ヲ減シ處分スヘク第二乃至第五ノ所為ハ共
ニ仝第五百九十三條第一號既得財律ヽ
該當スル処何レモ所犯情状原諒スヘキモノアルヲ
以テ仝第百二十五條ニ依リ各本刑ニ三等ヲ

0147

減シ處分スヘク五罪俱発ヽ付仝第百二十
九條ヲ適用シ重キ第一強盗罪ニ從ヒ懲
役十年ニ處スルヲ相當ト認ム
被告金炳雲ヽ對スル強盗ノ事實ハ南道
京ト共謀ノ上前記第二乃至第五ノ所為
ヲナシタリト云フニ在ルモ其主要ナル證憑タリシ
南道京ノ堤川警察署ニ於ケル供述ハ當
法廷ニ於テ翻異シ被告金炳雲ノ犯罪ハ
自分カ堤川警察署留置場ニ拘禁中
當時同留置場ヽ同禁セラレ居リタル朴基秉ナ

裁判所

ルモノカ金炳雲ノ為メ其犯罪ヲ密告セラレ罪
囚トナリタリト信シ其怨恨ヲ報ユル為メ同人ヲ
共謀者ナリト申立呉レヨトノ依頼ヲ受ケ其依
頼ニ應シ仝人ヲ陥害セシ為メ誣告ヲナシタルモノ
ナリト云ヒ証人朴基秉ノ當法廷ヽ於ケル供述ハ
金炳雲ノ陥害ヲ依頼シタリトノ点ヽ於テ南
道京ノ供述ト齟齬スル点アルモ其主要ナル点ヽ
於テハ全ク仝人ノ供述ヽ一致スルヲ以テ被告金
炳雲ノ犯罪嫌疑ハ全ク南道京ノ誣告ヽ原
因スルモノニシテ事實同人ハ本件犯罪ニハ何等

259

0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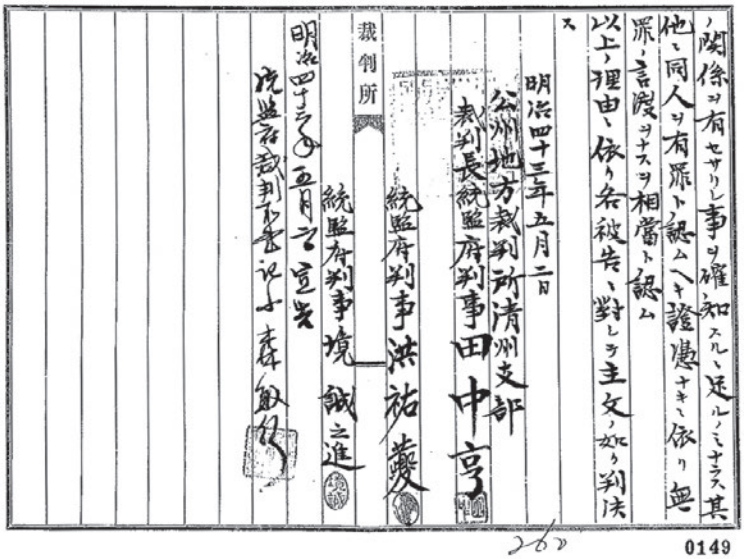

ノ関係ヲ有セサリシ事ヲ確知スルヽ足ルノミナラス其
他ヽ同人ヲ有罪ト認ムヘキ證憑ナキヽ依リ無
罪ノ言渡ヲナスヲ相當ト認ム
以上ノ理由ヽ依リ各被告ヽ對シテ主文ノ如ク判決
ス

明治四十三年五月二日
公州地方裁判所清州支部
裁判長統監府判事田中亨
統監府判事洪祐夔
裁判所
統監府判事境誠之進
明治四十三年五月二日宣告
統監府裁判所書記事森敏行

0149

23. 박득용

判決原本

忠淸北道 堤川郡 縣右面 官前里 居 農業

被告 朴得用,　當二十四年

右被告ニ對スル內亂事件ニ付檢事小野篤次郎干與審理ヲ遂ケ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朴得用ヲ流五年ニ處ス

事實及理由

被告ハ暴徒首魁李康年カ韓國現時ノ狀態ニ憤慨シ政府ヲ顚覆シ政事ヲ變更スルノ木賊ヲ以テ義兵ヲ召集スルノ趣旨ニ贊同シ明治四十年陰八月二日頃同人部下ニ屬シ仝月十三四日頃マテ堤川寧越永春ノ各郡ヲ橫行中康年及其部下ト共ニ軍資金ヲ得ル目的ヲ以テ永春郡大谷面於衣谷里ニ於テ住所姓名不詳ノ良民二名ヲ捕へ之ヲ緊縛毆打シテ金拾五円ヲ劫奪シ被告ハ內金二十五錢ノ分配ヲ受ケ尙ホ前同一ノ目的ヲ達スル爲メ仝四十二年陰九月日不詳再ヒ康年ノ中軍長タリシ鄭海昌ノ部下ニ加ハリ爾來四日間堤川寧越永春ノ各郡ヲ橫行シ永春郡魚上川面太田里ニ於テ仝里長某ヨリ軍需品トシテ麻鞋二十五足ヲ劫奪シ其他前記各所ニ於テ兩度橫行中仝一名義ヲ以テ多數ノ草鞋並飮食物ノ徵發ヲナ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堤川警察署勤務巡査ノ逮捕報告書司法警察官代理ノ被告人訊問調書仝證人聽取書ニ依リ其證憑充分ナリ右所爲ヲ法律ニ照スニ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スル處從犯ナルヲ以テ仝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刑ニ一等ヲ減シ尙ホ所犯情狀原諒スヘキモノアルヲ以テ仝第百二十五條ニ依リ更ニ四等ヲ減シ通シテ五等ヲ減シ流五年ニ處スルヲ相當ト認メ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 七月 二十二日
公州地方裁判所淸州支部
裁判長 統監府判事 田中亨 [印]
統監府判事 境誠之進 [印]
統監府判事 高橋四郎 [印]

明治四十三年 七月 二十二日 宣告
統監府裁判所書記 小森敏行 [印]

판결원본

충청북도 제천군 현우면縣右面 관전리官前里 거주
농업, 박득용朴得用 24세

위의 피고에 대한 내란 사건에 대하여 검사 소야독차랑小野篤次郎의 관여로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박득용을 유流 5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이 한국 현재의 상황에 분개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정사政事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의병義兵을 소집하는 취지에 찬동하고 명치40년1907 음력 8월 2일 경에 그에 부하로 가담하여 동월 13, 14일경까지 제천·영월·永春의 각군을 횡행중 이강년李康秊 및 그 부하와 함께 군자금을 얻을 목적으로 영춘군永春郡 대곡면大谷面 어의곡리於衣谷里에서 주소 성명 미상의 양민良民 2명을 붙잡아 이를 결박하고 구타하여 15원을 겁탈하고 피고는 그 중에서 25전의 분배를 받고, 또 위의 경우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42년 음력 9월 일자 미상에 다시 이강년李康秊의 중군장中軍將이었던 정해창鄭海

昌의 부하로 가담하여 이래 4일간 제천·永春·영월의 각군을 횡행하고 永春郡 어상천면魚上川面 태전리太田里에서 동리 이장 모某로부터 군수품이라 빙자하고 미투리麻鞋 25컬레를 겁탈하고, 기타 앞의 각처에서 두 차례 횡행중 동일한 명분을 내세워 많은 짚신 및 음식물을 징발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제천경찰서 근무 순사의 체포 보고서, 사법경찰관 대리의 피고인 신문조서, 동 증인 청취서에 의하여 그 증거 충분하다.

위의 소위를 법률에 조람하건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5조에 해당하는 바, 종범從犯이므로 동법 제135조에 의하여 수범의 형刑에서 1등을 감하고 또 범정犯情을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동법 제125조에 의하여 다시 4등을 감하고 도통 5등을 감하여 유流 5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43년1910 7월 22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재판장 통감부판사 전중형田中亨 [印]
통감부판사 경성지진境誠之進 [印]
통감부판사 고교사랑高橋四郎 [印]

명치43년1910 7월 22일 선고
통감부재판소서기 소삼민행小森敏行 [印]

判決

忠淸北道 堤川郡 縣右面 官前里 農業
被告 朴得用, 當二十四年

右內亂被告事件ニ付公州地方裁判所淸州支部ニ言渡シタル被告朴得用ヲ流五年ニ處スト ノ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ヲ爲シタルニ因リ檢事草場林五郎干與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 如シ

主文

原判決ハ之ヲ取消ス
被告朴得用ヲ免訴ス

事實及理由

被告ハ韓國政府ヲ顚覆シ政事ヲ變更スル目的ヲ以テ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投シ明治 四十年陰八月二日頃ヨリ同月十四日頃近堤川寧越永春ノ各郡ヲ橫行シ且其軍資金ニ供ス ル爲メ永春郡大谷面於衣谷里ニ於テ良民二名ヲ制縛毆打シ金十五円ヲ劫奪シ尙前同一意 思ヲ繼續シテ同四十二年陰九月中李康年部下ノ將鄭海昌等ト堤川寧越永春ノ各郡ヲ橫行 シ永春郡魚上川面太田里ニ於テ同里長某ヨリ軍需品トシテ麻鞋廿五足ヲ劫奪シタル事實 ハ其證憑十分ニシテ右被告ノ所爲ハ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該當スルモ該犯罪ニ對シテ ハ明治四十三年八月勅令第三百二十五號第一條第二號ニヨリ赦免アリタルヲ以テ公訴權 消滅シタルモノトシ被告ニ對シテハ免訴ノ言渡リ爲ス可ク而シテ原裁判所カ被告ニ對シ 有罪ノ判決ヲ爲シタルハ失當ニシテ被告控訴ハ理由アルヲ以テ民刑訴訟規則第三 十三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 八月 二十九日
京城控訴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楠常藏 [印]
判事 申載永 [印]

判事 水野正之丞 [印]

明治四十三年 八月 廿九日 言渡
書記 笹川慶次郎 [印]

판결

충청북도 제천군 현우면縣右面 관전리官前里
농업, 박득용朴得用 24세

위의 내란 피고 사건에 대하여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언도한 피고 박득용을 유流 5년에 처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소를 하였으므로 검사 초장임오랑草場林五郎의 관여 심리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박득용을 면소免訴한다.

이유

피고는 한국정부를 전복하고 정사政事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로 가담하여 명치40년1907 음력 8월 2일경부터 동월 14일경까지 제천·영월·永春의 각군을 횡행하고, 또 그 군자금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永春郡 대곡면 어의곡리에서 양민良民 2명을 결박하고 구타하여 15원을 겁탈하고, 또 앞의 경우와 동일한 의사를 계속하여 동 42년1909 미상에 다시 이강년李康秊의 중군장中軍將이었던 정해창鄭海昌의 부하로 가담하여 이래 4일간 제천·영월·永春의 각 군을 횡행하고 永春郡 어상천면魚上川面 태전리太田里 동리 이장 모某로부터 군수품이라고 하여 미투리麻鞋 25켤레를 겁탈한 사실은 그 증거 충분하고, 위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5조에 해당하는 바, 그 범죄에 대하여는 명치 43년 8월 칙령勅令 제325호, 제1조, 제2호에 의하여 사면이 있었으므로 공소권

公訴權 소멸한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면소를 언도할 것이며, 원재 판소가 피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음은 실당失當하고 피고 공소控訴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 · 형소송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43년1910 8월 29일
경성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남상장楠常藏 [印]
판사 신재영申載永 [印]
판사 수야정지승水野正之丞 [印]

명치43년1910 8월 29일 언도
서기 세천경차랑笹川慶次郎 [印]

■ **박득용 판결문**(1910년 7월 22일, 공주지방재판소청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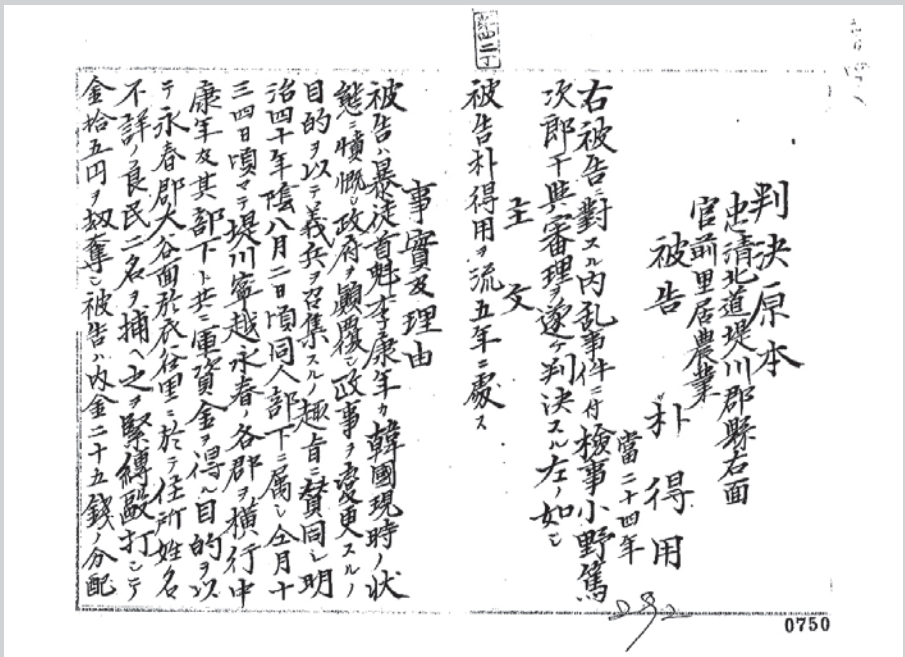

判決原本
忠清北道堤川郡縣右面
官前里居農業
被告 朴得用
當二十四年
右被告ニ對スル内乱事件ニ付檢事小野篤
次郎干與審理ヲ遂ケ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朴得用ヲ流五年ニ處ス
事實及理由
被告ハ暴徒首魁李康年カ韓國現時ノ状
態ニ憤慨シ政府ヲ顛覆シ政事ヲ変更スルノ
目的ヲ以テ義兵ヲ召集スルノ趣旨ニ賛同シ明
治四十年陰八月二日頃同人部下ニ属シ仝月十
三四日頃マテ堤川寧越永春ノ各郡ヲ横行中
康年及其部下ト共ニ軍資金ヲ得ル目的ヲ以
テ永春郡大谷面於底谷里ニ於テ住所姓名
不詳ノ良民二名ヲ捕ヘ之ヲ緊縛毆打シテ
金拾五円ヲ奴奪シ被告ハ内金二十五錢ノ分配

0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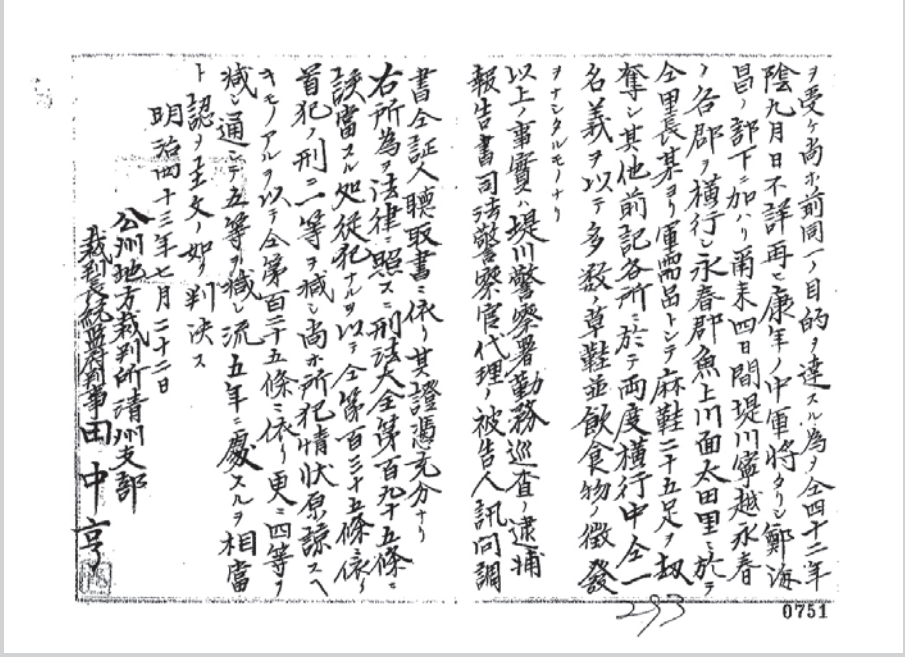

ヲ受ケ尚ホ前同一ノ目的ヲ達スル為メ仝四十二年
陰九月日不詳再ヒ康年ノ中軍将タリシ鄭海
昌ノ部下ニ加ハリ爾来四日間堤川寧越永春
ノ各郡ヲ横行シ永春郡魚上川面太田里ニ於テ
仝里長某ヨリ軍需品トシテ麻鞋二十五足ヲ奴
奪シ其他前記各所ニ於テ両度横行中仝一
名義ヲ以テ多数ノ草鞋並飲食物ノ徴發
ヲナ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堤川警察署勤務巡査ノ逮捕
報告書司法警察官代理ノ被告人訊問調
書仝証人聴取書ニ依リ其證憑充分ナリ
右所為ヲ法律ニ照スニ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ニ
該當スル処従犯ナルヲ以テ仝第百三十五條ニ依リ
首犯ノ刑ニ一等ヲ減シ尚ホ所犯情状原諒スヘ
キモノアルヲ以テ仝第百二十五條ニ依リ更ニ四等ヲ
減シ通シテ五等ヲ減シ流五年ニ處スルヲ相當
ト認メ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七月二十二日
公州地方裁判所清州支部
裁判長統監府判事田中亨

0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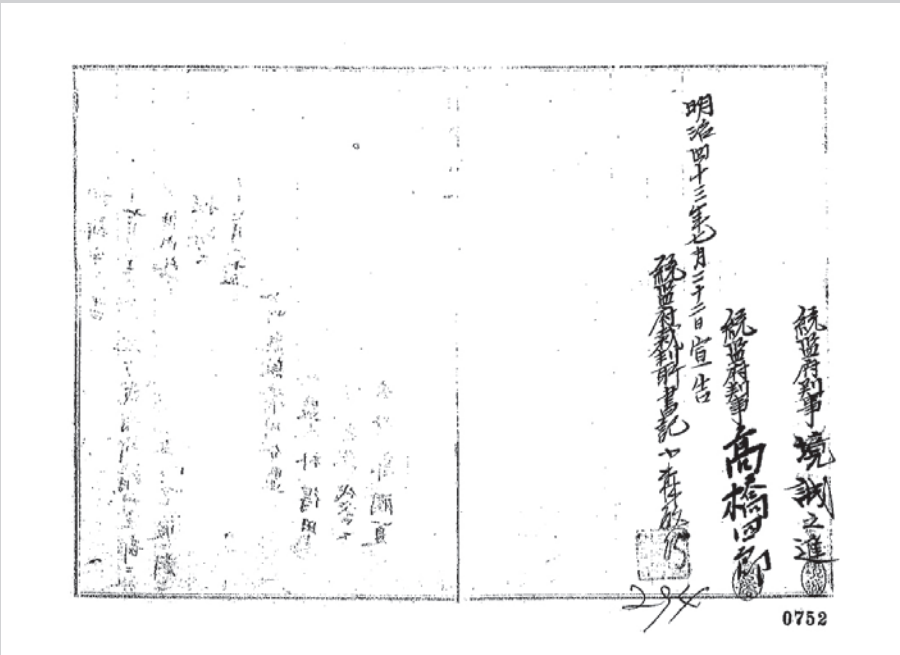

■ 박득용 판결문(1910년 8월 29일, 경성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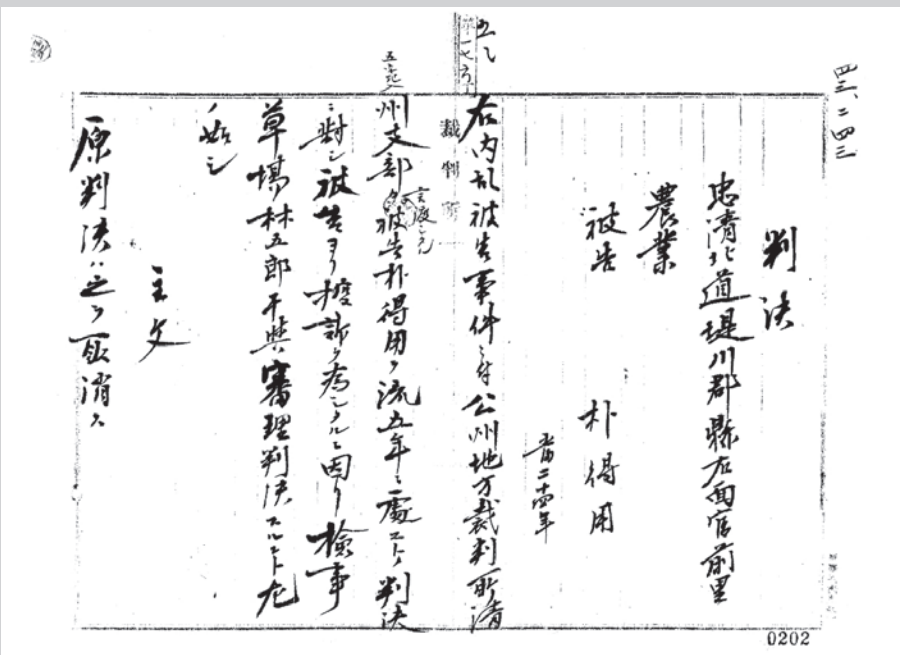

第一七七丁

被告朴得用ヲ免訴ス

事実及理由

被告ハ韓国政府ヲ顛覆シ政事ヲ変
更スル目的ヲ以テ暴徒首魁李康年
ノ部下ニ投シ明治四十年陰八月二日頃ヨリ
同月十四日頃迄堤川寧越永春各郡

裁判所

ヲ横行シ其軍資金ニ供スル為メ永
春郡大谷面於衣谷里ニ於テ良民一名ヲ剌
殺シ金十五円ヲ掠奪シ尚前同一意
思ヲ継続シテ同四十二年陰九月中李康
年部下ノ将鄭海昌等ト堤川寧越
永春ノ各郡ヲ横行シ永春郡魚上川面

0203

第一七八丁

太田里ニ於テ同里長某ヨリ軍需品トシテ
麻鞋六十五足ヲ掠奪シタル事実ハ其証
憑十分ナリトス右被告ノ所為ハ刑法大全第
百九十五条ニ該当スルモ該犯罪ハ明治四
十三年八月勅令第三百二十五号第一条第
二号ニヨリ赦免アリタルヲ以テ公訴権消滅シ

裁判所

タルモノトシ被告ニ対シテハ免訴ノ言渡ヲ為
スヘク而シテ原裁判所カ被告ニ対シ有罪
ノ判決ヲ為シタルハ失当ナリ以テ民刑訴
訟規則第三十三条ニ則リ主文ノ如ク判
決ス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九日

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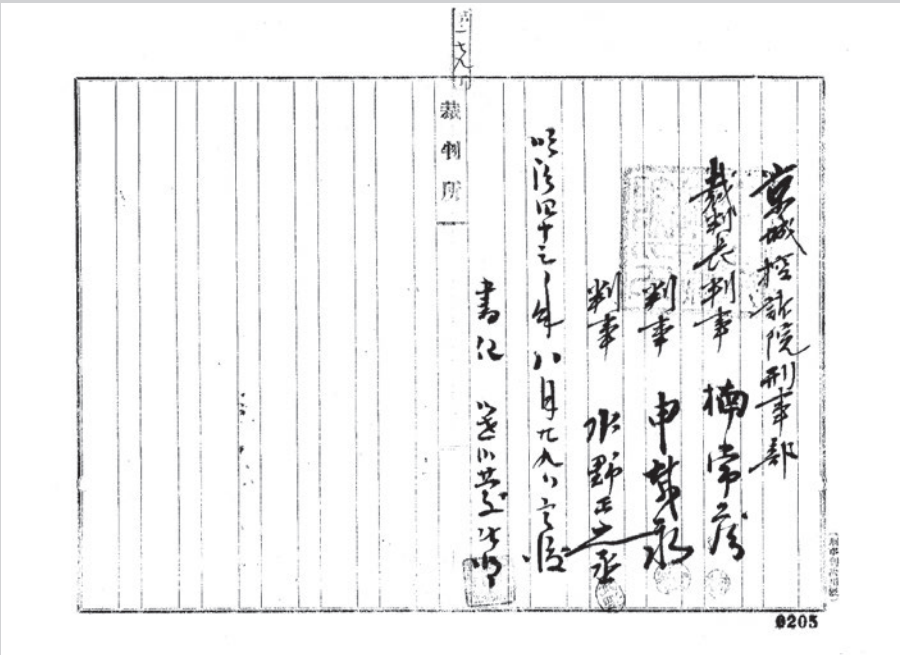

24. 김수동

判決書

忠淸北道 永春郡 東面 水發里 農

金壽童, 二十六年

右强盜及强盜殺人被告事件ニ付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ヲ絞ニ處ス

押收ノ松棍棒一本麻繩一筋ハ之ヲ官ニ沒入ス

事實及ヒ理由

被告ハ

第一.舊韓國隆熙元年陰八月中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投入シ爾來仝年陰十月二十一日マテ意思ヲ繼續シテ其黨與約二百名ト共ニ銃刀ヲ携帶シテ慶尙北道聞慶郡忠淸北道丹陽郡永春郡江原道寧越郡內ノ各閭巷ニ攔入シ洞民ヨリ食物及ヒ草鞋ヲ强奪シ

第二.仝三年陰九月中暴徒首魁崔聖天ノ部下ニ投入シ仝四年六月六日飮酒ノ爲メ仝人等六名ト共ニ慶尙北道榮川郡豆田面盤邱市場ニ赴キ將ニ仝市場ニ達セレトスルヤ仝郡奉香面上望洞鄭甲伊仝道尙州郡某面鄭寅守ノ兩名カ仝市場ヨリ被告ニ面シ行進シ來レルニ出會シタルニ被告ハ鄭寅守ノ斬髮ナルヲ見テ仝人ヲ巡査ナリト推測シ又鄭甲伊ヲ其兄ニシテ共ニ被告ノ行動ヲ偵察スル推測シタル結果俄ニ殺意ヲ生シ崔聖天ノ命ニ依リ仝人等六名ト共ニ鄭寅守鄭甲伊ノ兩名ヲ捕へ麻繩ヲ以テ之ヲ縛シ其附近ナル仝郡好文面花岐洞盤邱川右堤防ニ連行シ仝所ニ於テ松棍棒ヲ以テ右兩名ヲ毆打シタル上生キナカラ土中ニ埋メ以テ殺害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當法廷ニ於ケル被告ノ供述被告ニ對スル檢事並ニ警部代理ノ各訊問調書檢

證調書明治四十三年六月十五日附巡査川上玉次發榮川警察署長警部戶田慶一宛被害者發見報告書ニ徵シ之ヲ認定ス
之ヲ法律ニ照スニ被告ノ第一ノ所爲ハ刑法大全第五百九十三條第三號得財律ニ第二ノ二所爲ハ何レモ仝法第四百七十七條ニ該當スル處三罪俱發ニシテ其刑各等シキヲ以テ仝法第百二十九條ニ依リ其一ノ鄭甲伊ヲ故殺シタル罪ニ科スヘキ刑ニ從ヒ處斷シ押收ノ松棍棒一本麻繩一筋ハ本件犯罪ノ用ニ供シ被告ノ所有物ト認ムルヲ以テ仝法第百十八條ニ依リ處分スヘキモノトス仍テ主文ノ如ク判決ス
檢事杉村逸樓本件ニ干與ス

明治四十三年 十月 七日
大邱地方裁判所 刑事部
裁判長 判事 森島彌四郎 [印]
判事 山內銀次郎 [印]
判事 洪淳琦 [印]

판결서

충청북도 永春郡 동면東面 수발리水發里
농업, 김수동金壽童 26세

위 강도 및 강도 살인 피고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를 교수형에 처한다.
압수한 송곤봉松棍棒 1본, 마승麻繩 1근은 이것을 관에 몰입한다.

사실 및 이유

피고는,

제1, 구한국 융희원년1907 음력 8월 중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로 들어간 이래로 동년 음력 10월 21일까지 의사를 지속하고 그 당에서 약 200명과 함께 총칼을 휴대하고 경상북도 문경군, 충청북도 단양군·永春郡, 강원도 영월군 내의 각 마을에 난입하여 동민들에게 음식물 및 초혜草鞋를 강탈했다.

제2, 동3년1909 음력 9월 중 폭도 수괴 최성천崔聖天의 부하로 들어가 동4년1910 6월 6일 술을 마시려고 동 인 등 6명과 함께 경상북도 영천군榮川郡 두전면豆田面 반구시장盤邱市場으로 향하여 장차 동 시장에 도착하려던 즈음 동 군郡 봉향면奉香面 상망동上望洞의 정갑이鄭甲伊, 동 도道 상주군 모면某面의 정인수鄭寅守 두 명이 동 시장에서 피고 쪽으로 지나가며 서로 맞닥뜨리니, 피고는 정인수가 단발을 한 것으로 보고 동 인을 순사라고 추측하였고, 또 정갑이를 그의 형으로서 함께 피고의 행동을 정찰하는 밀정이라고 추측한 결과 갑자기 살의가 생겨 최성천의 명에 의거하여 동 인 등 6명과 함께 정인수·정갑이 두 명을 붙잡아 마승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그 부근에 있는 동 군 호문면好文面 화기동花岐洞 반구천盤邱川의 우측 제방으로 연행하여 동 장소에서 송곤봉으로 위 두 사람을 구타하던 끝에 산채로 구덩이에 매장하여 살해했다고 한다.

이상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 피고의 공술, 피고에 대한 검사와 경부 대리의 각 신문조서·검증조서, 명치43년1910 6월 15일 부附 순사 천상옥차川上玉次 발發 榮川경찰서장 경부 호전경일완戶田慶一宛의 피해자 발견 보고서에 증빙하여 이것을 인정한다.

이것을 법률에 비춰보면, 피고의 제1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593조 제3호 득재율에, 제2의 두 가지 소위는 모두 동법 제477조에 해당하는 바, 세 가지 죄가 함께 발생하여 그 형이 각기 상등相等함으로 동법 제129조에 의해 그1의 정갑이를 고살한 죄에 부과하는 형벌에 따라 처단하고, 압수한 송곤봉 1본, 마승 1근은 본 사건 범죄용으로 쓰였기에 피고의 소유물로 인정되므로, 동법 제118조에 의해 처분하기로 한다. 이에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삼촌일루杉村逸樓가 본 사건에 관여함.

명치43년1910 10월 7일
대구지방재판소형사부
재판장 판사 삼도미사랑森島彌四郎 [印]

판사 산내은차랑山內銀次郎 [印]

판사 홍순용洪淳瑢 [印]

判決

忠淸北道 永春郡 東面 水發里 農

金壽童, 二十六年

右强盜及强盜殺人被告事件ニ付明治四十三年十月七日大邱地方裁判所ニ於テ宣告シタル有罪ノ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ノ申立ヲ爲シタルニヨリ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岡本至德立會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

理由

第一被告ハ明治四十年九月中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投シ爾來同年十一月二十六日迄犯意ヲ繼續シ其徒黨約二百名ト共ニ銃及刀ヲ携帶シテ慶尙北道聞慶郡忠淸北道丹陽郡永春郡江原道寧越郡內ノ各閭巷ニ攔入シ洞民ヨリ食物及草鞋等ヲ劫取シ

第二被告ハ暴徒首魁崔聖天ノ部下ト爲リ其徒黨五名ト共ニ各地徘徊中明治四十三年六月六日慶尙北道榮川郡豆田面盤邱市場附近ニ於テ同郡奉香面上望洞鄭甲伊同道尙州郡某面鄭寅守ノ兩名同伴シテ同市場ヨリ歸來セルニ出會シタル處被告ハ鄭寅守ノ斬髮ナルヲ見テ同人ハ巡査ヲ又鄭甲伊ハ其兄ニシテ密偵ヲ勤メ共ニ被告等ノ行動ヲ偵察スル者ナリト誤認シタル結果俄カニ殺意ヲ生シ崔聖天以下五名ト共ニ直ニ右兩名ヲ捕へ押收ニ係ル被告所有ノ麻繩ヲ以テ之ヲ縛シ其附近ナル同郡好文面花岐洞地內盤邱川右岸堤防上ニ拉シ行キ同所ニ於テ押收ニ係ル被告所有ノ松棍棒ヲ以テ右兩名ヲ毆打シタル上生キナカラ右堤防下ノ土中ニ埋メ以テ之ヲ殺害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被告ニ對スル警部代理並檢事ノ各訊問調書檢證調書明治四十三年六月十五日附巡査川上玉次ノ被害者發見報告書原審公判始末書ニ徵シ其證憑充分ナリ
之ヲ法律ニ照スニ被告ノ第一ノ所爲ハ刑法大全第五百九十三條第三項既得財律ニ第二ノ殺人ノ所爲ハ共ニ同第四百七十七條ニ該當スル處三罪俱發ニシテ其刑相等シキヲ以テ同第百二十九條ニ依リ第二中鄭甲伊ヲ故殺シタル罪ニ科スヘキ刑ニ從ヒ被告ヲ絞ニ處シ押收ノ棍棒麻繩ハ同第百十八條ニ依リ沒入スヘキモノトス
然則以上ノ判旨ト同一趣旨ニ出テタル原判決ハ相當ニシテ被告ノ控訴ハ其理由ナシ仍テ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 十一月 十五日
大邱控訴院 刑事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橫田定雄
朝鮮總督府判事 齋藤庄三郎
朝鮮總督府判事 金應駿

明治四十三年 十一月 十五日 言渡
於同院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瀧原儀太郎

右謄本也
明治四十三年 十一月 十八日
大邱控訴院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安承馥 [印]

판결

충청북도 永春郡 동면東面 수발리水發里

농업, 김수동金壽童 26세

위 강도 및 강도 살인 피고 사건에 대한 명치43년1910 10월 7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선고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로부터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검사 강본지덕岡本至德의 입회 · 심리로 판결한 것이 다음과 같다.

주문

본 사건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제1, 피고는 명치40년1907 9월 중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로 들어간 이래로 동년 11월 26일까지 범죄를 저지를 뜻을 계속하다가 그 도당 약 200명과 함께 총과 칼을 휴대하고 경상북도 문경군, 충청북도 단양군, 永春郡, 강원도 영월군 내에 각 마을에 난입하여 동민으로부터 음식물 및 초혜 등을 겁취하였다.

제2, 피고는 폭도 수괴 최성천의 부하가 되어 그 도당 5명과 함께 각지를 배회하던중, 명치43년1910 6월 6일 경상북도 영천군榮川郡 두전면 반구시장 부근에서 동 군 봉향면 상망동 정갑이와 동 도 상주군 모면 정인수 두 명이 동반하여 동 시장으로부터 돌아오다가 마주치게 된 바, 피고는 정인수가 단발한 것을 보고 동 인을 순사로, 또 정갑이는 그의 형으로서 밀정을 하며 피고 등의 행동을 정찰하는 자라고 오인한 결과 갑자기 살해할 뜻을 내어 최성천 이하 5명과 함께 곧장 위 두 명을 붙잡아 압수와 관계된 피고 소유의 마승으로 그들을 결박하여 그 부근인 동 군 호문면 화기동 지내 반구천의 우측 언덕 재방으로 납치해 가서 동 장소에서 압수와 관계된 피고 소유의 송곤봉으로 위 두 명을 구타하던 끝에 산채로 위 제방 아래 구정이에 매장함으로 그들을 살해했다고 한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에 대한 경부 대리와 검사의 각 신문조서 · 검증조서, 명치43년1910 6월 15일 부附 순사 천상옥차川上玉次의 피해자 발견 보고서, 원심 공판 시말서에 증빙하여 그 증거가 충분하다.

이것을 법률에 비춰보면, 피고의 제1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593조 제3항 기득재율에, 제2의 살인의 소위는 함께 동 제477조에 해당하는 바, 세 가지 죄가 함께 발생하였기에 그 형벌이 상등하므로 동 제 129조에 의해 제2의 소위 가운데 정갑이를 고살한 죄에 부과할 만한 형벌에 따라 피고를 교수형에 처하고, 압수한 곤봉·마승은 동 제118조에 의해 몰입하기로 한다.

그러한 즉 이상의 판결 내용과 동일한 취지에서 나온 원 판결은 상당하므로 피고의 공소는 그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민·형소송규칙 제33조에 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43년1910 11월 15일
대구공소원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판사 횡전정웅横田定雄
조선총독부판사 재등장삼랑齋藤庄三郎
조선총독부판사 김응준金應駿

명치43년1910 11월 15일 언도
동 법원에서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농원의태랑瀧原儀太郎

위는 등본임
명치43년1910 11월 18일
대구공소원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안승복安承馥 [印]

判決 [明治四十三年 刑上第一四九號]

忠淸北道 永春郡 東面 水發里 農
金壽童, 二十六年

右ノ者ニ(에)對スル(ᄒᆞᆫ)强盜及ヒ强盜殺人被告事件ニ付(으로)大邱控訴院ニ於テ(에셔)言渡シタル(ᄒᆞᆫ)第二審判決ニ(에)對シ(ᄒᆞ야)被告ヨリ(로부터)上告ヲ(ᄅᆞᆯ)申立タルニヨリ(ᄒᆞ얏기)檢事膳鉦次郎ノ(의)意見ヲ(을)聽キ(ᄒᆞ야)判決スル(ᄒᆞᆷ이)左ノ(와)如シ(ᄒᆞᆷ)

主文

本件上告ハ(ᄂᆞᆫ)之ヲ(此ᄅᆞᆯ)棄却ス(ᄒᆞᆷ)

理由

上告趣意ハ(ᄂᆞᆫ)被告ハ(ᄂᆞᆫ)商用ノ爲メ(次로)慶尙北道榮川郡地方ニ(에)行キタルニ(往ᄒᆞ얏더니)不幸ニシテ(이)崔淳昌ニ(에게)捕ヘラレ(捉의얏기로)百方逃走ヲ(ᄒᆞ기를)企テタルモ(圖ᄒᆞ야도)遂クルコト(ᄒᆞ기不)能ハス(ᄒᆞ야)止ムヲ得ス(不得已)其部下トナリタルモノニシテ(가되엿다가)强盜ヲ(ᄅᆞᆯ)爲シタルハ(行ᄒᆞ얏슴은)事實ナルモ(이나)殺人ノ(의)行爲ハ(ᄂᆞᆫ)更ニ(히)(生)覺エナシ然ルニ(이無ᄒᆞ거ᄂᆞᆯ)原審ニ於テ(에셔)絞ノ(의)判決ヲ爲シタルハ(을行ᄒᆞ얏슴은)不當ニ(히)法條ヲ(ᄅᆞᆯ)適用シタルモノト(ᄒᆞᆫ者라)思料スト(ᄒᆞᆫ다)云フニ(ᄒᆞᆷ에)在レトモ(ᄒᆞ나)右ハ(ᄂᆞᆫ)原裁判所ノ職權ニ(에)屬スル(ᄒᆞᆫ)事實認定ノ(의)當否ヲ(ᄅᆞᆯ)批難スルニ(ᄒᆞᆷ에)(不)過キスシテ(ᄒᆞ고)法律ニ(에)違背シタル(ᄒᆞᆫ)點ヲ(을)理由トナシタルニアラサルヲ以テ(로ᄒᆞᆷ이아님으로써)適法ノ(ᄒᆞᆫ)上告理由トナラス(가되지못ᄒᆞᆷ)依テ(ᄒᆞ야)民刑訴訟規則第四十二條第三十三條ニ(에)從ヒ(ᄒᆞ야)主文ノ과如ク(히)判決ス(ᄒᆞᆷ)

明治四十三年 十二月 三日
高等法院 刑事部
裁判長 判事 岩野新平
判事 淺見倫太郎
判事 牧山榮樹

判事 鈴木伍三郎
判事 石川正

裁判長의命으로써懸註홈
通譯官 高島五八

右謄本也
明治四十三年 十二月 七日
高等法院에셔
裁判所書記 朴容觀 [印]

판결 [명치43년1910 형상(刑上)제149호]

충청북도 永春郡 동면東面 수발리水發里
농업, 김수동金壽童 26세

위 사람에 대한 강도 및 강도 살인 피고 사건으로 대구공소원에서 언도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상고를 제기하였기에 검사 선정차랑膳鉦次郎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본 사건의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한 취지는 피고는 상용商用 할 차로 경상북도 영천군榮川郡 지방에 갔다가 불행이 최순창에게 잡혀서 백방 도주하기를 기도하여도 이루지 못하여 부득이 그의 부하가 되었다가 강도를 하게 되었음은 사실이나 살인의 행위는 다시 생각이 없었는데, 원심에서 교수형의 판결을 행하였음은 부당히 법조를 적용한 자라고 사료된다함에 있으나, 위는 원

재판소의 직권에 속한 사실 인정의 당부當否를 비난批難함에 불과하고, 법률에 위배한 점을 이유로 함이 아님으로써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함에 의하여 민·형소송규칙 제42조 제3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43년1910 12월 3일
고등법원형사부
재판장 판사 암야신평岩野新平
판사 천견윤태랑淺見倫太郎
판사 목산영수牧山榮樹
판사 영목오삼랑鈴木伍三郎
판사 석천정石川正

재판장의 명으로써 현주懸註함
통역관 고도오팔高島五八

위는 등본임
명치43년1910 12월 7일
고등법원에서
재판소서기 박용관朴容觀 [印]

■ **김수동 판결문**(1910년 10월 7일, 대구지방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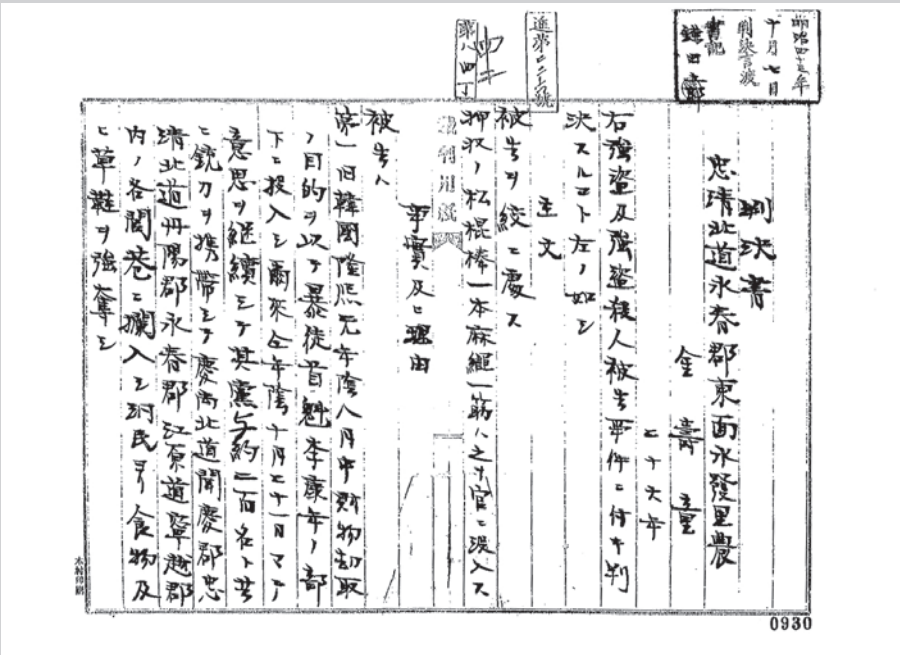

明治四十三年十月七日判決言渡書記 鍾田壽

判決書

忠清北道永春郡東面永發里農

金壽童

二十六年

右強盜及強盜殺人被告事件ニ付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ヲ絞ニ處ス

押収ノ松棍棒一本麻繩一筋ハ之ヲ官ニ没入ス

事實及ヒ理由

被告ハ

第一旧韓國隆熙元年陰八月中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投入シ爾來仝年陰十月二十一日マテノ意思ヲ継續シテ其黨与約二百名ト共ニ銃刀ヲ携帶シテ慶尚北道聞慶郡忠清北道丹陽郡永春郡江原道鞏越郡内ノ各閭巷ニ闌入シ洞民ヲ食物及ヒ草鞋ヲ強奪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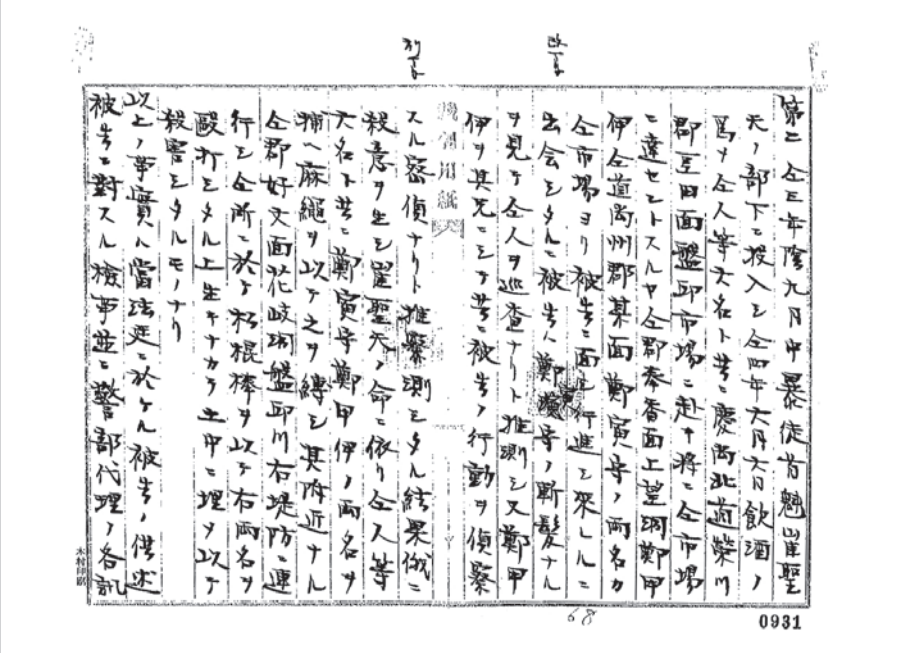

0930

第二仝三年陰九月中暴徒首魁崔聖天ノ部下ニ投入シ仝四年六月六日飲酒ノ爲メ仝人等六名ト共ニ慶尚北道榮川郡豆田面盤邱市場ニ赴キ將ニ仝市場ニ達セントスルヤ仝郡奉香面上望洞鄭甲伊仝道尚州郡某面鄭寅守ノ兩名カ仝市場ヨリ被告ニ面上行進シ來レルニ出会シタルニ被告ハ鄭寅守ノ斬髪ナルヲ見テ仝人ヲ巡査ナリト推測シ又鄭甲伊ヲ其兄ニシテ共ニ被告ノ行動ヲ偵察スル密偵ナリト推察測シタル結果俄ニ殺意ヲ生シ崔聖天ノ命ニ依リ仝人等六名ト共ニ鄭寅守鄭甲伊ノ兩名ヲ捕ヘ麻繩ヲ以テ之ヲ縛シ其附近ナル仝郡好文面花岐洞盤邱川右堤防ニ連行シ仝所ニ於テ松棍棒ヲ以テ右兩名ヲ毆打シタル上生キナカラ土中ニ埋メ以テ殺害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當法廷ニ於ケル被告ノ供述被告ニ對スル檢事並ニ警部代理ノ各訊

0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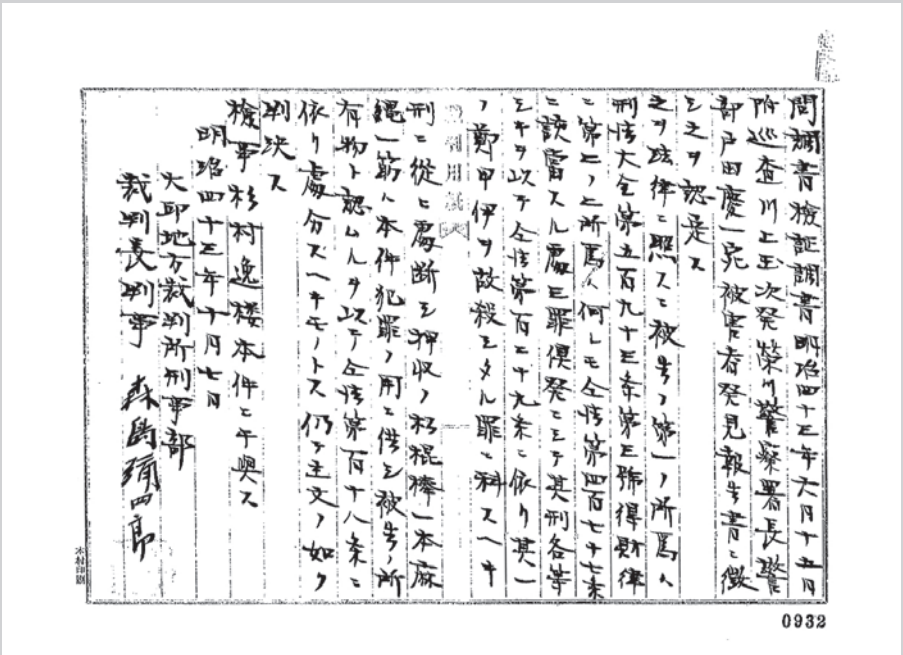

0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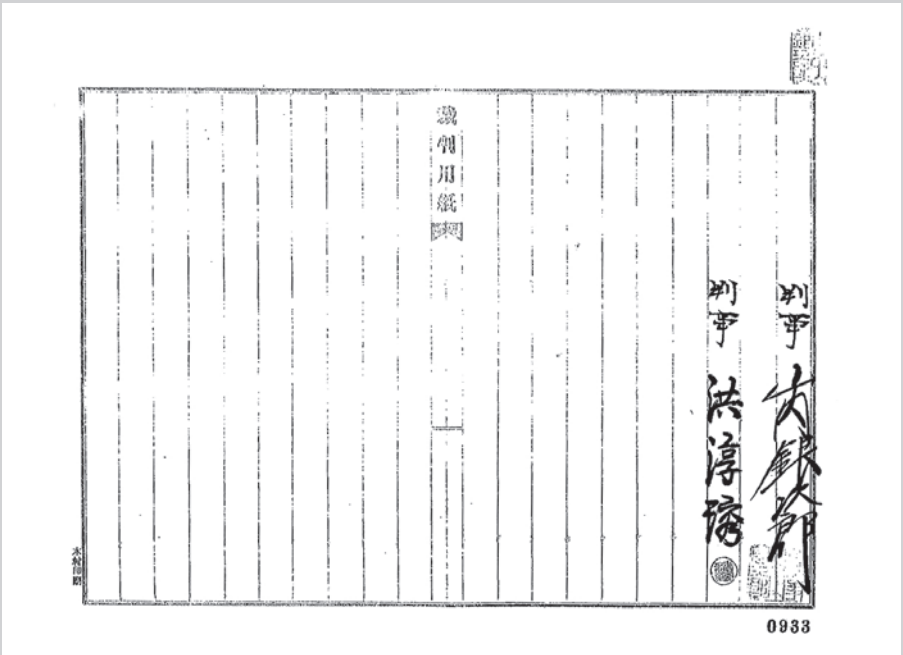

0933

■ **김수동 판결문**(1910년 11월 15일, 대구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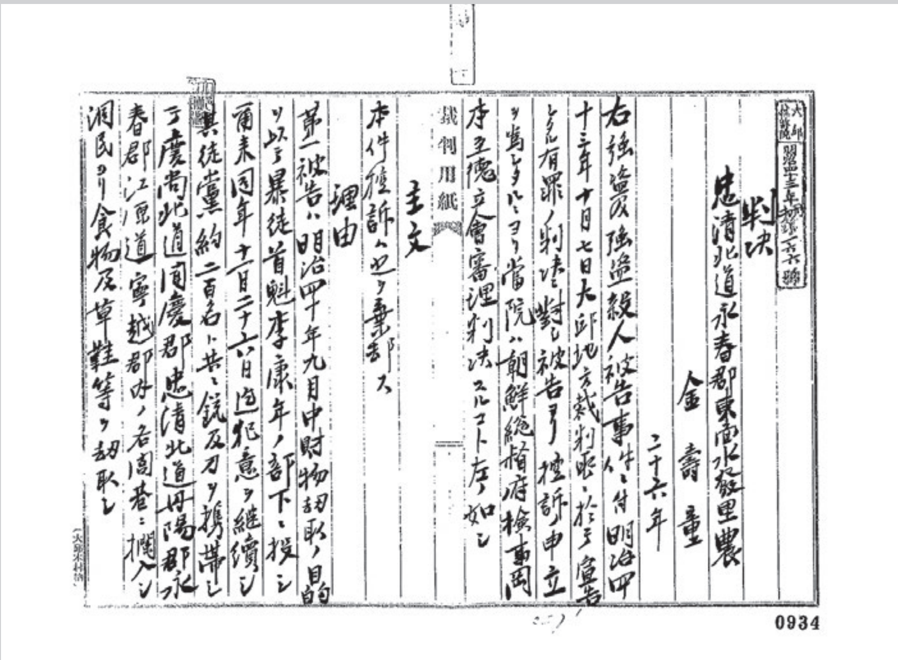

大邱控訴院 明治四十三年刑控第三二六號

判決

忠清北道永春郡東面水發里農

金壽童 二十六年

右強盜及強盜殺人被告事件ニ付明治四十三年十月七日大邱地方裁判所ニ於テ宣告シタル有罪ノ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申立ヲ為シタルニヨリ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岡本至德立會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

理由

第一 被告ハ明治四十年九月中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投シ爾来同年十一月二十六日迄犯意ヲ継續シ其徒黨約二百名ト共ニ銃及刀ヲ携帯シテ慶尚北道聞慶郡忠清北道丹陽郡永春郡江原道寧越郡内ノ各面巷ニ横行シ洞民ヨリ食物及草鞋等ヲ劫取シ

0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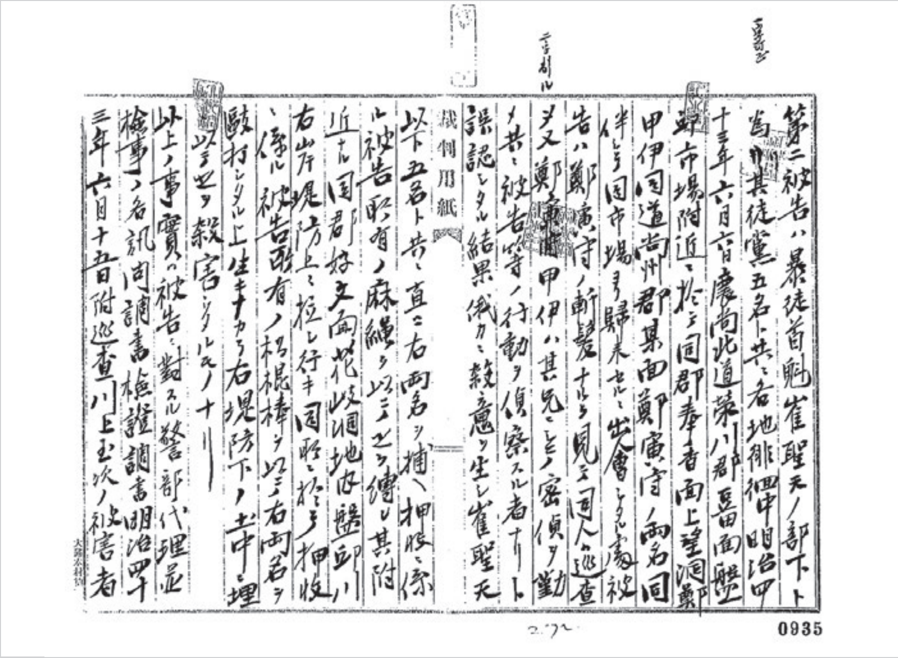

第二 被告ハ暴徒首魁崔聖天ノ部下トナリ其徒黨五名ト共ニ右地徘徊中明治四十三年六月十日慶尚北道榮川郡醴泉面邑市場附近ニ於テ同郡奉香面上望洞甲伊同道尚州郡某面鄭寅守ノ兩名同伴シテ同市場ヨリ歸來セルニ出會シタル處被告ハ鄭寅守ノ斬髪ナルヲ見テ同人ハ巡査ノ密偵ヲ勤メ又鄭寅守甲伊ハ其兄ニシテ共ニ被告等ノ行動ヲ偵察スル者ナリト誤認シタル結果俄カニ殺意ヲ生シ崔聖天以下五名ト共ニ直ニ右兩名ヲ捕ヘ押收ニ係ル被告所有ノ麻縄ヲ以テ之ヲ縛シ其附近ナル同郡好文面花岐洞地内盤邱川右岸堤防上ニ拉シ行キ同所ニ於テ押收ニ係ル被告所有ノ松棍棒ヲ以テ右兩名ヲ毆打シタル上生キナカラ右堤防下ノ土中ニ埋メ以テ之ヲ殺害シ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被告ニ對スル警部代理巡査檢事ノ各訊問調書檢證調書明治四十三年六月十五日附巡査川上玉次ノ被害者

0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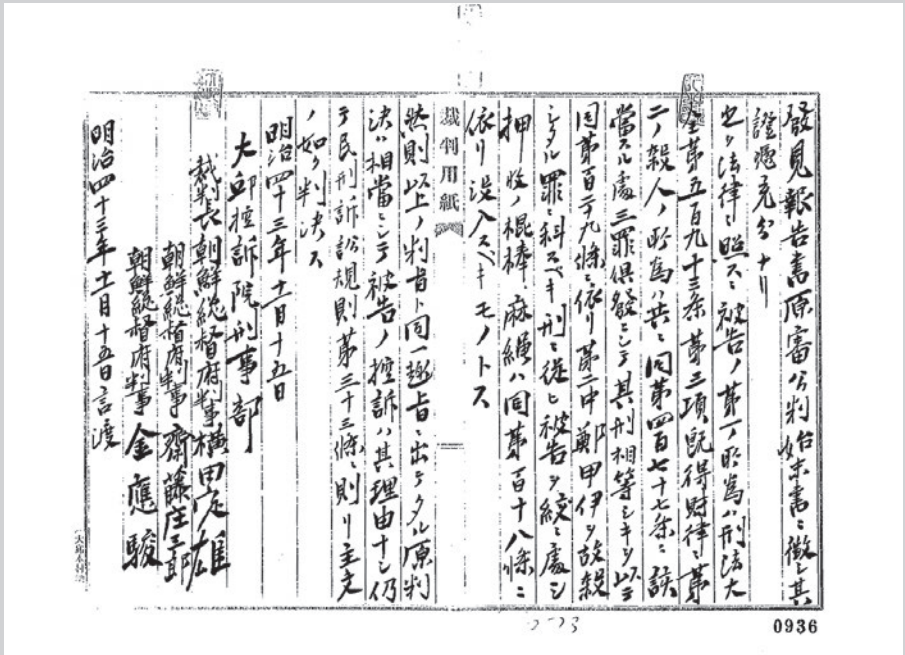

發見報告書原審公判始末書ニ徵シ其
證憑充分ナリ
也ヲ法律ニ照スニ被告ノ第一ノ所爲ハ刑法大
全第五百九十三条第三項既得財律ニ第
二ノ殺人ノ所爲ハ共ニ同第四百七十七条ニ該
當スル處三罪俱發ニシテ其刑相等シキヲ以テ
同第百二十九條ニ依リ第二中鄭甲伊ヲ故殺
シタル罪ニ科スベキ刑ニ從ヒ被告ヲ絞ニ處シ
押收ノ棍棒麻縄ハ同第百十八條ニ
依リ没入スベキモノトス

裁判用紙

然則以上ノ判旨ト同一趣旨ニ出テタル原判
決ハ相當ニシテ被告ノ控訴ハ其理由ナシ仍
テ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ニ則リ主文
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十一月十五日
大邱控訴院刑事部
裁判長朝鮮総督府判事 横田定雄
朝鮮総督府判事 齋藤庄三郎
朝鮮総督府判事 金應駿
明治四十三年十一月十五日言渡

0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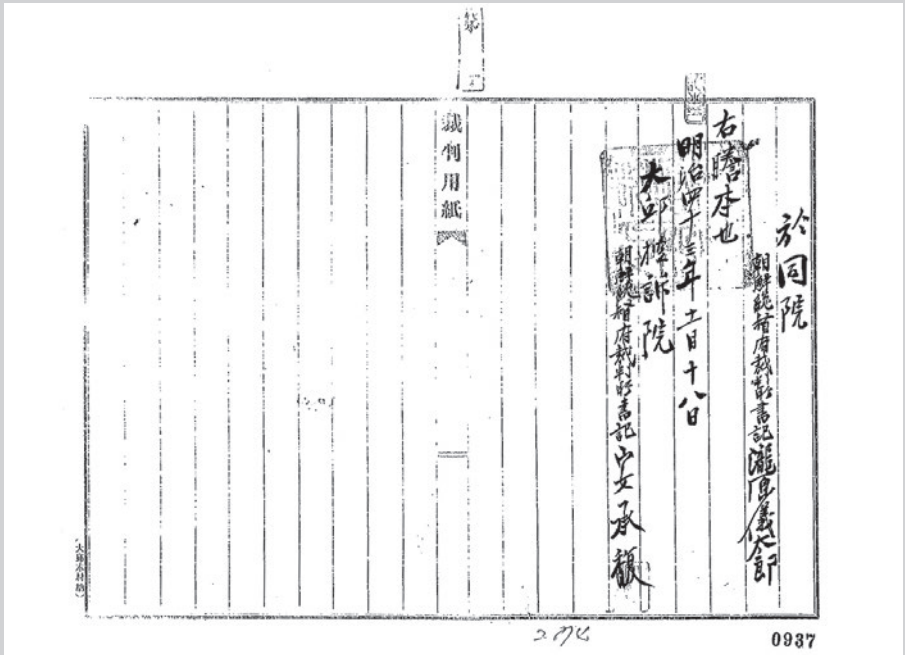

於同院
朝鮮総督府裁判所書記 瀧原儀太郎
右謄本也
明治四十三年十一月十八日
大邱控訴院
朝鮮総督府裁判所書記 中文承馥

裁判用紙

0937

■ **김수동 판결문**(1910년 12월 3일, 고등법원형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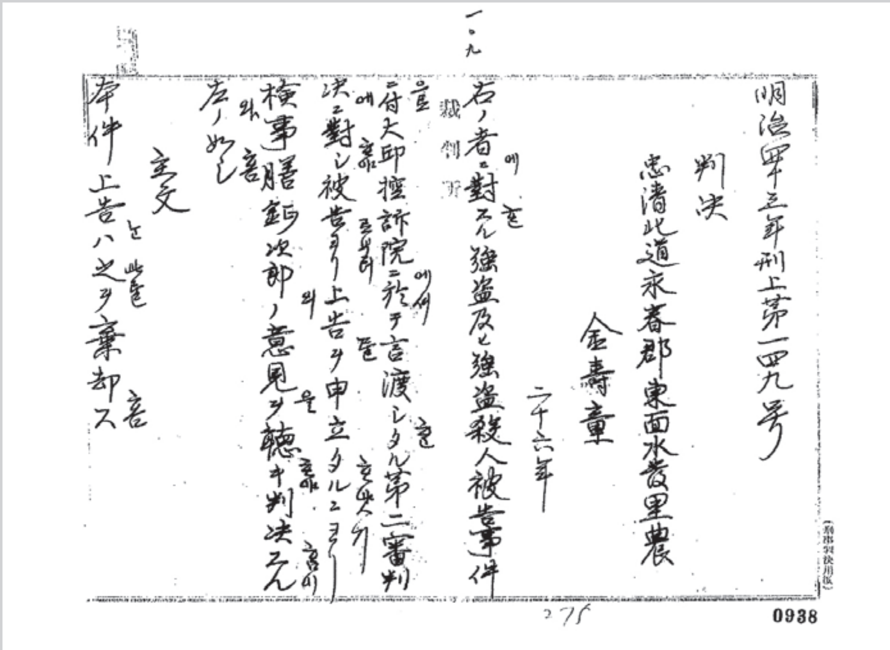

一一九

明治四十三年刑上第一四九号

判決

忠清北道永春郡東面水喪里農

金壽童

二十六年

右ノ者ニ對スル強盗及ヒ強盗殺人被告事件ニ付大邱控訴院ニ於テ言渡シタル第二審判決ニ對シ被告ヨリ上告ヲ申立タルニヨリ検事膳鉦次郎ノ意見ヲ聴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0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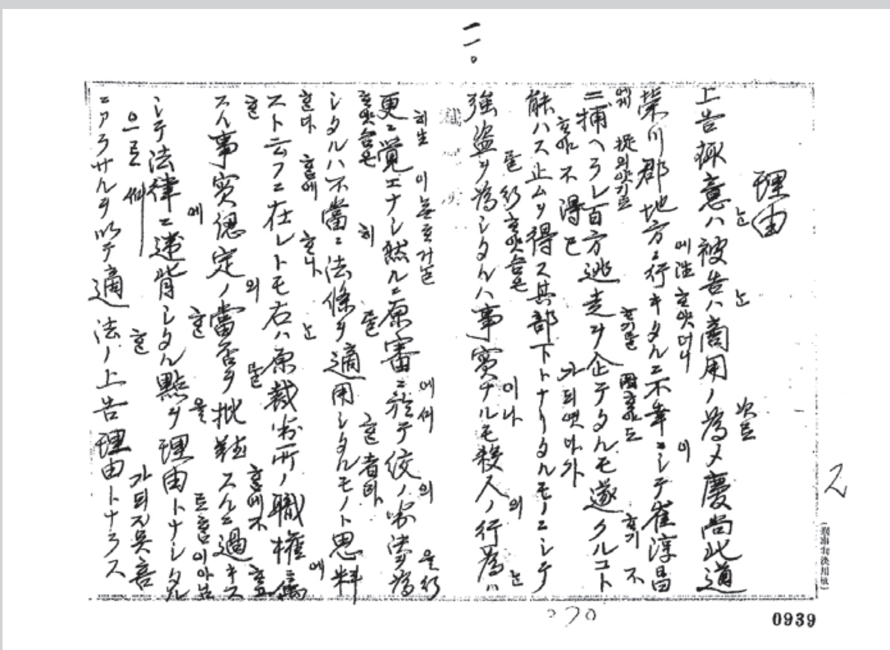

一二〇

理由

上告趣意ハ被告ハ商用ノ為メ慶尚北道榮川郡地方ニ行キタルニ不幸ニシテ崔淳昌ニ捕ヘラレ百方逃走ヲ企テタルモ遂クルコト能ハス止ムヲ得ス其部下トナリタルモノニシテ強盗ヲ為シタルハ事実ナルモ殺人ノ行為ハ更ニ覚エナシ然ルニ原審ニ於テ絞ノ宣告ヲ為シタルハ不當ニ法條ヲ適用シタルモノト思料ストイフニ在レトモ右ハ原裁判所ノ職権ニ属スル事実認定ノ當否ヲ批難スルニ過キスシテ法律ニ違背シタル點ヲ理由トナシタルニアラサルヲ以テ適法ノ上告理由トナラス

0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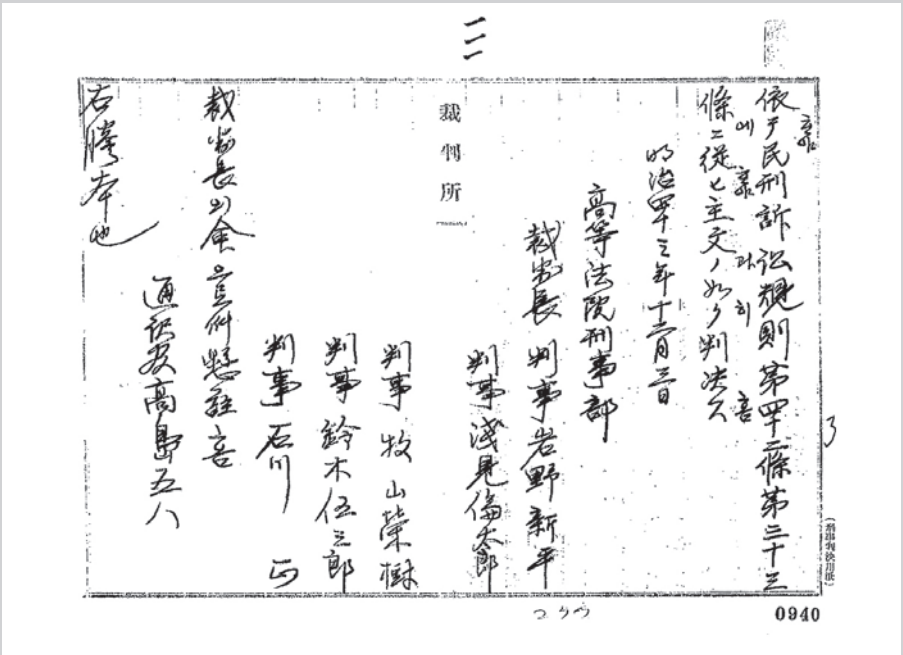

依テ民刑訴訟規則第四十二條第三十三條ニ從ヒ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三年十二月三日

高等法院刑事部

裁判長 判事岩野新平

判事淺見倫太郎

判事牧山榮樹

判事鈴木伍三郎

判事石川

裁判長判金 宣仲懸註 音

通訳及高島五八

右謄本也

裁判所

0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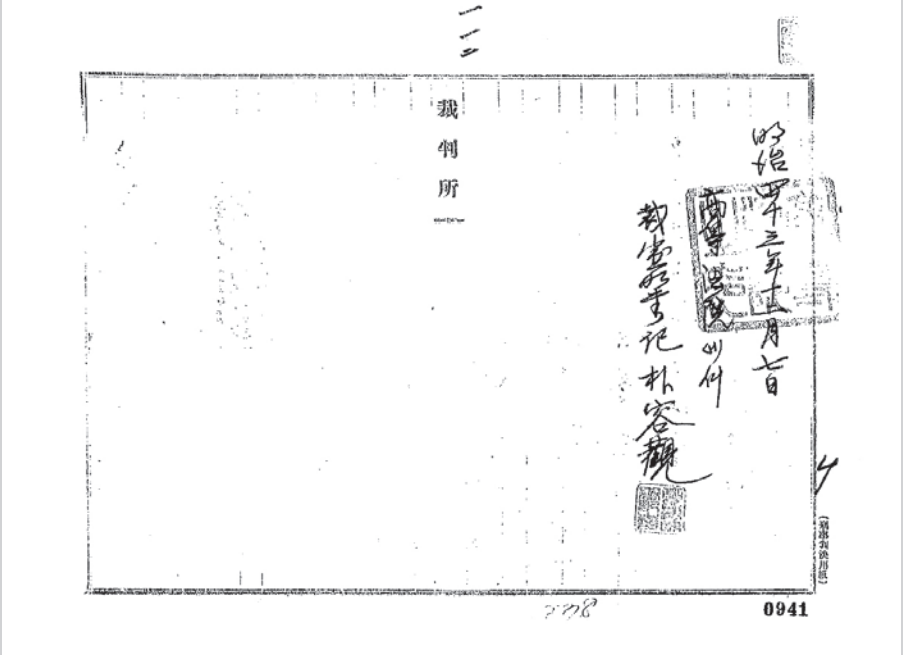

明治四十三年十二月七日

高等法院 判

裁判所

0941

25. 김상태

判決書

忠淸北道 永春郡 郡內面 南川洞 農

金尙台, 五十年

右强盜竊主强盜殺人敎唆被告事件ニ付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ヲ絞ニ處ス

被告カ崔聖天ヲ指揮シ仝人ヲシテ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徒黨二十餘名ト共ニ銃刀ヲ携帶シテ慶尙北道醴泉郡位羅面浯川市場ニ攔入シ山內銀三郎ヲ刺殺サシメ仝人ノ洋服一着外數点ヲ强奪セシメタリトノ點ハ無罪

事實及理由

被告ハ

第一明治四十年陰六月頃暴徒首魁李康年ノ部下ニ投シ其中軍將ト爲リ意思ヲ繼續シテ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約四百名ノ徒黨ト共ニ銃劍ヲ携帶シ忠淸北道江原道慶尙北道ノ各閭里ニ攔入シ就中仝年陰九月頃其部下約二百名ト共ニ忠淸北道永春郡東面儀豊里ニ攔入シ仝里長ヲ脅迫シ約二百名分ノ飮食物草鞋百足並ニ葉煙草若干ヲ强奪シ江原道寧越郡某面龍谷里及其附近ノ各閭里ニ攔入シ其里長等ヲ脅迫シ價格金百圓ニ相當スル衣類及木綿五匹並ニ約二百名十日間分ノ飮食物ヲ强奪シ

第二李康年カ明治四十一年陰六月逮捕セラレタルカ爲メ一旦部下ヲ解散シタル後江原道寧越郡七岑山ニ潛伏中仝四十二年陰二三月頃再ヒ暴徒ヲ召集シ部下約八十名ト共ニ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銃劍ヲ携帶シ慶尙北道順興郡韶川市場ニ攔入シ里民ヨリ飮食物ヲ强奪シ

第三明治四十二年陰四五月頃前揭七岑山中ニ於テ强盜ヲ爲サレコトヲ主謀シ被告ノ部下ニシテ右翼將タル崔聖天ニ對シ山中ニ於テハ糧食缺乏スルヲ以テ外部ヲ行動シ强盜ヲ爲スヘキ旨ヲ指揮シ崔聖天カ其指揮ニ從ヒ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部下約七十名ヲ率ヒ銃劍ヲ携帶シ意思ヲ繼續シテ慶尙北道順興郡水息面德山里榮川郡北面梧麓洞奉化郡物野面黃海里等ニ攔入シ里民ヨリ飮食物ヲ强奪シタルモ被告ハ其贓ノ分配ヲ受ケス

第四明治四十三年陰五月頃江原道寧越郡太白山中ニ於テ强盜ヲ爲サレコトヲ主謀シ部下崔聖天姜炳秀等ニ强盜ヲ爲スヘキ旨指揮シ崔聖天姜炳秀等カ其指揮ニ從ヒ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韓命萬以下徒黨十數名ト共ニ銃劍ヲ携帶シテ慶尙北道安東郡西後面二松川洞ニ攔入シ洞民金雲石ヨリ葉錢十兩金大憲ヨリ葉錢百二十七兩李德元ヨリ葉錢三百八十五文及百五十兩ヲ强奪シ之ヲ紙幣ニ交換シ姜炳秀カ金四十圓ヲ携帶シ大白山中ナル被告ノ潛伏所ニ至リ之ヲ被告ニ交付シタルヨリ被告ハ之ヲ受取リ其分配ヲ受ケ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被告ノ當公廷ニ於ケル供述被告ニ對スル檢事ノ訊問調書金雲石金大憲李德元丁俊吉李近洪ニ對スル各警部代理ノ訊問調書參照ノ崔聖天ニ對スル强盜强盜殺人强盜傷人及謀殺事件記錄中崔聖天ニ對スル警部代理ノ訊問調書隆熙三年六月末榮川警察署ヨリ慶尙北道觀察使ヘノ報告書寫韓命萬ニ對スル强盜殺人並故殺事件記錄中韓命萬ニ對スル警部ノ訊問調書ニ徵シ之ヲ認定ス

之ヲ法律ニ照スニ被告ノ第一,二ノ所爲ハ各刑法大全第五百九十三條第三號得財律ニ第三ノ所爲ハ仝法第六百十五條第一號後段ニ第四ノ所爲ハ仝條第一號前段ニ該當スル處二罪以上ノ俱發ニ係ルヲ以テ仝法第百二十九條ニ依リ第一ノ罪ニ科スヘキ刑ニ從テ處斷スヘキモノトス被告カ崔聖天ヲ指揮シテ仝人ヲシテ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徒黨二十餘名ト共ニ銃刀ヲ携帶シテ慶尙北道醴泉郡位羅面浯川市場ニ攔入シ山內銀三郎ヲ刺殺サシメ仝人ノ洋服一着外數点ヲ强奪セシメタリトノ公訴事實ハ之ヲ認ムルノ證憑十分ナラサルヲ以テ此点ニ付テハ被告ニ對シ無罪ヲ言渡スヘキモノトス

仍ヲ主文ノ如ク判決ス

朝鮮總督府檢事 杉村逸樓 本件ニ干與ス

明治四十四年 八月 四日

大邱地方裁判所 刑事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森島彌四郎 [印]
朝鮮總督府判事 山內銀次郎 [印]
朝鮮總督府判事 西山久二郎 [印]

明治四十四年 八月 四日 判決 言渡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鎌田五郎 [印]

판결서

충청북도 永春郡 군내면郡內面 남천동南川洞
농업, 김상태金尙台 50세

위 강도·강도와주窩主·강도살인교사 피고 사건에 관하여 판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를 교수형[絞]에 처한다.

피고가 최성천崔聖天을 지휘하고, 동 사람에게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도당 20여 명과 함께 총칼을 휴대하여 경상북도 예천군 위라면位羅面 오천시장浯川市場*에 난입하여 산내 은삼랑山內銀三郎을 척살하였고, 동 사람의 양복 한 벌 외 수 점을 강탈했다는 점은 무죄임.

사실과 이유

피고는,

첫째, 명치40년1907 음력 6월경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로 들어가 그 중군장이 되어 의사意思를 지속하다가,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약 400명의 도당과 함께 총검을 휴대하고 충청북도·강원도·경상북도의 각 마을에 난입하였고, 특히 동년 음력 9월경 그의 부하 약 200명과 함께 충청북도 永春郡 동면東面 의풍리儀豊里에 난입하여 동同 리里의 이장을 협박하

*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오천장터

여 약 200명분의 음식물, 초혜草鞋 100족과 함께 엽연초葉煙草 약간을 강탈하고, 강원도 영월군 모면某面 용곡리龍谷里 및 그 부근의 각 마을에 난입하여 그 곳 이장 등을 협박하여 가격 금 100원에 상당하는 의류 및 목면 5필을 아울러 약 200명의 10일치 음식물을 강탈함.

둘째, 이강년李康秊이 명치41년1908 음력 6월 체포당하게 되자 잠시 부하를 해산한 후 강원도 영월군 칠령산七岭山에 잠복하던 중, 동 42년1909 음력 2~3월경 다시 폭도를 소집하여 부하 약 80명과 함께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총검을 휴대하고 경상북도 순흥군 소천시장韶川市場에 난입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음식물을 강탈함.

셋째, 명치42년1909 음력 4~5월경 앞서 언급한 칠령산 안에서 강도를 하기로 주모하고, 피고의 부하가 된 우익장右翼將 최성천에 대해 산중에서 양식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외부로 행동하여 강도를 할 뜻을 지휘하여, 최성천이 그 지휘를 따라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부하 약 70명을 거느리고 총검을 휴대하여 의도를 지속하다가, 경상북도 순흥군 수식면水息面 덕산리德山里, 영천군榮川郡 북면北面 오록동梧麓洞, 봉화군 물야면物野面 황해리黃海里 등에 난입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음식물을 강탈하였고 피고는 그 장물贓物을 분배 받음.

넷째, 명치43년1910 음력 5월경 강원도 영월군 태백산 안에서 강도를 하기로 주모하고 부하 최성천·강병수姜炳秀 등에 강도가 될 뜻을 지휘하여, 최성천·강병수 등이 그 지휘를 따라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한명만韓命萬 이하 도당 십 수 명과 함께 총검을 휴대하고 경상북도 안동군 서후면西後面 이송천동二松川洞에 난입하여 동민 김운석金雲石으로부터 엽전 10냥, 김대헌金大憲으로부터 엽전 127냥, 이덕원李德元으로부터 엽전 385문文 및 150냥을 강탈하여 이것을 지폐로 교환하고, 강병수가 금40원을 휴대하고 대백산 안에 피고의 잠복소에 가서 이것을 수취하고 그 분배를 받았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당 공정公廷에서의 공술供述, 피고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 김운석·김대헌·이덕원·정준길丁俊吉·이근홍李近洪에 대한 각 경부警部 대리代理의 신문조서, 참조의 최성천에 대한 강도·강도 살인·강도 상인傷人 및 모살謀殺 사건 기록 가운데 최성천에 대한 경부 대리의 신문조서, 융희3년1909 6월 말 榮川경찰서로부터 경상북도 관찰사에게 보낸 보고서 사본, 한명만에 대한 강도 살인과 아울러 고살故殺 사건 기록 가운데 한명만에 대한 경부의 신문조서에 근거하여 이것을 인정한다.

이것을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제1·제2의 소위는 각기 형법대전 제593조 제3호 득재율得財律에, 제3의 소위는 동법 제615조 제1호 후단後段에, 제4의 소위는 동조 제1호

전단前段에 해당하는 바, 두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생한 것에 관계되므로 동법 제129조에 따라 제1의 죄에 부과하는 형에 따라 처단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가 최성천을 지휘하고 동 인에게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도당 20여 명과 함께 총칼을 휴대하고 경상북도 예천군 위라면 오천시장에 난입하여 산내은삼랑을 척살하고 동 인의 양복 한 벌 외 수 점을 강탈하였다는 것의 공소사실은 이것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충분치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해 무죄를 언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검사 삼촌일루杉村逸樓가 이 사건에 관여함.

명치44년1911 8월 4일

대구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판사 삼도미사랑森島彌四郎 [印]

조선총독부판사 산내은차랑山內銀次郎 [印]

조선총독부판사 서산구이랑西山久二郎 [印]

명치44년1911 8월 4일 판결 언도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겸전오랑鎌田五郎 [印]

判決

忠淸北道 永春郡 郡內面 南川洞 農

金尙台, 五十年

右被告에對ᄒᆞᆫ强盜强盜竊主强盜殺人敎唆事件에關ᄒᆞ야明治四十四年八月四日大邱地方裁判所에셔宣告ᄒᆞᆫ判決中有罪部分에對ᄒᆞ야被告로붓터控訴를申立ᄒᆞ얏기本院에셔朝鮮總督府檢事澁谷有孚立會審理를行ᄒᆞᆫ判決이左와如홈

主文

本件控訴ᄂᆞᆫ此ᄅᆞᆯ棄却홈

事實及理由

被告ᄂᆞᆫ

第一.明治四十年陰六月頃暴徒首魁李康年의部下에投入ᄒᆞ야其中軍長이되야意思ᄅᆞᆯ繼續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ᆯ目的으로셔約四百名의徒黨과共히銃劍을携帶ᄒᆞ고忠淸北道江原道慶尙北道의各閭里에攔入ᄒᆞ야就中同年陰九月頃其部下約二百名과共히忠淸北道永春郡東面儀豊里에攔入ᄒᆞ야同里長을脅迫ᄒᆞ야約二百名分의飮食物草鞋百足並葉烟草若干을强奪ᄒᆞ고江原道寧越郡某面龍谷里及其附近의各閭里에攔入ᄒᆞ야其里長等을脅迫ᄒᆞ야價格金百圓에相當ᄒᆞᆫ衣類及木綿五疋並히約二百名十日間分의飮食物을强奪ᄒᆞ얏고

第二.李康年이가明治四十一年陰六月에逮捕되야一旦部下ᄅᆞᆯ解散ᄒᆞᆫ後江原道寧越郡七岑山에潛伏中同四十二年陰二三月頃再히暴徒ᄅᆞᆯ召集ᄒᆞ야部下約八十名과共히財物劫取의目的으로셔銃劍을携帶ᄒᆞ고慶尙北道順興郡韶川市場에攔入ᄒᆞ야里民에게飮食物을强奪ᄒᆞ얏고

第三.明治四十二年陰四五月頃前揭七岑山中에셔强盜ᄒᆞᆯ事ᄅᆞᆯ主謀ᄒᆞ고被告의部下로셔右翼將된崔聖天에對ᄒᆞ야山中에셔ᄂᆞᆫ糧食缺乏ᄒᆞᆷ으로셔外部ᄅᆞᆯ行動ᄒᆞ야强盜ᄒᆞᆯ旨ᄅᆞᆯ指揮ᄒᆞ니崔聖天은其指揮ᄅᆞᆯ從ᄒᆞ야財物劫取의目的으로셔部下約七十名을率ᄒᆞ고銃劍을携帶ᄒᆞ고意思ᄅᆞᆯ繼續ᄒᆞ야慶尙北道順興郡水息面德山里榮川郡北面梧麓洞奉化郡物野面黃海里等에攔入ᄒᆞ야里民에게飮食物을强奪ᄒᆞ야도被告ᄂᆞᆫ其贓의分配ᄅᆞᆯ受치못ᄒᆞ얏고

第四.明治四十三年陰五月頃江原道寧越郡太白山中에셔强盜ᄒᆞᆯ事ᄅᆞᆯ主謀ᄒᆞ고部下崔聖天姜炳秀等에强盜ᄒᆞᆯ旨ᄅᆞᆯ指揮ᄒᆞ니崔聖天姜炳秀等은其指揮에從ᄒᆞ야財物劫取의目的으로셔韓命萬以下徒黨十數名과共히銃劍을携帶ᄒᆞ고慶尙北道安東郡西後面二松川洞에攔入ᄒᆞ야洞民金雲石에게葉錢十兩金大憲에게葉錢百二十七兩李德元에게葉錢三百八十五文及百五十兩을强奪ᄒᆞ고此ᄅᆞᆯ紙幣에交換ᄒᆞ야姜炳秀가金四十圓을携帶ᄒᆞ고大白山中된被告의潛伏所에至ᄒᆞ야被告에게交付ᄒᆞ니被告ᄂᆞᆫ此ᄅᆞᆯ受取ᄒᆞ야其分配의贓을受ᄒᆞᆫ자이라

右記事實은原審檢事廷에셔ᄒᆞᆫ被告訊問調書金雲石金大憲李德元丁俊吉李近洪에對ᄒᆞᆫ各警部代理의訊問調書參照의崔聖天에對ᄒᆞᆫ强盜强盜殺人强盜傷人及謀殺事件記錄中崔聖天에對ᄒᆞᆫ警部代理의訊問調書隆熙三年六月末榮川警察署로붓터慶尙北道觀察使에게報告書寫韓命萬에對ᄒᆞᆫ强盜殺人並故殺事件記錄中韓命萬에對ᄒᆞᆫ警部의訊問調書原審審問調書被告

의本公廷供述에徵ᄒᆞ야其證憑充分이라
此를法律에照ᄒᆞ니被告의第一第二所爲ᄂᆞᆫ各히刑法大全第五百九十三條三項既得財律에第三所謂ᄂᆞᆫ同法第六百十五條一項後段에第四所爲ᄂᆞᆫ同條一項前段에該當ᄒᆞᆫ바二罪以上俱發됨으로셔同法第百二十九條에依ᄒᆞ야第一이罪에科ᄒᆞᆯ刑에從ᄒᆞ야被告를絞에處ᄒᆞᆷ을相當타홈
然則前記同一趣旨에出ᄒᆞᆫ原判決은相當ᄒᆞ고被告의控訴ᄂᆞᆫ其理由가無ᄒᆞᆷ으로셔民刑訴訟規則第三十三條에依ᄒᆞ야主文과如히判決홈

明治四十四年 八月 三十一日
大邱公訴院 刑事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横田定雄
朝鮮總督府判事 齋藤庄三郎
朝鮮總督府判事 金應駿

裁判長ノ命ニ依リ懸註ス
朝鮮總督府裁判所通譯生 山之井麟治

右謄本也
明治四十四年 八月 三十一日
大邱控訴院 刑事部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瀧原儀太郎 [印]

판결

충청북도 永春郡 군내면郡內面 남천동南川洞
농업, 김상태金尙台 50세

위 피고에 대한 강도, 강도 와주, 강도 살인 교사 사건에 관하여 명치44년1911 8월 4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선고한 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소를 신립申立 하였기에, 본 법원에서 조선총독부검사 삽곡유부澁谷有孚의 입회·심리를 행한 판결이 다

음과 같음.

주문

본 사건의 공소는 이를 기각함.

사실과 이유

피고는,

제1, 명치40년1907 음력 6월경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부하로 들어가 중군장이 되어 의사를 계속 하여 재물을 겁취할 목적으로 약 400명의 도당과 함께 총검을 휴대하고 충청북도·강원도·경상북도의 각 마을에 난입하여, 특히 동년 음력 6월경에 그의 부하 약 200명과 함께 충청북도 永春郡 동면 의풍리에 난입하여 동 리 이장을 협박하여 약 200명 분의 음식물·초혜 100족과 아울러 엽연초 약간을 강탈하고, 강원도 영월군 모면 용곡리 및 그 부근의 각 마을에 난입하여 그곳 이장 등을 협박하여 가격금 100원에 상당한 의류 및 목면 5필과 아울러 약 200명의 10일 분량의 음식물을 강탈하였고,

제2, 이강년李康秊이 명치41년1908 음력 6월에 체포되어 일단 부하를 해산한 후 강원도 영월군 칠령산에 잠복하던 중, 동42년 음력 2~3월경 다시 폭도를 소집하여 부하 약 80명과 함께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총검을 휴대하고 경상북도 순흥군 소천시장에 난입하여 마을 주민에게 음식물을 강탈하였고,

제3, 명치42년1909 음력 4~5월경 앞에서 언급한 칠령산 안에서 강도를 할 일을 주모하고 피고의 부하로서 우익장이 된 최성천에 대하여 산중에서는 양식이 결핍되었기에 외부에 행동하여 공도 할 뜻을 지휘하니, 최성천은 그 지휘를 따라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부하 약 70명을 거느리고 총검을 휴대하고 의사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순흥군 수식면 덕산리, 榮川郡 북면 오록동, 봉화군 물야면 황해리 등에 난입하여 마을 주민에게 음식물을 강탈하여도 피고는 그 장물의 분배를 받지 못하였고,

제4, 명치43년1910 음력 5월경 강원도 영월군 태백산 안에서 강도 할 일을 주모하고 부하 최성천·강병수 등에게 강도 할 뜻을 지휘하니, 최성천·강병수 등은 그의 지휘를 따라 재물 겁취의 목적으로 한명만 이하 도당 십 수 명과 함께 총검을 휴대하고 경상북도 안동군 서후면 이송천동에 난입하여 동민 김운석에게 엽전 10냥, 김대헌에게 엽전 127냥, 이

덕원에게 엽전 385문 및 150냥을 강탈하고, 이를 지폐로 교환하여 강병수가 금40원을 휴대하고 대백산 안에 피고의 잠복소에 이르러 피고에게 교부하니, 피고는 이를 수취하여 그 분배의 장물을 받은 자이다.

위 기록된 사실은 원심검사정에서 한 피고신문조서, 김운석·김대헌·이덕원·정준길·이근홍에 대한 각 경부 대리의 신문조서, 참조의 최성천에 대한 강도·강도 살인·강도 상인 및 모살 사건 기록 가운데 최성천에 대한 경부 대리의 신문조서, 융희3년1909 6월 발 榮川경찰서로부터 경상북도 관찰사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 한명만에 대한 강도 살인과 아울러 고살 사건 기록 가운데 한명만에 대한 경부의 신문조서, 원심심문조서, 피고의 본 공정(公廷) 공술에 증명하여 그 증빙이 충분하다.

이를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의 제1·제2의 소위는 각기 형법대전 제593조 3항 기득재율에, 제3의 소위는 동법 제615조 1항 후단에, 제4의 소위는 동조 1항 전단에 해당한바, 두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생됨으로서 동법 제129조에 의하여 제1의 죄에 부과할 형벌에 따라 피고를 교수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즉, 앞에 기록한 동일 취지에서 낸 원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그 이유가 없음으로 민·형소송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명치44년1911 8월 31일
대구공소원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판사 횡전정웅橫田定雄
조선총독부판사 재등장삼랑齋藤庄三郎
조선총독부판사 김응준金應駿

재판장의 명에 의해 현주懸註 함
조선총독부재판소통역생 산지정인치山之井麟治

위는 등본임
명치44년1911 8월 31일
대구공소원형사부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농원의태랑瀧原儀太郎 [印]

■ **김상태 판결문**(1911년 8월 4일, 대구지방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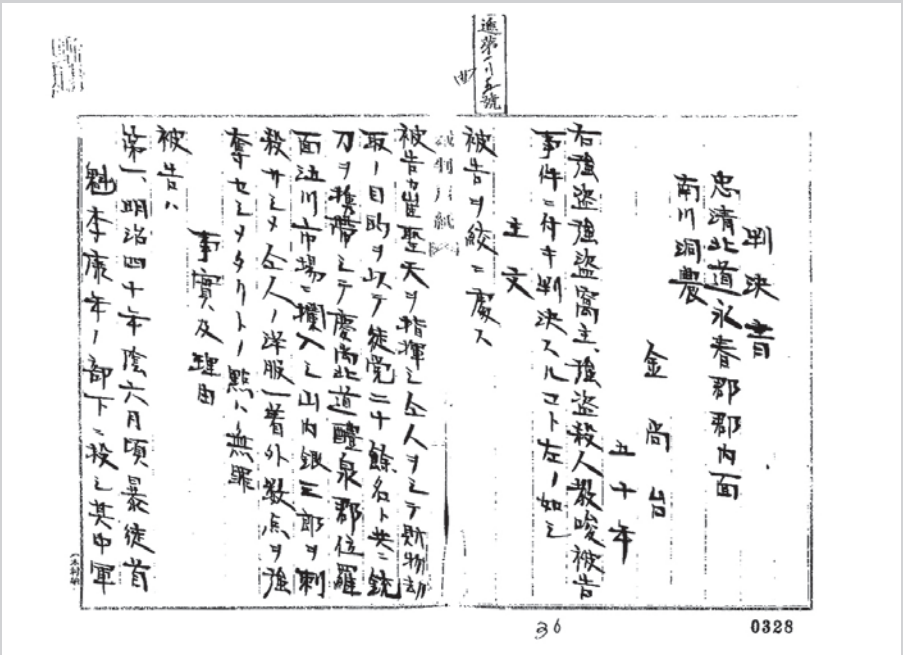

判決書
忠清北道永春郡郡内面
南川洞農
金尚台
五十年
右強盜強盜窩主、強盜殺人教唆被告
事件ニ付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ヲ絞ニ處ス
被告ガ崔聖天ヲ指揮シ仝人ヲシテ財物劫
取ノ目的ヲ以テ徒党二十餘名ト共ニ銃
刀ヲ携帶シテ慶尚北道醴泉郡位羅
面江川市場ニ攔入シ山内銀三郎ヲ刺
殺サシメ仝人ノ洋服一着外數点ヲ強
奪セシメタリトノ點ハ無罪
事實及理由
被告ハ
第一、明治四十年陰六月頃暴徒首
魁李康年ノ部下ニ投シ其中軍

36 0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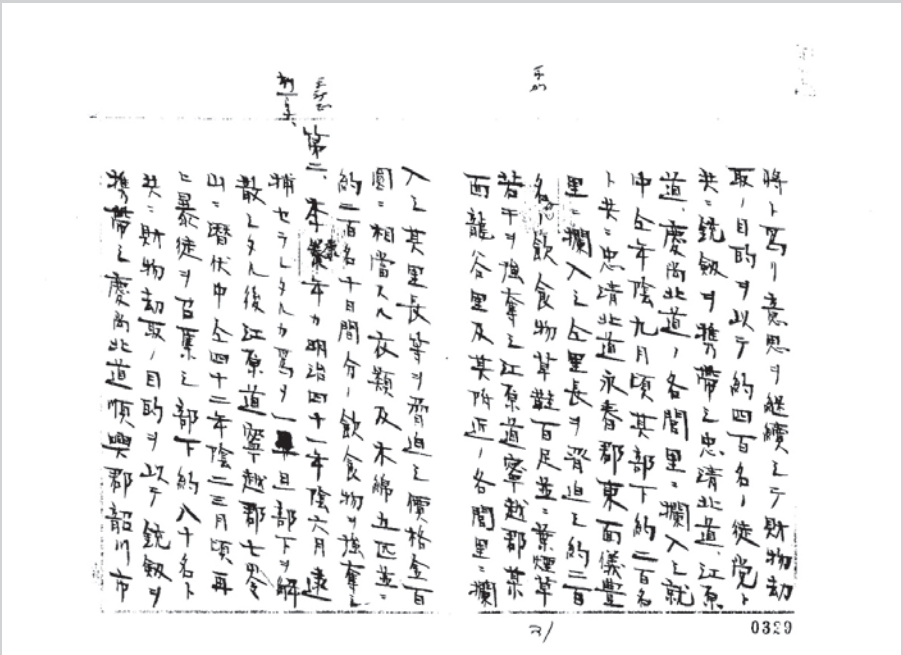

將ト爲リ意思ヲ継續シテ財物劫
取ノ目的ヲ以テ約四百名ノ徒党ト
共ニ銃劍ヲ携帶シ忠清北道、江原
道、慶尚北道ノ各閭里ニ攔入シ就
中仝年陰九月頃其部下約二百名
ト共ニ忠清北道永春郡東面儀豊
里ニ攔入シ仝里長ヲ脅迫シ約二百
名ノ飲食物草鞋百足並ニ葉煙草
若干ヲ強奪シ江原道寧越郡某
面龍谷里及其附近ノ各閭里ニ攔
入シ其里長等ヲ脅迫シ價格金百
圓ニ相當スル衣類及木綿五匹並ニ
約二百名十日間分ノ飲食物ヲ強奪シ
第二、本年カ明治四十一年陰六月逮
捕セラレタルカ爲メ一旦部下ヲ解
散シタル後江原道寧越郡七峯
山ニ潜伏中仝四十二年陰二三月頃再
ヒ暴徒ヲ召集シ部下約八十名ト
共ニ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銃劍ヲ
携帶シ慶尚北道順興郡韶川市

31 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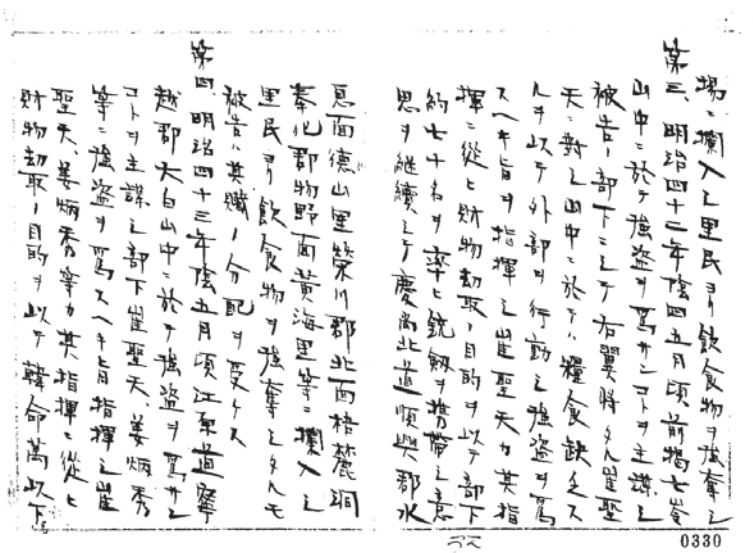

場ニ攔入シ里民ヨリ飲食物ヲ強奪シ
第三、明治四十二年陰四五月頃前揭七峯
山中ニ於テ強盜ヲ爲サンコトヲ主謀シ
被告ノ部下ニシテ右翼將タル崔聖
天ニ對シ山中ニ於テハ糧食缺乏スル
ヲ以テ外部ヲ行動シ強盜ヲ爲
スヘキ旨ヲ指揮シ崔聖天カ其指
揮ニ從ヒ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部下
約七十名ヲ率ヒ銃劍ヲ携帶シ意
思ヲ継續シテ慶尚北道順興郡水

0330

恩面德山里榮川郡北面梧麓洞
奉化郡物野面黃海里等ニ攔入シ
里民ヨリ飲食物ヲ強奪シタルモ
被告ハ其贓ノ分配ヲ受ケス
第四、明治四十三年陰五月頃江原道寧
越郡大白山中ニ於テ強盜ヲ爲サン
コトヲ主謀シ部下崔聖天、姜炳秀
等ニ強盜ヲ爲スヘキ旨指揮シ崔
聖天、姜炳秀等カ其指揮ニ從ヒ
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韓命萬以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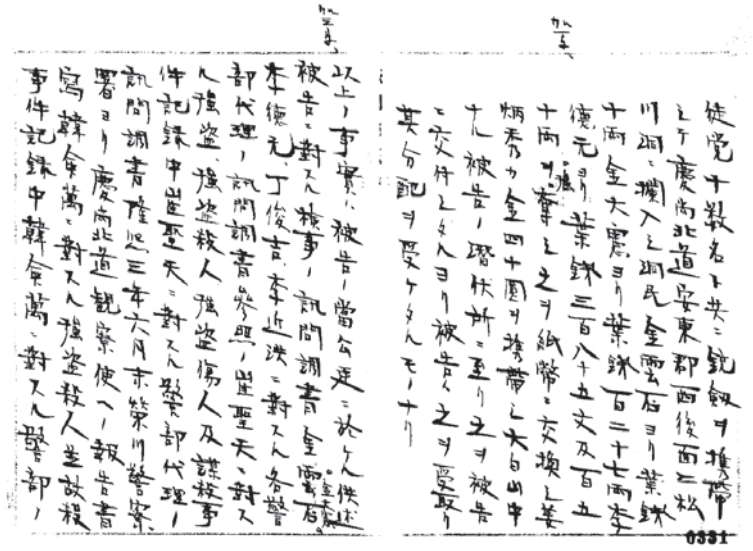

徒党十數名ト共ニ銃劍ヲ携帶
シテ慶尚北道安東郡西後面二松
川洞ニ攔入シ洞民金雲石ヨリ葉銖
十兩金大憲ヨリ葉銖百二十七兩李
德元ヨリ葉銖三百八十五文及百五
十兩ヲ強奪シ之ヲ紙幣ニ交換シ姜
炳秀カ金四十圓ヲ携帶シ大白山中
ナル被告ノ潛伏所ニ至リ之ヲ被告
ニ交付シタルヨリ被告ハ之ヲ受取リ
其分配ヲ受ケタルモノナリ

0331

以上ノ事實ハ被告ノ當公廷ニ於ケル供述
被告ニ對スル檢事ノ訊問調書金雲石、金大憲、
李德元、丁俊吉、李近洪ニ對スル各警
部代理ノ訊問調書參照ノ崔聖天ニ對ス
ル強盜、強盜殺人、強盜傷人及謀殺事
件記錄中崔聖天ニ對スル警部代理ノ
訊問調書隆熙三年六月末榮川警察
署ヨリ慶尚北道觀察使ヘノ報告書
寫韓命萬ニ對スル強盜殺人並故殺
事件記錄中韓命萬ニ對スル警部ノ

訊問調書ニ徴シ之ヲ認定ス
之ヲ法律ニ照スニ被告ノ第一、二ノ所為ハ各
刑法大全第五百九十三条第三號得財律
ニ第三ノ所為ハ全法第六百十五条第
一號後段ニ第四ノ所為ハ全条第一號
前段ニ該當スル處ニ罪以上ノ倶發ニ係
ルヲ以テ全法第百二十九条ニ依リ第一ノ
罪ニ科スヘキ刑ニ從テ處斷スヘキモノトス
被告カ閔聖天ヲ指揮シテ全人ヲシテ
財物劫取ノ目的ヲ以テ徒党二十餘名
ト共ニ銃刀ヲ携帯シテ慶尚北道醴泉
郡位羅面迅川市場ニ攔入シ山内銀三
郎ヲ刺殺セシメ全人ノ洋服一着外
數点ヲ掠奪セシメタリトノ公訴事實ハ
之ヲ認ムヘキ證憑十分ナラサルヲ以テ
此点ニ付テハ被告ニ對シ無罪ヲ言渡
スヘキモノトス
仍テ主文ノ如ク判決ス
朝鮮總督府検事杉村逸樓本件ニ干與ス
明治四十四年八月四日

34

0332

大邱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 森衛獨四郎
朝鮮總督府判事 [illegible]
朝鮮總督府判事 西山大三郎
明治四十四年八月四日判決言渡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illegible]

35

0333

■ **김상태 판결문**(1911년 8월 31일, 대구공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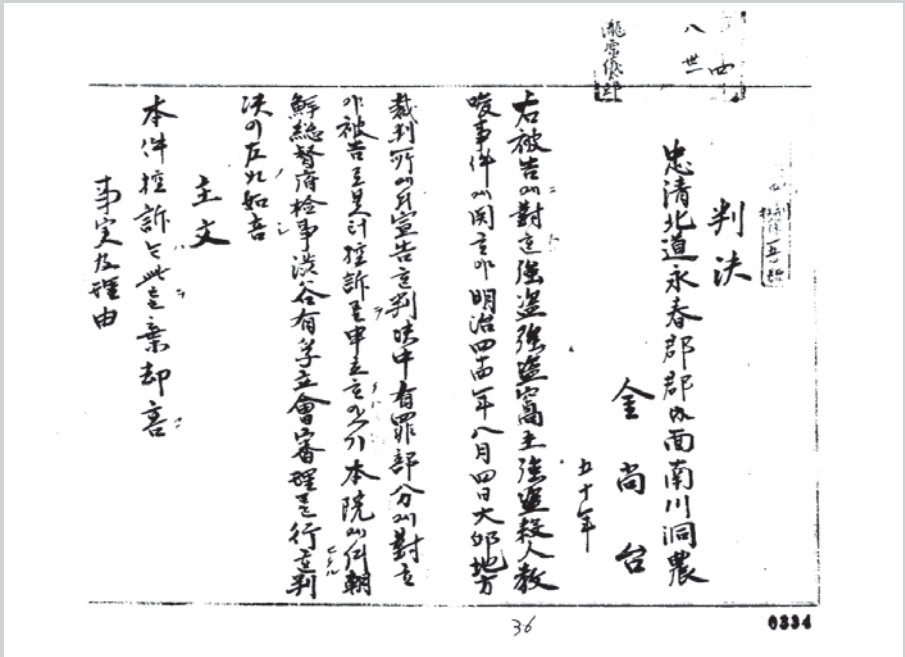

判決

忠清北道永春郡郡內面南川洞農

金尙台

五十年

右被告ニ對シ強盜強盜窩主強盜殺人教唆事件ニ關シ明治四十四年八月四日大邱地方裁判所ニ於テ宣告シ判決中有罪部分ニ對シ被告ニ是ニ付控訴ヲ申立シ之ニ本院ニ於テ朝鮮總督府檢事渋谷有孚立會審理ヲ行シ判決ニ左ノ如シ

主文

本件控訴ヲ此ヲ棄却ス

事實及理由

36

0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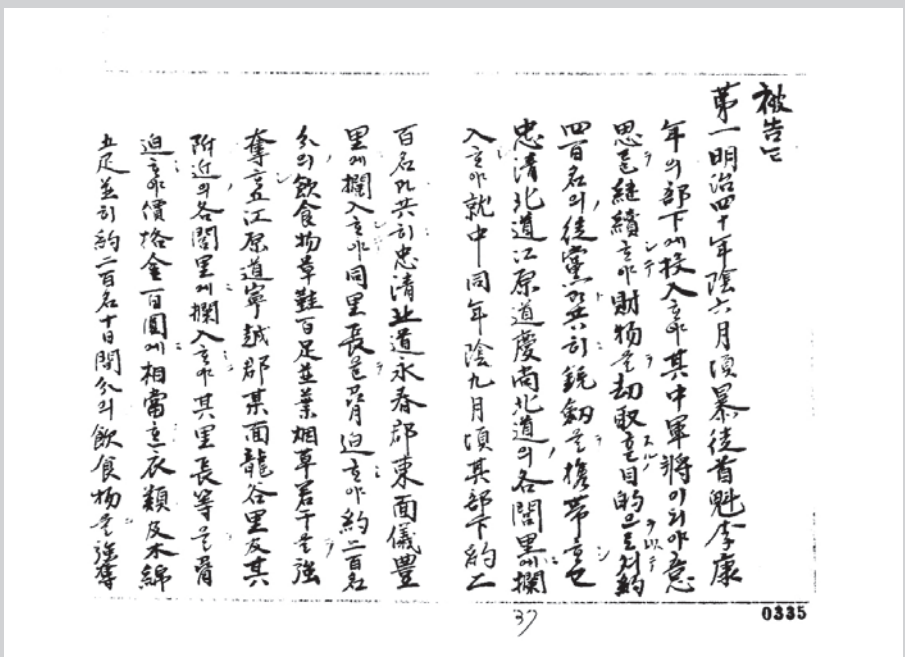

被告ヲ

第一明治四十年陰六月頃暴徒首魁李康年ニ部下ニ投入シ其中軍將ニ於テ意思ヲ繼續シ財物ヲ劫取シ目的ニ以テ約四百名ニ徒黨ニ共ニ銃劍ヲ携帶シ忠清北道江原道慶尙北道ニ各閭里ニ攔入シ就中同年陰九月頃其部下約二百名ニ共ニ忠清北道永春郡東面儀豊里ニ攔入シ同里長ヲ脅迫シ約二百名ニ飲食物草鞋百足並葉烟草若干ヲ強奪シ江原道寧越郡某面龍谷里及其附近ニ各閭里ニ攔入シ其里長等ヲ脅迫シ價格金百圓ニ相當シ衣類及木綿五疋並ニ約二百名十日間ニ飲食物ヲ強奪

37

0335

하얏고
第二 李康年이가 明治四十一年 陰六月에 逮捕되야 一旦部下를 解散한 後 江原道 寧越郡 七峯山에 潛伏中 同四十二年 陰三月頃 再히 累徒를 召集하야 部下 約八十名과 共히 財物 劫取의 目的으로써 銃劒을 携帶하고 慶尙北道 順興郡 韶川市場에 闖入하야 里民에게 飮食物을 强奪하얏고

第三 明治四十二年 陰四五月頃 前揭 七峯山中에서 强盜할 事를 主謀하고 被告의 部下로서 右 賊將 된 崔聖天에 對하야 山中에서는 糧食 缺乏함으로써 外部를 行動하야 强盜할 旨를 指揮하매 崔聖天은 其 指揮를 從하야 財物 劫取의 目的으로써 部下 約七十名을 率하고 銃劒을

38

0336

携帶하고 意思를 繼續하야 慶尙北道 順興郡 水息面 德山里 榮川郡 北面 梧瑟洞 奉化郡 物野面 黃海里 等에 闖入하야 里民에게 飮食物을 强奪하야 오 被告는 其 贓의 分配를 受치 못하얏고

第四 明治四十三年 陰五月頃 江原道 寧越郡 大白山中에서 强盜할 事를 主謀하고 部下 崔聖天 姜炳秀 等에게 强盜할 旨를 指揮하매 崔聖天 姜炳秀 等은 其 指揮에 從하야 財物 劫取의 目的으로써 韓命萬 以下 徒黨 十數名과 共히 銃劒을 携帶하고 慶尙北道 安東郡 西後面 二松川洞에 闖入하야 洞民 金雲石에게 葉錢 十兩 金大憲에게 葉錢 百二十七兩 李德元에게 葉錢 三百八十五文 及 百五十兩을 强奪하얏고

37

0337

은 紙幣에 交換하야 姜炳秀가 金四十圜
을 携帶하고 太白山中에셔 被告의 潛伏所
에 至하야 被告에게 交付하매 被告는 此를 受取
하야 其分配의 賍을 受한 者이라
右記事實은 原審檢事廷에 付한 被告訊問
調書, 金雲石, 金大憲, 李德元, 丁俊吉, 李近洪
에 對한 各警部代理의 訊問調書參照의 崔聖天
에 對한 强盜殺人强盜傷人及謀殺事件記錄中 崔
聖天에 對한 警部代理의 訊問調書, 隆熙三年六
月末 榮川警察署로붓터 慶尙北道觀察使에게
報告書寫 韓命萬에 對한 强盜殺人並放火事
件記錄中 韓命萬에 對한 警部의 訊問調
書, 原審々問調書 被告의 本公廷供述에 徵하야 其
證憑이 充分하니라

42

0338

此를 法律에 照하니 被告의 第一第二所爲는 各
히 刑法大全第五百九十三條三項 旣得財律에 第
三所爲는 同法第六百七十五條一項後段에 第四所爲
는 同條一項前段에 該當한 以二罪以上俱發일으
로써 同法第百二十九條에 依하야 第一의 罪에 科할
刑에 從하야 被告를 絞에 處함이 相當하니
然則 前記同一趣旨에 出한 原判決은 相當하
고 被告의 控訴는 其理由가 無함으로써 民刑訴
訟規則第三十三條에 依하야 主文과 如히 判決
함

明治四十四年八月三十日

大邱控訴院刑事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橫田定雄

朝鮮總督府判事 齋藤庄三郎

41

0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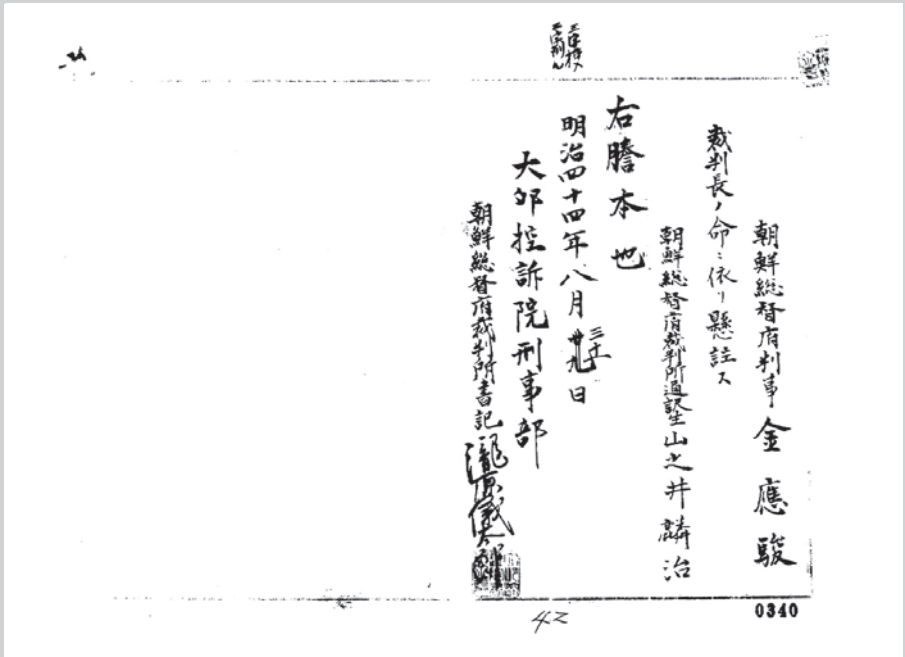

朝鮮總督府判事 金應駿

裁判長ノ命ニ依リ懸註ス

朝鮮總督府裁判所通譯生 山之井麟治

右謄本也

明治四十四年八月三十九日

大邱控訴院刑事部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illegible]

0340

42

26. 안교봉·최욱영

判決[大正四年刑控第二四二,二四三號]

忠淸北道 堤川郡 西面 坪洞里 農
安敎奉, 四十年
慶尙北道 聞慶郡 永順面 白浦里 無職
崔旭永[權泰俊事], 六十年

右敎奉ニ對スル强盜旭永ニ對スル强盜敎唆各被告事件ニ付キ大正四年五月七日同六月十一日公州地方法院カ言渡シタル各判決ニ對シ被告ヨリ各控訴申立アリタルヲ以テ併合審理ヲ遂ケ左ノ如ク判決ス

主文

被告兩名ノ控訴ハ共ニ之ヲ棄却ス

理由

被告旭永ハ元ト暴徒ノ首魁李康年ノ軍師長ニシテ同人就縛後權泰俊ト變名シ鄕里ニ潛伏シ居タルカ大正二年中金在性ヨリ李大王ノ密書ト稱スル一通ノ文書ヲ交付セラレ國權恢復ニ盡力セレコトヲ勸メラレタルヲ奇貨トシ名ヲ軍資金ノ募集ニ籍リ部下ヲ使嗾シテ强盜ヲ爲サレメシコトヲ企テ

第一.大正三年十月中被告安敎奉外數名ニ對シ慶尙北道安東郡豊南面河回里柳準榮及ヒ同所柳純榮方ヨリ金品ヲ强奪シ來ラレコトヲ敎唆シ因テ被告安敎奉等ハ同月中先ツ準榮方ニ於テ財物ヲ劫取セレコトヲ共謀シ銃劍鐵棒ヲ携ヘテ同人方ニ突入シ同人ヲ毆打脅迫シタル上金二十三円六十戔及ヒ帽一個ヲ奪取シ次ニ意思繼續シテ純榮方ニ突入シ同人ヲ毆打脅迫シタル上金拾円敷物三枚及ヒ雜品六点ヲ奪取シ

第二.尙ホ敎唆ノ意思繼續シ同年十二月中廉石龍外數名ニ對シ忠淸北道堤川郡近左面下九曲

里李鍾國李容兌方及ヒ同面面事務所ニ到リ金品ヲ强奪シ來ラレコトヲ敎唆シ因テ廉石龍等ハ同月中財物ヲ劫取セレコトヲ共謀シ犯意繼續シテ右鍾國容兌方ニ順次突入シ所持ノ銃劍ヲ示シテ同人等ヲ脅迫シタル上鍾國ヨリ金三十四円及ヒ雜品四点容兌ヨリ金七十一円十二戔ヲ奪取シタルナリ

以上ノ事實ハ原審公判始末書中被告旭永ノ自分ハ明治四十年中李康年カ率キタル義兵ノ軍師長ナリシカ同人就縛後ハ本籍地ニ歸リ權泰俊ト稱シ居タリ然ルニ大正二年中金在性ヨリ李大王ノ密書ヲ貰ヒタルヲ以テ更ニ身命ヲ賭シ國權ヲ恢復セレト企テ軍資金ノ募集ニ着手シタル次第ナルカ自分ノ部下ハ安敎奉廉石龍其他十數名ナリシ旨司法警察官ノ被告訊問調書中自分ハ平素部下ニ對シ軍資缺乏ノ場合ニハ有福者ヨリ徵發セヨト命シ置キタル旨檢事ノ被告訊問調書中大正三年十月十八日夜河回洞ノ柳家二軒ニ赴キシ者ハ安敎奉外數名ニシテ自分ハ一同ヲ送リ義城郡多仁面毛倉洞ニ到リタルカ當時部下ノ携帶セシ銃五挺ハ聞慶郡内ノ山中ヨリ取出シタルモナリ又近左面ノ方面ニ行キタル者ハ河回洞ニ行キタル者ニ金佐敬外一人ヲ加ヘタル一行ナル旨同崔根瀅訊問調書中自分ノ父旭永ノ部下ハ十數名ヨリテ義兵ノ資金ヲ富者ヨリ强奪スルモナルカ父ハ一一强盜ニ往クヘキ所ヲ指定シ部下ヨリ其都度復命シ居タル旨同廉石龍訊問調書中自分ハ大正三年陰十月十四日堤川郡近左面下九曲里李鍾國方ヘ李聖西外數名ト共ニ銃刀鐵棒ヲ携ヘテ强盜ニ行キタルカ次テ鍾國ノ子ヲ縛シ引連レテ面書記ノ宅ヲ襲ヒタル旨同被告安敎奉訊問調書中自分ハ大正三年陰八月頃指揮者タル崔旭永ヲ除キ李聖西外數名ト共ニ安東郡河回里柳方ヘ銃刀鐵棒ヲ携ヘテ强盜ニ行キタルカ同夜一同ノ者カ更ニ程近キ家ニ入込ムヲ見タル旨各供述記載司法警察官ノ柳準榮柳純榮李鍾國李容兌各訊問調書中判示ニ符合スル各强盜被害事實ノ供述記載及ヒ押收ニ係ル勅命ト題スル文書ノ現在ニ據リ之ヲ認定スル十分ナリ

法ヲ按スルニ被告敎奉强盜所爲ハ刑法第五十五條刑法大全第五百九十三條第一號旣得財律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ニ該當シ死刑ニ處スヘク被告旭永强盜敎唆ノ所爲ハ刑法第六十一條第一項刑法大全第五百九十三條第一號旣得財律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ニ該當シ一個ノ行爲ニシテ數個ノ罪名ニ獨レルヲ以テ刑法第五十四條第一項第十條ニ從ヒ柳準榮及ヒ李容兌方ニ於ケル强盜敎唆罪ヲ各重シト認メ連續犯ナルニヨリ同法第五十五條ヲ適用シ死刑ニ處スヘキトコロ被告兩名トモ犯情憫諒スヘキ点アルヲ以テ名刑法第六十六條第七十一條第六十八條第一號ニ依リ減輕ヲ爲シ有期懲役刑ヲ選擇シテ被告敎奉ヲ懲役十

年被告旭永ヲ懲役十五年ニ處スヘク押收物件中火繩銃七挺刀二本鐵棒一本及ヒ火繩竝ニ彈丸ハ本件犯罪ノ供用物ニシテ犯人以對者ニ屬セスト認メ刑法第十九條ニ依リ之ヲ沒收シ其餘ハ刑事訴訟法第二百二條ニ從ヒ其還付處分ヲ爲スヘキモノトス

然レハ右ト同一理由ニ基キ同一處分ヲ爲シタル原判決相當ニシテ被告兩名ノ控訴ハ何モ理由ナシ仍テ刑事訴訟法第二百六十一條第一項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シタリ

朝鮮總督府檢事奧田畯干與ス

大正四年 七月 十六日

京城覆審法院 刑事部

裁判長 朝鮮總督府判事 鈴木伍三郎 [印]

朝鮮總督府判事 和田四郎 [印]

朝鮮總督府判事 靑山暢性 [印]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岡忠孝 [印]

판결 [대정4년1915 형공(刑控)제242 · 43호]

충청북도 제천군 서면西面 평동리坪洞里

농업, 안교봉安敎奉 40세

경상북도 문경군 영순면永順面 백포리白浦里

무직, 최욱영崔旭永 [이명 권태준(權泰俊)] 60세

위 안교봉에 대한 강도, 최욱영에 대한 강도 교사 각 피고 사건에 대해 대정4년1915 5월 7일, 동 6월 1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언도한 각 판결*에 대해 피고로부터 각기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함께 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공주지방법원(1915년 5월 7일, 6월 11일) 판결문 확인 불가.

주문

피고 두 사람의 공소는 모두 이것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 최욱영은 원래 폭도 수괴 이강년李康秊의 군사장으로서, 동인이 붙잡힌 이후 권태준으로 이름을 바꾸고 향리에 잠복하여 살다가 대정2년1913 상간에 김재성金在性으로부터 이 대왕李大王, 고종의 밀서라고 칭한 1통의 문서를 교부하고 국권회복에 진력하기를 권했던 것을 기회로 하여 명칭을 군자금 모집이라고 하면서 부하를 사주하여 강도를 행하기를 기도함.

제1, 대정3년1914 10월 상간에 피고 안교봉 외 수 명에 대하여, 경상북도 안동군 풍남면豊南面 하회리河回里의 류준영柳準榮 및 동소同所 류순영柳純榮 방方으로부터 금품을 강탈해 오기를 교사하여, 이로 인해 피고 안교봉 등은 동월 상간에 우선 류준영 방에서 재물을 겁취하고자 공모하여 총검과 철봉을 휴대하고 동 인 방에 돌입하여 동 인을 구타·협박하던 끝에 금 23원 60전 및 모자 1개를 탈취하던 차에, 의사를 계속하여 류순영 방에 돌입하여 동인을 구타·협박하던 끝에 금 10원과 부물敷物, 돗자리 3매 및 잡품雜品 6점을 탈취함.

제2, 또한 교사敎唆의 의사를 계속하여 동년 12월 상간에 염석룡廉石龍 외 수명에 대하여 충청북도 제천군 근좌면近左面 하구곡리下九曲里의 이종국李鍾國·이용태李容兌 방方 및 동면의 면사무소에 이르러 금품을 강탈해 오기를 교사하여, 이로인해 염석룡 등은 동 월 상간에 재물을 겁취하기로 공모하고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계속하다가 위 이종국·이용태 방에 순차적으로 돌입하여 소지한 총검을 보이며 동 인 등을 협박하던 끝에 이종국으로부터 금 34원 및 잡품 4점, 이용태로부터 금 71원 12전을 탈취했다고 한다.

이상의 사실은 원심공판 시말서 가운데 피고 최욱영의 "자신은 명치4년 상간에 이강년李康秊이 이끄는 의병의 군사장이었다가, 동 인이 붙잡힌 이후는 본적지로 돌아가 권태준으로 칭하며 살았는데, 대정2년1913 상간에 김재성으로부터 이 대왕의 밀서를 받은 것에 따라 다시 신명을 걸고 국권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군자금 모집에 착수하기를 차제로 하다가 자신의 부하인 안교봉·염석룡 등 기타 십수명이다"라고 한 내용, 사법경찰관의 피고 신문조서 가운데 "자신은 평소 부하들에게 군자금이 결핍된 경우에는 부유한 자로부터 징발하라 명령해 두었다"라고 한 내용, 검사의 피고 신문조서 가운데 "대정3년1914 10

월 18일 밤에 하회동의 류씨 집안 두 곳에 간 자는 안교봉 외 수명이므로 자신은 일동을 보내 의성군 다인면多仁面 모창동毛倉洞에 이르렀다가 당시 부하가 휴대한 총기 5정을 문경군 내의 산중으로부터 가지고 왔다고도 하고, 또 근좌면의 방면으로 간 자는 하회동에 갔던 자에다가 김좌경金佐敬 외 1인을 더한 일행이었다"라고 한 내용, 동 최근형崔根瀅 신문조서 가운데 "자신의 부친 최욱영의 부하는 십수명으로서 의병의 자금을 부자들로부터 강탈했다고 하다가, 부친은 일일이 강도에게 갈 곳을 지정하고 부하들로부터 그때마다 다시 명하기도 했다"라는 내용, 동 염석룡 신문조서 가운데 "자신은 대정3년1914 음력 10월 14일에 제천군 근좌면 하구곡리의 이종국 방에서 이성서李聖西 외 수명과 함께 총칼과 철봉을 가지고 강도를 행하던 끝에 이종국의 아들을 결박하여 데리고 면서기의 집을 습격했다"라고 한 내용, 동 피고 안교봉 신문조서 가운데 "자신은 대정3년1914 음력 8월경 지휘자인 최욱영을 제외하고 이성서 외 수명과 함께 안동군 하회리 류모 방에 총검·철봉을 가지고 강도를 행하다가 같은 날 밤 일동들이 다시 부근의 집으로 숨어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 각 공술기재, 사법경찰관의 류준영·류순영·이종국·이용태 각 신문조서 가운데 판시에 부합한 강도피해 사실의 공술기재 및 압수와 관계된 '칙명勅命'이 적힌 문서의 현재에 근거하여 이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으로 살펴보면, 피고 안교봉의 강도 소위는 형법 제55조, 형법대전 제593조 제1호 기득재율,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여 사형에 처하고, 피고 최욱영의 강도 교사 소위는 형법 제61조 제1항, 형법대전 제593조 제1호 기득재율,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한 일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명에 단독된 것으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제10조에 따라 류준영 및 이용태 방에서의 강도 교사죄가 각기 중하다고 인정되는 연속범으로서 동법 제55조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해야하는 바, 피고 두 명에게도 범행 정황에 민량憫諒해야 할 점이 있으므로 형법 제66조, 제71조, 제68조 제1호에 의해 감경하고 유기징역 형을 선택하여 피고 안교봉을 징역 10년, 피고 최욱영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압수 물건 중 화승총 7정, 도刀 2본, 철봉 1본 및 화승과 탄환은 본 사건 범죄의 공용물로서 범인과 한 쌍에 속한다고 인정되어 형법 제19조에 의해 이것을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그것을 환부처분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과 같은 이유에 기반하여 동일한 처분을 행한 원판결과 상당하므로 피고 두명의 공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검사 오전준奧田畯이 관여함.

대정4년1915 7월 16일

경성복심법원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복부판사 영목오삼랑鈴木伍三郎 [印]

조선총복부판사 화전사랑和田四郎 [印]

조선총복부판사 청산창성靑山暢性 [印]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강충효岡忠孝 [印]

■ **안교봉 · 최욱영 판결문**(1915년 7월 16일, 경성복심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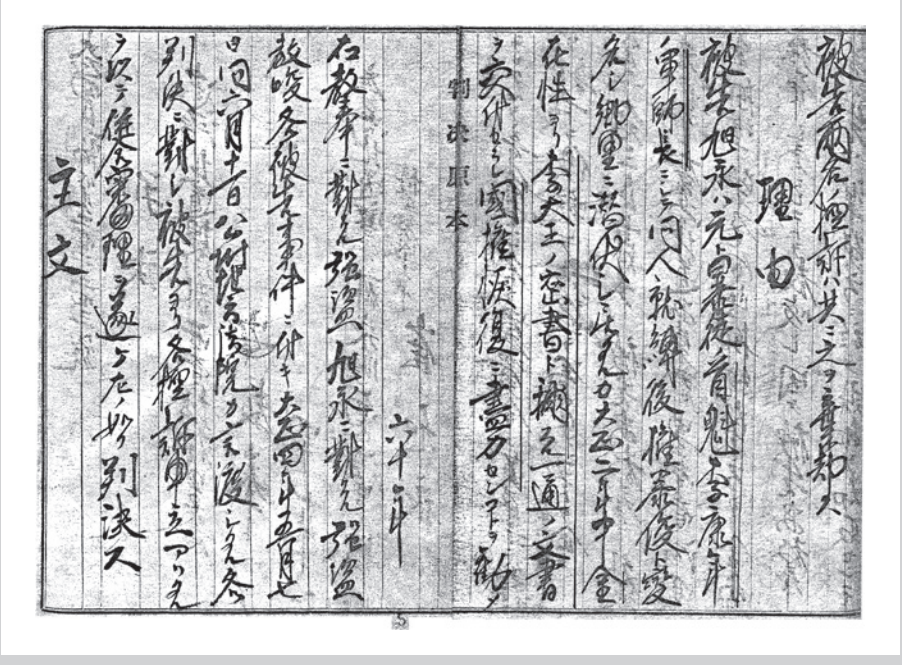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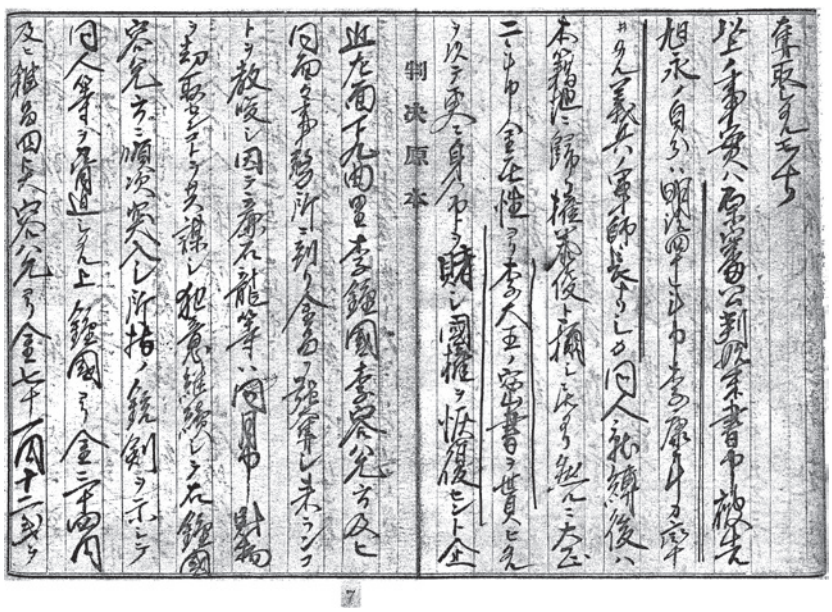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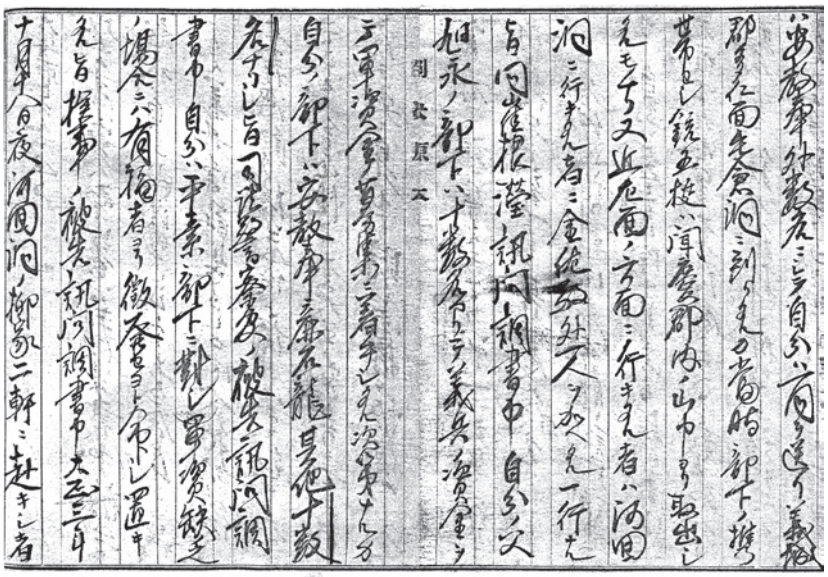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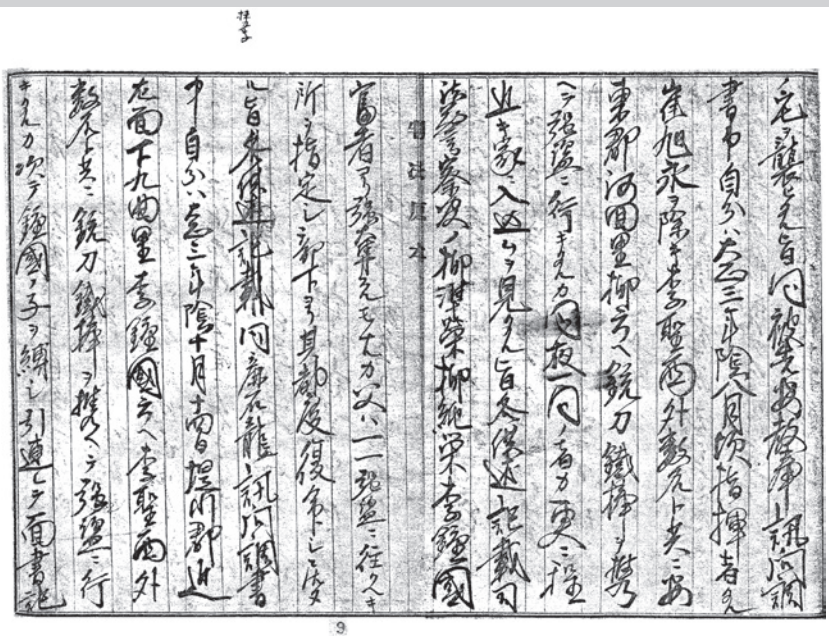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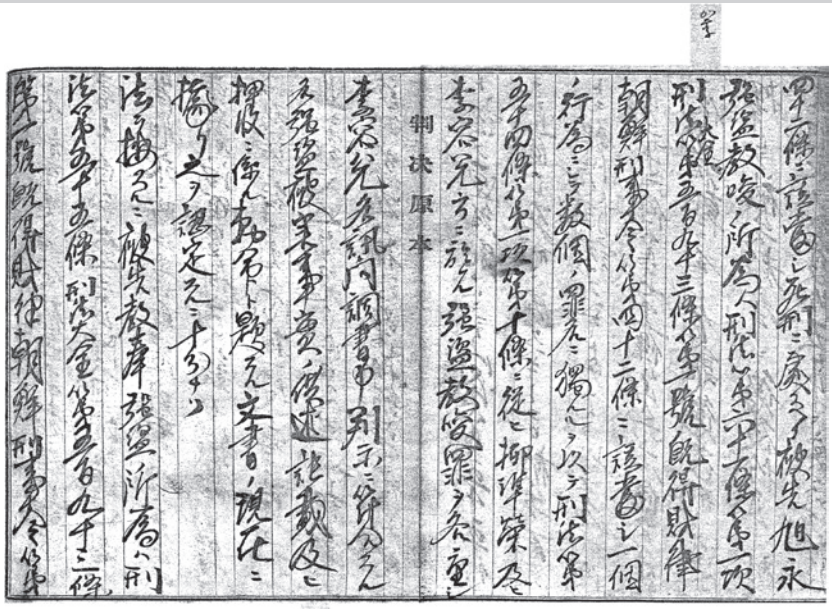

四十二條ニ該當シ死刑ニ處スヘキ被告旭永
強盜教唆ノ所爲ハ刑法第二十一條第一項
刑法大全第五百九十三條第一號既得財律
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ニ該當シ一個
ノ行爲ニシテ數個ノ罪名ニ獨ルヲ以テ刑法第
五十四條第一項第十條ニ從ヒ柳準榮及ヒ
李容兄方ニ於ケル強盜教唆罪ヲ各重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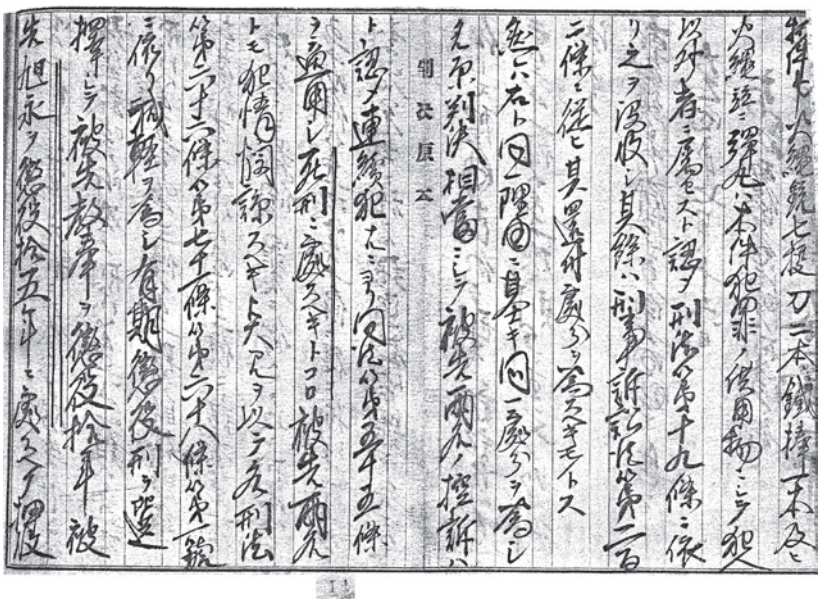

判決原本

李容兄各訊問調書中判示ニ符合スル
各強盜被害事實ノ供述該載及ヒ
押收ニ係ル賊品ト題スル文書ノ現在ニ
據リ之ヲ認定スルニ十分ナリ
法ニ據スルニ被告教庫強盜所爲ハ刑
法第五十五條刑法大全第五百九十三條
第一號既得財律朝鮮刑事令第

10

特件七火繩銃七挺刀二本鐵棒一本及ヒ
火繩銃ニ彈丸ハ本件犯罪ノ供用物ニシテ犯人
以外者ニ屬セスト認メ刑法第十九條ニ依
リ之ヲ沒收シ其餘ハ刑事訴訟法第二百
二條ニ從ヒ其還付處分ヲ爲スヘキモノトス
然レハ右ト同一陣圖ニ基キ同一處分ヲ爲シ
名原判決相當ニシテ被告兩名ノ控訴ハ

判決原本

ト認メ連續犯ナルニヨリ同法第五十五條
ヲ適用シ死刑ニ處スヘキトコロ被告兩名
トモ犯情悔悟ニ諒スヘキ大ナルヲ以テ各刑法
第六十六條第七十一條第六十八條第一號
ニ依リ減輕ヲ爲シ有期懲役刑ヲ選
擇シテ被告教庫ヲ懲役拾年被
告旭永ヲ懲役拾五年ニ處スヘキ押收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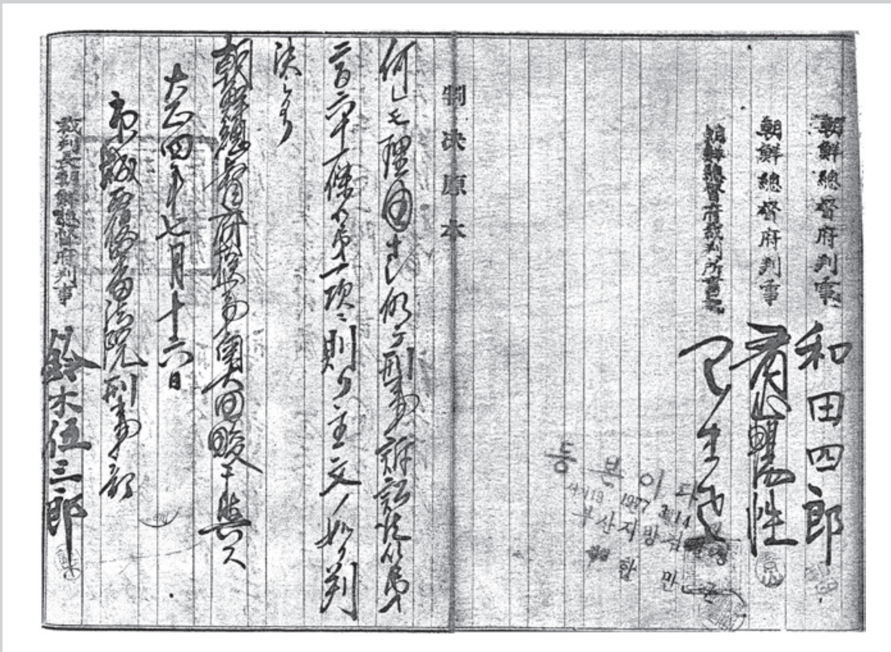
朝鮮總督府判事 和田四郎

朝鮮總督府判事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判決原本

大正四年七月十二日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 鈴木伍三郎

27. 김병우

判決

慶尙北道 聞慶郡 虎溪面 芝泉洞 在籍
同道 漆谷郡 枝川面 蓮花洞 居住
無職, 金炳祐, 三十七年

右保安法違反被告事件ニ付朝鮮總督府檢事長尾戒三干與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炳祐ヲ懲役六月ニ處ス
押收ノ證據物件ハ各差出人ニ還付ス

理由

被告ハ大正六年二月十二日頃慶尙北道漆谷郡枝川面錦湖洞尹炳敦方ニ於テ仝人ニ對シ又同年四月四日頃仝面蓮花洞ナル被告居宅ニ於テ仝洞李極淵ニ對シ何レモ被告ハ李增淵外數名ノ同志ト共ニ朝鮮ノ國權回復ヲ計劃シ居ルニヨリ此擧ニ贊同援助セラレタキ旨ヲ告ケテ仝人等ヲ勸誘シ以テ政事ニ關シ不穩ノ行動ヲ爲シ治安ヲ妨害シタルモノトス
證憑ヲ案スルニ被告ニ對スル檢事ノ訊問調書中尹炳敦並ニ李極淵ニ對シ判示ノ如キ勸誘ヲ爲シタル處仝人等ハ到底行ハルヘキコトニアラサル樣語リ居リタル旨被告供述ノ記事
證人尹炳敦ニ對スル仝上訊問調書中金炳祐ハ大正六年陰正月二十一日頃證人方ニ來リタル際李增淵黃海轍崔鎭永ノ三人ノ名前ヲ記シタル名刺樣ノ紙片ヲ示シ此名前ノ人達ハ社會ニ功名ヲ爲スヘキ人ナル故交際セヨト語リ居リタル旨炳敦供述ノ記事
證人李極淵ニ對スル仝上訊問調書中大正六年陰二月十三日頃金炳祐方ニ赴キタル所仝人ハ李某崔某黃某ノ名前ヲ記シタル名刺用ノ紙片ヲ示シ此ノ名前ノ人達ハ共ニ朝鮮ノ國權

回復ノ計劃中ナル旨語リタルニ付詐欺ヲ爲スモノト思ヒ憲兵出場所ニ申告シタル旨極淵供述ノ記事ニ徵シ判示事實ハ之ヲ認ムルニ十分ナリ
法律ニ照スニ被告ノ所爲ハ保安法第七條ニ該當スル犯罪ナルヲ以テ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ニ從ヒ其刑名ヲ變更シ尙所定刑中懲役刑ヲ選擇シテ處斷スヘク押收ノ證據物件ハ刑事訴訟法第二百二條ニ依リ差出人ニ還付スヘキモノトス
仍テ主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六年 四月 十四日
大邱地方法院
朝鮮總督府判事 五味逸平 [印]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林久次郎 [印]

판결

경상북도 문경군 호계면虎溪面 지천동芝泉洞 재적
동 도 칠곡군 지천면枝川面 연화동蓮花洞 거주
무직, 김병우金炳祐 37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장미계삼長尾戒三이 관여하여 판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김병우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대정6년1917 2월 12일경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枝川面 금호동錦湖洞 윤병돈尹炳敦 방方에서 동인을 만났고, 또 동년 4월 4일경 동 면面 연화동이라고하는 피고가 거주하

는 집에서 동 동洞 이극연李極淵을 대면하고, 모든 피고는 이증연李增淵 외 수명의 동지와 함께 조선의 국권회복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이 거사를 찬동하고 원조 받을 뜻을 말하며 동 사람 등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정사에 관한 불온의 행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했다고도 한다.

증빙을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 가운데 윤병돈과 함께 이극연에 대해 판시한 것과 같이 권유를 한 바, 동 사람 등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은 말을 했다는 내용, 피고가 공술한 기사, 증인 윤병돈에 대한 동상同上 신문조서 가운데 김병우는 대정6년1917 음력 정월 21일경 증인 방에 올 때 이증연 · 황해철 · 최진영 3인의 이름을 기록한 명함 같은 종잇조각을 보이고 이 이름의 사람들은 사회에 공명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교제하라고 말을 했다는 내용, 윤병돈이 공술한 기사, 증인 이극연에 대한 동상 신문조서 가운데 대정6년1917 음력 2월 13일경 김병우 방에 간 바, 동 인은 이 모 · 최 모 · 황 모의 이름을 기록한 명함용 종잇조각을 보이고 이 이름의 사람들은 함께 조선의 국권회복을 계획 중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사기를 치려는 생각을 헌병출장소에 신고했다는 내용, 이극연이 공술한 기사에 비추어 판시한 사실은 이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률에 비춰봄에 비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한 범죄이므로 조선형사령 제42조에 따라 그 형명을 변경하고 소정의 형벌 가운데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한다. 압수한 증거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거하여 차출인에 환부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6년1917 4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조선총독부판사 오미일평五味逸平 [印]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임구차랑林久次郎 [印]

判決

慶尙北道 聞慶郡 虎西面 芝泉里
住所不定, 無職, 金炳祐, 當三十八年

被告事件

保安法違反

主文

被告ヲ懲役壹年ニ處ス

押收物ハ差出人ニ還付ス

犯罪事實及前科

被告ハ大正六年陰十一月廿日頃論山郡彩雲面禹基里金斗鎭方ニ基リ同人並ニ姜永直ニ對シ李康年ノ殘黨ヲ結束ツテ自進會ヲ組織シ國權ヲ恢復スル計劃ナル旨ヲ說キ入會ヲ勸誘シ次ヲ治安ヲ妨害シタリ

尙被告ハ大正六年四月十四日大邱地方法院ニ於テ保安法違反罪ニ依リ懲役六月ニ處スラレ其執行ヲ終了シタルモノナリ

適用法條

保安法第七條 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 刑法第五十六條 第五十七條 刑事訴訟法第二百二條

大正七年 三月 五日 朝鮮總督府檢事 山田俊平 干與判決
公州地方法院
朝鮮總督府判事 江藤爲久 [印]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岡斐男 [印]

판결

경상북도 문경군 호서면虎西面 지천리芝泉里
주소부정, 무직, 김병우金炳祐, 38세

피고사건

보안법위반

주문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함
압수물은 차출인에게 환부함

범죄사실과 전과

피고는 대정6년1917 음력 11월 20일경 논산군 채운면彩雲面 우기리禹基里의 김두진金斗鎭 방方에 근거하여 동 인과 함께 강영직姜永直을 대면하고, 이강년李康秊의 잔당을 결속하고 자진회自進會를 조직하여 국권 회복을 계획할 뜻을 이야기 하며 입회를 권유한 것으로 치안을 방해했다.

또한 피고는 대정6년1917 4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죄에 의해 징역 6월에 처해졌다가 그 집행이 종료되었던 자다.

적용법조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형법 제56조·제57조, 형사소송법 제202조

대정7년1918 3월 5일 조선총독부검사 산전준평山田俊平 관여 판결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판사 강등위구江藤爲久 [印]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강비남岡斐男 [印]

■ **김병우 판결문**(1917년 4월 14일, 대구지방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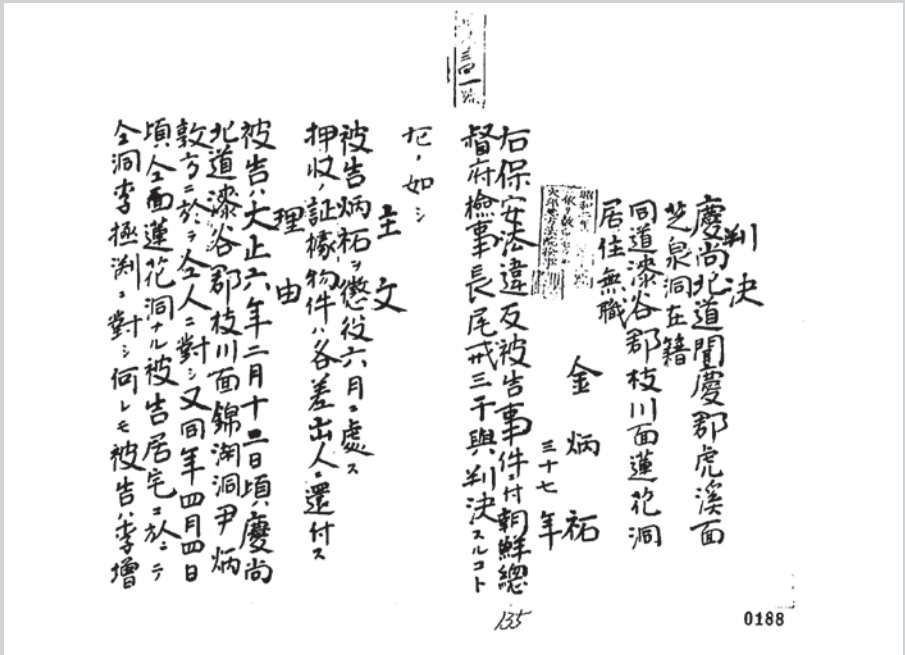

判決

慶尚北道聞慶郡虎溪面
芝泉洞在籍
同道漆谷郡枝川面蓮花洞
居住 無職
金 炳 祐 三十七年

右保安法違反被告事件ニ付朝鮮總
督府檢事長尾戒三ヲ與リ判決スルコト
左ノ如シ

主 文

被告炳祐ヲ懲役六月ニ處ス
押收ノ証據物件ハ各差出人ニ還付ス

理 由

被告ハ大正六年二月十二日頃、慶尚
北道漆谷郡枝川面錦湖洞尹炳
敦方ニ於テ、仝人ニ對シ又同年四月四日
頃仝面蓮花洞ナル被告居宅ニ於テ
仝洞李極渊ニ對シ何レモ被告ハ李增

0188

渊外数名同志ト共ニ朝鮮ノ國權回
復ノ計劃シ居ルニヨリ此擧ニ賛同援
助セラレタキ旨ヲ告ケテ仝人等ヲ勸誘シ
以テ政事ニ關シ不穩ノ行動ヲ爲シ治
安ヲ妨害シタルモノトス

証憑ヲ案スルニ被告ニ對スル檢事ノ訊
問調書中尹炳敦並ニ李極渊ニ對シ
判示ノ如キ勸誘ヲ爲シタル處仝人等ハ
到底行ハルヘキコトニアラサル樣語リ居
ル旨被告供述ノ記事

証人尹炳敦ニ對スル仝上訊問調書中
金炳祐ハ大正六年陰正月二十日頃
証人方ニ來リタル際李增渊黃海敎
崔鎭永ノ三人ノ名前ヲ記シタル名刺
樣ノ紙片ヲ示シ此名前ノ人達ハ社會
ニ功名ヲ爲スヘキ人ナル故交際セヨト語リ
居リタル旨炳敦供述ノ記事
証人李極渊ニ對スル仝上訊問調書中
大正六年陰二月十三日頃金炳祐方
ニ赴キタル所仝人ハ李某崔某黃某

0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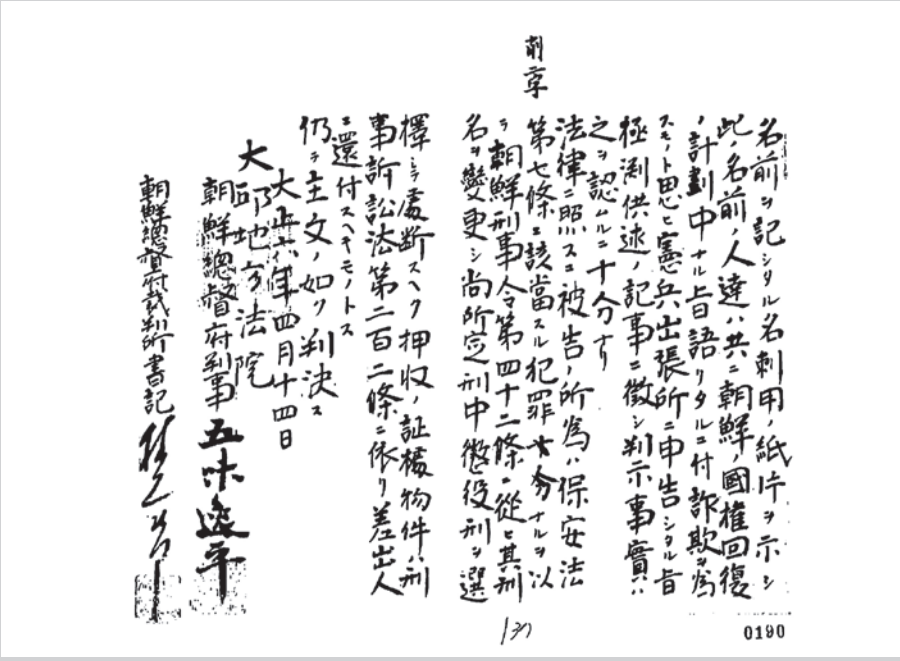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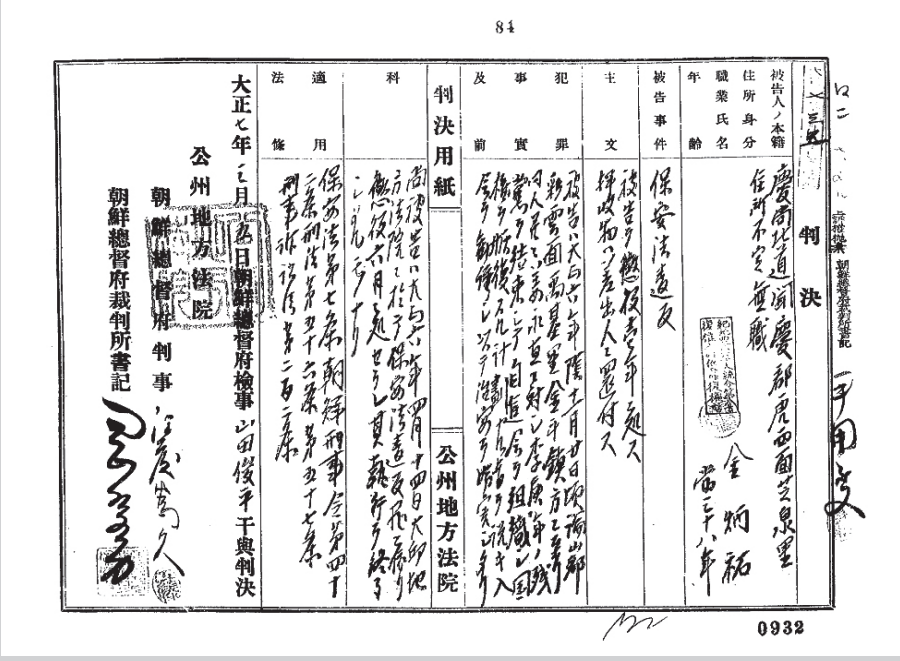
■ 김병우 판결문(1918년 3월 5일, 공주지방재판소)